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책임연구원 김기헌

공동연구원 하형석 신인철

N

Y

P

I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하형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신인철(성균관대학교 · 연구교수)
- ▶ 연구보조원 :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손원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인턴)

국 문 초 록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청년 고용이라는 제한된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기적인 성과에 편중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청년 문제의 양상은 청년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들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특성과 생애 과정에서 겪는 사건 및 현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의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할 자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핵심지표를 개발하였고,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해외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은 토대로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년, 청년 고용, 청년 실업, 청년 사회·경제 실태, 청년 연령 규정, 청년 정책
기본 방향, 청년 정책 과제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까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청년 고용이라는 제한된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기적인 성과에 편중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청년문제의 양상은 청년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변화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1) 청년 개념과 정책 대상 논의

- 연령에 대한 규정은 대상 중심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모호하며 특정 연령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청년 대상 연령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청년 관련 정책대상 규정을 다루는 법률이나 정책계획의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청년 연령 규정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어떻게 연령 규정을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연령 규정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음

2)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핵심지표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한 핵심지표를 개발하였음
- 핵심지표는 기존의 통계 및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 가능한 지표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지표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음
- 청년 핵심 지표 체계는 2012년 특임장관실에서 발간한 「2030 청년백서」, 프랑스의 청년지표(Comité interministériel à la jeunesse, 2015), 유럽연합의 청년지표(European commission, 2011), 미국의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청년지표(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1)에서 활용한 분류틀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해 확정하였음
- 확정된 청년 핵심지표에 따라서 기존 실태조사 및 행정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기존 자료로 수집하기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핵심지표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였음

3) 우리나라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 해외 청년(청소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살펴보았음
-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청년관련 법령 현황과 새롭게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찰하였음
- 청년관련 종합대책을 포함한 청년 정책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각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 해외 청년관련 정책 대다수는 청소년과 청년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해외 정책 현황을 함께 살펴보았음
- 주요국가 청년(청소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수립 시 가장 많이 참조되는 독일, 일본과 최근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를 포함한 청년 고용정책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핀란드의 청년(청소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주요국가 청년(청소년)정책은 법률 및 정책대상 정의를 비롯해 청년(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조직, 기본계획 및 정책사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4)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

- 사회적인 통념에 따른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은 각 10대와 20대로 구분이 명확하지만, 법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질 경우 연령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년 관련 정책대상 규정 국내 및 해외사례와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법률 체계를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청년 정책 대상을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음
- 청년 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과 관련해서는 현행 정책대상 부서 현황과 해외사례, 관련 법안을 통해 바람직한 정부조직의 형태에 대하여 고찰하였음
- 청년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고용, 학습, 참여, 생활, 결혼 및 출산으로 나누어 과제들을 제시하였음
-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은 유럽 연합의 청년 보장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고, 정부 부처간, 민관 협력과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음

3. 연구추진계획

- 본 연구는 5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로 이번에 개발된 청년 핵심지표에 따라 기존 실태조사 및 행정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이 이루어지며 기존 자료로 수집하기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핵심지표에 대한 결과를 수집할 예정임
- 2016년도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고, 2017년부터는 핵심적인 청년정책 대상인 ① 청년 니트(NEET)와 사회부적응, ② 학교 신규 졸업(예정)자, ③ 청년 근로빈곤층, ④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추가 조사항목을 개발해 본조사와 더불어 부가조사(special module)를 실시하고자 함

1차년도 (2016년)	목적	·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핵심지표(안) 개발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핵심지표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2차년도 (2017년)	목적	·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니트(NEET)와 사회부적응 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니트와 사회부적응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통계청 승인통계 추진 및 표본틀 변경, 청년 니트와 사회부적응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 청년 니트와 사회부적응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3차년도 (2018년)	목적	· 2018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학교 신규졸업(예정)자 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주거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018년 학교 신규졸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 · 신규 졸업 청년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4차년도 (2019년)	목적	· 2019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근로빈곤층 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결혼과 출산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019년 청년 주거 실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 · 청년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5차년도 (2020년)	목적	·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여성 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고용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020년 청년 주거 실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 · 청년 여성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

4. 주요결과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지표체계

-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지표체계는 만 15세-만 39세 청년층의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해서 설정해야 하는 만큼 연령대 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구분되도록 구성됨
- 각 영역의 지표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배제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청년세대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함
-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지표체계의 대영역은 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 ③ 경제,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의 총 7가지로 구성하였음

구 분	분 류
인구와 가족	청년층 인구수, 청년 연령규정 등
교육	대학등록금, 대학졸업 소요기간, 졸업 유예 등
경제	경제활동 참여율, 청년 소득, 선호 일자리, 직무 불일치 등
주거	청년 가구 비율, 청년 주거 빈곤, 부모 동거, 공동주거 등
건강	비만율,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등
문화와 가치관	여가생활, 여가활동 대상, 계층의식, 생활 만족도 등
관계와 참여	사회적 관계망, 세대갈등, 의견 표명 행동, 정치 성향 등

2)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개발된 청년 핵심지표에 따라서 기존 실태조사 및 행정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자료로 수집하기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핵심지표에 대한 결과를 수집함
-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청년 실태를 분석할 자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함
 - ① 인구와 가족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범위, 독립/결혼/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생각, 가장 먼저 확대해야하는 출산/육아 대책, 2025년 출산율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② 교육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대학교육에 대한 생각, 2025년 입시 경쟁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의 교육 관행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③ 경제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2025년 청년 취업 경쟁에 대한 생각,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017년 최저임금,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배당/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항목,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면 가장 먼저 지출을 늘릴 항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④ 주거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집에 대한 생각,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⑤ 건강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건강 상태에 대한 생각,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평일 하루 수면시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⑥ 문화와 가치관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 지난 1년간 독서 여부,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하는 사람,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가입 여부, 가장 자주 접한 뉴스매체, 가치 관련 선호 정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⑦ 관계와 참여 영역의 주요 조사항목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반대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 한국 사회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생각,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3)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 ① 인구와 가족
 -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층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전체인구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또한 줄어드는 추세임

- 아동/청소년/청년 연령에 대한 생각은 아동의 경우 5.2세~11.5세, 청소년의 경우 12.6세~18.4세, 청년의 경우 19.3세~29.5세로 나타남

○ ② 교육

-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14년 약 696만원에서 2015년 697만원, 2016년 698만원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음
- 대학 진학률은 2005년 80.8%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74.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졸업 소요기간은 대졸자 전체로 보았을 때 2007년 평균 3년 10개월 소요되었는데, 2015년 평균 4년 2개월까지 증가하였음

○ ③ 경제

- 청년의 고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2006년 57%수준에서 2015년 47%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④ 주거

-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및 비율은 2000년 1.3%에서 2015년 9.7%로 15년동안 8.4%p 증가하였음
- 전체 인구의 주택 외 거주규모 및 비율이 2000년 0.6%에서 2015년 3.7%로 15년동안 3.1%p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년층의 주거빈곤은 타 연령층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
- 청년층이 가구주인 경우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의 비율은 현저히 낮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층 월세는 2007년 평균 58,288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77,576원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현재 109,586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⑤ 건강

- 청년층의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중 걷기 실천율은 꾸준히 감소하였고,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여 2014년 23.9%로 나타남

○ ⑥ 문화와 가치관

- 청년층은 일보다는 여가를, 이상보다는 현실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⑦ 관계와 참여

-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대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는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의견에는 의견이 갈림

4) 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들의 정책 수요 및 정책 방향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아동 5.2세~11.5세, 청소년 12.6세~18.4세, 청년 19.3세~29.5세로 연령에 대한 생각이 조사되었는데, 연령정의에 대해 관례적이고 정서적인 용법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따른 아동의 정의는 국제협약을 따르는 것이므로 별도로 하더라도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각각 12세에서 18세, 19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현행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청년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경제민주화가 매우 시급하며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임
- 최근 졸업 유예 현상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졸업 유예 현상은 대학 진학 시 재수생활을 통한 유예 현상과 졸업 후 취업 유예 현상,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과 맞물려 총체적인 성인이 이행의 지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 향후 공동주거를 통한 주택공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청년층의 주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미루어 청년들을 위한 장기 임대형 주택 등을 보급하는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청년 관련 발의된 기본법안들의 청년 연령 정의는 하한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중복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 청년의무고용제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시급하고 절실한 청년 고용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시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이지만 법적 규제 방식보다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동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청년 관련 정책은 고용정책 뿐만아니라 주거정책, 등록금, 장학금을 비롯한 대학생 학비 지원정책,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년만을 특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님
- 정부에서 발표한 현재 적용중인 기본계획이나 종합대책 11개 중에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 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청년 취업이나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음
- 해외 청년(청소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가 청소년 및 청년 정책업무를 주관하는 곳은 189개 국가(사회) 중에서 149개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위원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사회)는 27개로 14.3%로 나타남
 - 전 세계 중앙부처 중 청소년 및 청년(youth)이 부처 명칭에 포함된 국가는 107개 국가로 71.8%로 나타났고, 최근 청년 대상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중앙부처에 명칭을 포함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 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상 중심 정책을 중앙부처가 아닌 행정위원회나 부처협의회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로 파악됨
 - 우리나라처럼 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연령 정의에 있어 가장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15세에서 29세인 경우로 파악되었음

5. 정책제언

- 정책대상 연령 정의는 법류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하나의 법률 체계를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 청년기본법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정의를 9세에서 29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함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개정 법안에서 지적하듯이 몇 번에 걸쳐 연장 중이므로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바꾸고 명칭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정책 정부조직은 행정부처에서 맡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동시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구성된 정책조정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함
-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대상 행정부처가 분리되더라도 이를 모두 포괄하는 조정기구가 필요해 보이며 법령마다 조정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보임
- 현재 청년정책은 중장기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현안으로 부상한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출발점은 정책영역을 정하는 것이므로 청년정책의 과제를 ① 고용, ② 학습, ③ 참여, ④ 생활, ⑤ 결혼 및 출산으로 정책 영역을 제안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간 연구추진계획	7
4. 연구방법	9
II. 연구 배경	13
1. 청년 개념과 정책 대상 논의	15
2. 청년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18
III.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21
1. 한국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핵심지표	23
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34
3.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37
IV.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141
1. 우리나라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143
2. 해외 청년(청소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163
V. 정책제언	181
1. 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들의 정책 수요 및 정책 방향	183
2.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199
3.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	208
참고문헌	221
부 록	229

표 목차

〈표 III-1〉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지표 체계	24
〈표 III-2〉	지표 체계 비교	26
〈표 III-3〉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지표체계	27
〈표 III-4〉	인구와 가족 영역 핵심지표	28
〈표 III-5〉	교육 영역 핵심지표	29
〈표 III-6〉	경제 영역 핵심지표	30
〈표 III-7〉	주거 영역 핵심지표	31
〈표 III-8〉	건강 영역 핵심지표	32
〈표 III-9〉	문화와 가치관 영역 핵심지표	33
〈표 III-10〉	관계와 참여 영역 핵심지표	33
〈표 III-11〉	시/도별, 성별, 연령별 조사 결과	36
〈표 III-12〉	청년층 인구수	38
〈표 III-13〉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39
〈표 III-14〉	청년 연령규정	40
〈표 III-15〉	적정 독립 시기	41
〈표 III-16〉	적정 결혼 시기	42
〈표 III-17〉	적정 출산 시기	43
〈표 III-18〉	해외이주 의사	44
〈표 III-19〉	해외이주 고려 이유	45
〈표 III-20〉	혼인건수	46
〈표 III-21〉	혼인율	47
〈표 III-22〉	성별 초혼 연령	48
〈표 III-23〉	출생아 수 (모의 연령)	48
〈표 III-24〉	출산율	49
〈표 III-25〉	출산연령	49

〈표 III-26〉	연애 망설임 여부	50
〈표 III-27〉	결혼준비 경험	51
〈표 III-28〉	결혼 망설임 여부	52
〈표 III-29〉	맞벌이 여부	52
〈표 III-30〉	자녀 여부	53
〈표 III-31〉	자녀를 가질 계획	53
〈표 III-32〉	대학등록금	54
〈표 III-33〉	대학등록금대출자비율	55
〈표 III-34〉	재학생 1인당 장학금	56
〈표 III-35〉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57
〈표 III-36〉	대졸자휴학현황	58
〈표 III-37〉	대학생학업중단율	59
〈표 III-38〉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60
〈표 III-39〉	대학 학점 평균	61
〈표 III-40〉	대학 시절 사교육 경험	61
〈표 III-41〉	대학 시절 해외유학 준비 경험	62
〈표 III-42〉	실제 해외유학 경험	62
〈표 III-43〉	대학 시절 영어능력시험 경험	63
〈표 III-44〉	영어능력시험 성적 기준 영어 실력	63
〈표 III-45〉	대학 시절 봉사활동 경험	64
〈표 III-46〉	대학 시절 인턴 경험	64
〈표 III-47〉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65
〈표 III-48〉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	65
〈표 III-49〉	대학 진학 의사	66
〈표 III-50〉	대학원 진학 의사	66

〈표 III-51〉	학교수	67
〈표 III-52〉	학생수	68
〈표 III-53〉	진학률	69
〈표 III-54〉	취학률	70
〈표 III-55〉	경제활동참여율	71
〈표 III-56〉	고용률	72
〈표 III-57〉	실업률	73
〈표 III-58〉	신설법인수 및 비율	74
〈표 III-59〉	니트 비율	75
〈표 III-60〉	비정규직 비율	76
〈표 III-61〉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77
〈표 III-62〉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78
〈표 III-63〉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79
〈표 III-64〉	현재 취업 준비 여부	80
〈표 III-65〉	중소기업 취업 의향	80
〈표 III-66〉	창업 경험	81
〈표 III-67〉	창업 의사	81
〈표 III-68〉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82
〈표 III-69〉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 합격 여부	82
〈표 III-70〉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공 분야 일치 정도	83
〈표 III-71〉	직업 훈련 경험 여부	83
〈표 III-72〉	직업 훈련을 받은 목적	84
〈표 III-73〉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84
〈표 III-74〉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85
〈표 III-75〉	월임금총액	85

〈표 Ⅲ-76〉	청년 소비	86
〈표 Ⅲ-77〉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87
〈표 Ⅲ-78〉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88
〈표 Ⅲ-79〉	청년 가구주의 부채	89
〈표 Ⅲ-80〉	2017년 적정 최저 임금	90
〈표 Ⅲ-81〉	소비생활 중 지출이 큰 항목	91
〈표 Ⅲ-82〉	소비지출 확대 항목	92
〈표 Ⅲ-83〉	계획적인 소비 여부	93
〈표 Ⅲ-84〉	채무 여부	93
〈표 Ⅲ-85〉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94
〈표 Ⅲ-86〉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95
〈표 Ⅲ-87〉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96
〈표 Ⅲ-88〉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96
〈표 Ⅲ-89〉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	97
〈표 Ⅲ-90〉	부모 동거 여부	98
〈표 Ⅲ-91〉	미혼 혼자 거주 여부	98
〈표 Ⅲ-92〉	현재 주거 형태	99
〈표 Ⅲ-93〉	현재 거주지 전입신고 여부	99
〈표 Ⅲ-94〉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및 비율	100
〈표 Ⅲ-95〉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101
〈표 Ⅲ-96〉	기숙사 수용률	102
〈표 Ⅲ-97〉	주거 마련 시기 의견	103
〈표 Ⅲ-98〉	공동주거_공동주거 경험	104
〈표 Ⅲ-99〉	공동주거_공동주거 의향	104
〈표 Ⅲ-100〉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105

〈표 Ⅲ-101〉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106
〈표 Ⅲ-102〉	평소 주거 생각_3.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06
〈표 Ⅲ-103〉	평소 주거 생각_4.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6
〈표 Ⅲ-104〉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걷기실천율	107
〈표 Ⅲ-105〉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107
〈표 Ⅲ-106〉	비만율	108
〈표 Ⅲ-107〉	스트레스	108
〈표 Ⅲ-108〉	우울증	109
〈표 Ⅲ-109〉	자살률	109
〈표 Ⅲ-110〉	흡연율	110
〈표 Ⅲ-111〉	음주율	110
〈표 Ⅲ-112〉	청년병원이용	113
〈표 Ⅲ-113〉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113
〈표 Ⅲ-114〉	성형수술 경험	114
〈표 Ⅲ-115〉	성형수술 목적	115
〈표 Ⅲ-116〉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116
〈표 Ⅲ-117〉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117
〈표 Ⅲ-118〉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118
〈표 Ⅲ-119〉	독서율	118
〈표 Ⅲ-120〉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하는 사람	119
〈표 Ⅲ-121〉	자주 접한 뉴스매체	120
〈표 Ⅲ-122〉	주관적 행복감	121
〈표 Ⅲ-123〉	삶의 만족도	121

〈표 Ⅲ-124〉 주관적 계층의식(사회통합실태조사)	122
〈표 Ⅲ-125〉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_1. 즐거운	124
〈표 Ⅲ-126〉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_2. 행복한	124
〈표 Ⅲ-127〉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_3. 짜증나는	125
〈표 Ⅲ-128〉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_4. 무기력한	125
〈표 Ⅲ-129〉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26
〈표 Ⅲ-130〉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127
〈표 Ⅲ-131〉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	128
〈표 Ⅲ-132〉 미래 성공 가능성	128
〈표 Ⅲ-133〉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129
〈표 Ⅲ-134〉 부모와의 만남 정도(가구주)	130
〈표 Ⅲ-135〉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131
〈표 Ⅲ-136〉 가족관계 만족도	132
〈표 Ⅲ-137〉 친한 친구	132
〈표 Ⅲ-138〉 세대 갈등	134
〈표 Ⅲ-139〉 자원봉사참여(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기간)	135
〈표 Ⅲ-140〉 기부활동(기부여부, 현금기부여부, 물품기부여부)	135
〈표 Ⅲ-141〉 단체참여	136
〈표 Ⅲ-142〉 투표율	137
〈표 Ⅲ-143〉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138
〈표 Ⅲ-144〉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139
〈표 Ⅲ-145〉 한국사회 공정성 수준	140
〈표 Ⅲ-146〉 정치 성향	140
〈표 Ⅳ-1〉 19대 국회 청년 관련 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145
〈표 Ⅳ-2〉 20대 국회 청년 관련 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147

〈표 IV-3〉	여성가족부 부서 및 후기청소년(19-24세) 포함 정책 사업 현황	153
〈표 IV-4〉	중앙행정기관 청년 관련 부서 현황	154
〈표 IV-5〉	정부부처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청년 관련 정책 과제	156
〈표 IV-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및 전년대비 증감율	158
〈표 IV-7〉	전 세계 중앙부처 청소년 및 청년(youth) 명칭 포함 여부	165
〈표 IV-8〉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youth)정책 중앙부처 영역 비교	166
〈표 IV-9〉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youth) 대상 하한 연령	167
〈표 IV-10〉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youth) 대상 상한 연령	168
〈표 IV-11〉	전 세계 주요 국가 청(소)년 대상 연령 및 중앙조직 명칭	169
〈표 V-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에 대한 응답 결과	185
〈표 V-2〉	청년정책에 대한 델파이 전문가 패널 현황(16명)	199
〈표 V-3〉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200
〈표 V-4〉	델파이조사 타당성 분석 결과	201
〈표 V-5〉	청년정책 대상 연령 비교	208
〈표 V-6〉	청년기본법안 대상 연령 규정 개정(안)	210
〈표 V-7〉	청년정책 대상 정부조직 비교	212
〈표 V-8〉	청년 정부조직 개정(안)	213
〈부록표 1〉	인구와 가족 영역 문항비교	232
〈부록표 2〉	교육 영역 문항 비교	233
〈부록표 3〉	경제 영역 문항 비교	236
〈부록표 4〉	주거 영역 문항 비교	240
〈부록표 5〉	건강 영역 문항 비교	242
〈부록표 6〉	문화와 가치관 영역 문항 비교	243
〈부록표 7〉	관계와 참여 영역 문항 비교	245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8
【그림 Ⅲ-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규정	40
【그림 Ⅲ-2】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41
【그림 Ⅲ-3】	결혼의 필요성	42
【그림 Ⅲ-4】	자녀를 가질 필요성	43
【그림 Ⅲ-5】	미취업 또는 직업(직장) 불안정으로 연애를 망설인 경험	50
【그림 Ⅲ-6】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	51
【그림 Ⅲ-7】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60
【그림 Ⅲ-8】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111
【그림 Ⅲ-9】	현재 본인의 건강에 대한 생각	111
【그림 Ⅲ-10】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112
【그림 Ⅲ-1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115
【그림 Ⅲ-12】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	119
【그림 Ⅲ-13】	선호하는 가치(일 중시 vs 여가 중시)	122
【그림 Ⅲ-14】	선호하는 가치(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123
【그림 Ⅲ-15】	선호하는 가치(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123
【그림 Ⅲ-16】	선호하는 가치(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123
【그림 Ⅳ-1】	아동, 청소년 법률과 입법발의된 청년 관련 법안 연령 비교	149
【그림 Ⅳ-2】	민간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적용 시 고용지원금 비용추계 결과	150
【그림 Ⅳ-3】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추이(억원) 및 전년대비 증감률	158
【그림 Ⅳ-4】	청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추이(%)	159
【그림 Ⅳ-5】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율 추이 (2011-13년 평균)	160
【그림 Ⅳ-6】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취업자 월평균 임금수준(2014년) ·	161
【그림 Ⅳ-7】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 중앙조직 형태 비교	164

【그림 IV-8】	독일, 핀란드, 일본의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연령 규정 비교	174
【그림 IV-9】	독일 청소년 및 청년 담당 중앙부처 조직도	175
【그림 IV-10】	핀란드 청소년 및 청년 담당 중앙부처 조직도	176
【그림 V-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중요한 정책분야 응답 결과	186
【그림 V-2】	노동공급 관련 상위 4개 청년정책사업 연령별 응답 결과	187
【그림 V-3】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응답 결과	187
【그림 V-4】	노동수요 관련 상위 4개 청년정책사업 연령별 응답 결과	189
【그림 V-5】	중소기업 취업 의사 여부 및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	190
【그림 V-6】	2017년 적정 최저임금 응답 결과와 고용노동부 고시, 서울시 생활임금 비교	191
【그림 V-7】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응답 결과	192
【그림 V-8】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	192
【그림 V-9】	우리나라 입시경쟁에 대한 전망(2015년) 응답 결과	193
【그림 V-10】	학자금 대출 여부 및 대출 출처 응답 결과	194
【그림 V-11】	대학시절 휴학 및 졸업유예 경험 응답 결과	195
【그림 V-12】	현재 주거 현황 및 주거 소유 전망 응답 결과	196
【그림 V-13】	현재 집값 수준 적정여부 및 스스로 집 마련에 대한 응답 결과	197
【그림 V-14】	연령별 현재 공동주거 현황 및 향후 의향 응답 결과	197
【그림 V-15】	자기 명의의 집과 집과 자동차 중 선택 응답 결과	198
【그림 V-16】	아동연령에 관한 청년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	202
【그림 V-17】	청소년연령에 관한 청년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	203
【그림 V-18】	청년연령에 관한 청년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	203
【그림 V-19】	청년 정책 담당부서 형태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204

【그림 V-20】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 205
【그림 V-21】 청년 정책 영역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 206
【그림 V-22】 청년고용해법에 대한 청년 실태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	····· 206
【그림 V-23】 청년고용 노공공급 측면 해법에 대한 청년 실태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	····· 207
【그림 V-24】 청년고용 노공수요 측면 해법에 대한 청년 실태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	····· 207
【그림 V-25】 청년 정책 비전 및 정책과제 도출	····· 214
【그림 V-26】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 215
【그림 V-27】 청년정책 영역	····· 216
【그림 V-28】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이행을 위한 6가지 가이드라인	····· 218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간 연구추진계획
4.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고용대책은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고용절벽’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하고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관계부처 합동, 2015),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도 주된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5).

이처럼 정부 정책 대상으로 청년이 매우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청년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에 제시한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이후 2015년까지 15개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표되었고(김기현, 김형주, 박성재, 민주홍, 김종성, 2015), 2016년 들어서도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이라는 새로운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6). 이처럼 많은 청년 대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청년 고용지표들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원(2015, 2016)을 비롯하여 그동안의 청년 정책에 관한 몇 가지 평가나 진단 등을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그동안의 청년 정책은 청년 고용이라는 제한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 청년문제의 양상은 청년 고용문제에서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청년문제에 관한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데 치우쳐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과 처방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상했으나 1990년대의 청소년정책이나 2000년대의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처럼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비롯해 정책 인프라를 동반하지 않고 청년정책이 추진되면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환경들이 급변하는

1)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청년정책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간의 중복문제와 유사하게 청소년정책과 경계에서 있다. 청소년정책의 정책대상은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370호)에 따라서 9세에서 24세를 포괄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은 별도의 연령 규정에 관한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1792호) 시행령(대통령령 제24817호)에 15세에서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 대상 간 중복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청년 관련 기본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국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법률을 수차례 제시(박기춘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1909701], 김상민의원 등 53인 발의[1910709], 김광진의원 등 11인 발의[1917647])해 왔으나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청년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각 국가에서 청년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거나 기존의 청소년정책을 확장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청년 혹은 청소년(youth)정책을 부처 단위에서 추진하고 부처명에 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98개에 이르고 있으며 정책 대상 연령은 대다수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김정숙, 김기현, 황세영, 2015). 대표적인 사례인 일본은 기존의 청소년육성정책을 2010년 법률 제정을 통해 아동·청년정책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책대상 연령을 30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한편, 니트(NEET)나 프리터(freeter) 문제 등에 관해서는 39세 이하를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과 청년에 관한 연령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청년정책을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Ministry of Family, Senior, Female, and Youth)로 대상 중심 정책을 모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아동, 청소년, 청년에 관한 다양한 연령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령에 반영해 우리나라와 같은 대상 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선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청년 연령 규정에 관한 문제는 생물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특정 연령대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정책적으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 연령 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대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30대를 포함하는 아동·청년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주목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성인기 이행 지연(늦은 취업, 불안정한 취업, 늦은 결혼, 출산 지연 등)을 들고 있다. 성인기 이행이 지연된다면 사회·경제적인 상태는 10대나 30대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현실이 이렇다면 정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먼저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들을 개발하고 취업과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는 청년 세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는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 환경 변화 요인들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청년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핵심지표 개발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핵심지표는 기존의 통계 및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 가능한 지표와 이번에 실시되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지표로 구분할 예정이다.

기존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집 가능한 지표는 2012년 특임장관실에서 발간한 「2030 청년백서」에서 활용한 분류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해 확정하고자 한다. 별도 조사 문항과 관련해서는 2013년과 2015년에 실시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사표를 확정하고자 한다.

2) 청년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핵심지표 중에서 통계/행정 자료를 수집하고 2차 분석을 통해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성장 추이, 글로벌화와 과학기술, 다매체 시대의 스마트화 진전의 영향 등 핵심 트렌드를 분석하여 이러한 변화가 청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는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개별방문면접조사이며 표본설계는 가구 표집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4월 기준)의 집계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인구비례배분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자 한다. 표본수는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15세에서 39세로 포괄적인 청년 정의를 따랐다. 포괄적으로 조사 대상을 정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 청년 연령 규정에 관한 다양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인기 이행시점은 개인마다 편차가 존재하는데 법률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최저연령은 15세이기 때문에 15세부터 대상을 삼았고 취업, 결혼이나 출산 등과 관련해 최고연령을 39세로 삼아 이행시점과 더불어 이행기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한편,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등 연령집단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중복대상인 아동과 청소년, 청년의 경계에 있는 응답자 모두에게 응답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의를 적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유는 2013년과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실시한 선행 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선행 조사들은 19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되 19세보다 15세로 대상 폭을 더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15세로 낮춘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업 가능 최저연령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설문지의 구성은 만15~18세의 경우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으로 취업자나 기혼자 대상 질문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질문을 중심으로 간소화해 별도로 구성하였다. 만19~39세 설문지는 20대와 30대의 사회·경제적 실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조사표로 구성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설문 문항은 2015년에 실시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필요한 문항을 제외하고 청년 핵심지표 영역별로 필수적인 문항을 선정해 3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우리나라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 분석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청년정책 현황과 평가를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정책 현황 분석은 크게 일자리, 고용, 노동시장과 같은 청년 고용 대책 현황 분석과 대학생 등록금, 주거 등 청년 생활 관련 대책 분석으로 나누어 시도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은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한 핵심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을 선별해 해당 국가의 청년정책 주관 부처와 법령, 전달체계,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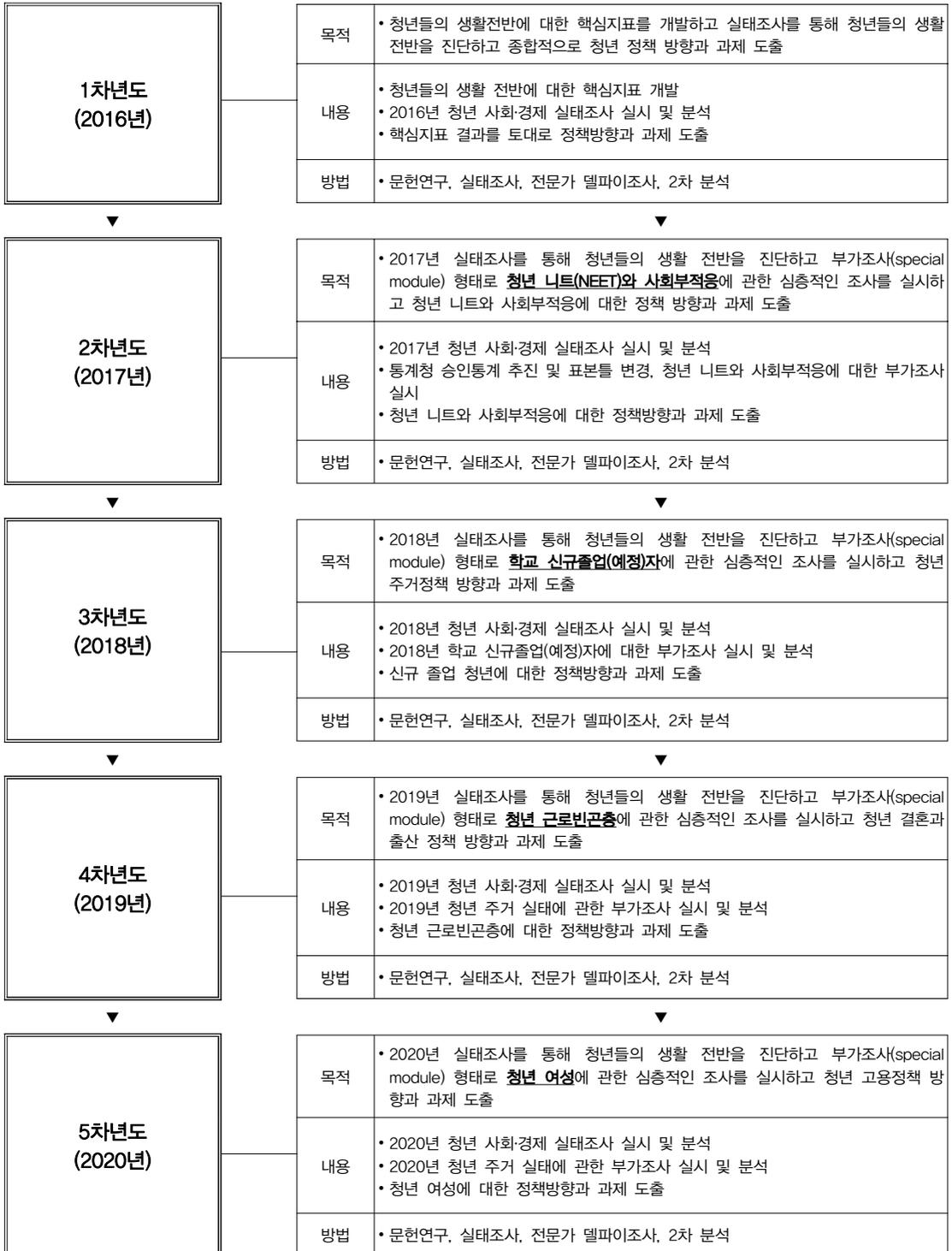
4) 청년의 삶과 일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추진방안과 과제 도출

이 연구에서는 향후 청년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 연령 규정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하며 정책추진체계, 그리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영역은 기존 청년 대책이 주로 청년고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연간 연구추진계획

이 연구는 5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며 2016년도에 개발된 청년 핵심지표에 따라서 기존 실태조사 및 행정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이 이루어지며 기존 자료로 수집하기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핵심지표에 대한 결과를 수집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핵심적인 청년정책 대상인 ① 청년 니트(NEET)와 사회부적응, ② 학교 신규 졸업(예정)자, ③ 청년 근로빈곤층, ④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추가 조사항목을 개발해 본조사와 더불어 부가조사(special module)를 실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2017년부터 2016년 조사 원자료를 공개해 이를 분석하는 학술대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2016년도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에 대한 분석은 핵심적인 청년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 역시 연도별로 핵심대상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림 I -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핵심적인 청년정책 대상은 OECD(2015)에서 제안한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도 청소년의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에서 학교 신규 졸업 예정자와 니트(NEET) 등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김기현 외, 2015).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청년 실태 및 정책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문헌분석을 통해 각 부처별 및 지자체별로 청년 정책과 정책사업 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시에 독일, 일본, 핀란드 등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에 대한 문헌 연구도 실시하고자 한다.

2) 양적 연구

이 연구에서는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2017년도 2차 조사부터 통계청의 승인통계 절차를 거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표본틀(sampling frame)로 표본설계를 진행할 예정²⁾이며 2016년 조사는 모집단 자료로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4월)를, 표본은 통계청 집계구의 통/반/리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집단의 층화는 지역(17개시도)과 성별, 연령이며 연령구분은 만15-18세, 19-24세, 25- 29세, 30-34세, 35-39세 등 5개의 연령코호트(age cohort)로 나누었다. 첫 번째 코호트만이 5세 단위가 아닌 4세 단위로 한 것은 민법상 성인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만19세인 점을 고려한 것이고

2) 통계청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결과를 2016년 12월에 제공할 예정이어서 올해 승인통계 절차를 거쳐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¹⁾이므로 2017년 조사부터 조사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사용가능한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결과로 이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조사표가 고등학생이 대다수인 만15-18세와 19-39세로 나누어 구성된 점도 고려한 것이다.

표본크기는 조사 예산을 고려하여 2,500명으로 산정하였고 표본추출은 규모에 비례한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조사방법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면접하는 개별방문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유치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한편, 이 조사는 본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통합조사에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지의 개발은 2015년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실시한 동일 조사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문항을 제외하고 확정된 청년 핵심지표를 토대로 신규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3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3) 2차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할 필요가 없는 청년 핵심지표에 대해서 기존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차 분석 대상 자료들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출생통계, 혼인·이혼통계, 장애인구추계를 비롯하여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등이며, 고용노동부의 기업생멸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등이다.

4) 전문가 델파이조사

이 연구에서는 청년 연령규정 및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청년 연령 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는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고 청소년과 청년 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타당도는 타당도 비율(CVR)과 합의도, 수렴도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5)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이 연구에서는 핵심지표 설정과 설문지 검토, 정책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학계 연구진이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현장의 전문가,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동시에 청년정책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년부서 담당자들과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제 II 장



연구 배경

1. 청년 개념과 정책 대상 논의
2. 청년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제 II 장 연구 배경³⁾

1. 청년 개념과 정책 대상 논의

연령에 대한 규정은 대상 중심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장애인은 의료적으로 명확히 대상이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유아나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등과 같은 연령집단에 관한 정의는 사회마다, 시대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말로 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먼저, 소년은 어린이 단계는 지났으나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대상을 지칭하는데 성별에 따라 통칭하지 않고 남성을 소년으로, 여성을 소녀로 달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10대를 가리키는데 있어서는 소년 대신 청소년이라 지칭하는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소년과 청소년이 거의 동의어로 인식되면서 청년과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년은 소년 혹은 청소년이 성년이 된 시기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성인이 된 시기의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성인의 기준이 되는 성년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변모해 왔으므로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성인이 이행의 전환 시점과 관련되는데 과거 어린 나이에 일을 하거나 혼인을 할 수 있었던 10대 중반에서 점차 이행기가 지연되면서 20대 중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왔으며 민법상 성년 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특정 시기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모호하며 특정 연령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대다수의 국제기구들은 청소년 혹은 청년을 유스(youth)로 통칭해 사용하고 있으며 10대나 그 이하를 가리키는 용어(child, adolescent)와 구분하고 있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15세에

3) 이 장은 하형석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서 24세를 기준으로 청소년 혹은 청년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혹은 청년 연령 규정은 국제적으로 큰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숙 외(2015)는 국제기구인 youthpolicy.org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179개 국가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혹은 청년 정책 대상이 10대만을 포함한 국가는 3개였으며 우리나라처럼 20대까지 포괄하는 곳은 84개였고 예상과는 달리 가장 많은 90개 국가들은 30대를 포괄해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심지어 부르나이, 말레이시아나 네팔 등 3개 국가는 40대까지를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청소년 혹은 청년 정책 대상이 20대 후반을 넘어 30대까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규정은 정책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4066호)에 따라서 9세에서 24세로 정의되고 있다⁴⁾. 이는 청소년을 10대 소년이나 소녀로 보기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유스(youth) 개념에 따라다고 볼 수 있으며 연령 출발점은 15세 대신에 좀 더 어린 연령인 9세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단체 가입 연령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은 법률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17호)에서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다⁵⁾. 이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유스(youth) 통계를 24세가 아닌 29세로 제시해 왔다. 이는 군 입대와 높은 대학 진학률 등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 규정의 출발점인 15세는 생산가능인구 혹은 노동력의 출발점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국제기구는 물론 대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령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청년 연령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 이 역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법률 제13864호) 제12조의 청년실업자의 중소

4)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정의는 제3조(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14066,20160302\)](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14066,20160302)), 2016. 5. 23일 검색)

5) 제2조 청년의 나이에 관한 규정은 2013년 청년고용활당제와 관련해 이 정책에 한해서 34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24817,20131030\)](http://www.law.go.kr/법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24817,20131030)), 2016. 5. 23일 검색)

기업 취업지원에서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⁶⁾. 이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연령규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법령에 따른 정의는 아니지만 정책 추진 근거로 대상 연령을 규정한 사례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다. 출발점인 19세는 2011년에 개정이 이루어진 「민법」(법률 제13125호) 제4조에서 성년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⁷⁾. 귀착점인 39세는 취업 지원 연령이 주로 29세이지만 창업 지원 연령에서 청년 대상이 30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연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 대상 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대상 연령을 전제한 후 전기(9-12세)와 중기(13-18세), 후기(19-24세)로 구분하는 흐름도 등장하였다(조혜영, 2013; 김지경, 2015). 후기청소년은 성인기 진입을 앞둔 청소년시기를 지칭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청년 연령에 가깝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학문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출현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논의와 연결된다. 학문적, 개념적 측면에서 이는 진실보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용어인데다 향후에도 통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청년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청년 정책 관련 기본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대상 연령 규정은 가장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대상 연령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청년에 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성인으로의 이행기가 어떠한지를 대상 연령 규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해외 사례에서 정책대상 규정을 법률이나 정책계획 등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세 번째로 청년 연령 규정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어떻게 연령 규정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연령 규정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6)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년 정의는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13864,20160127\)](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13864,20160127)), 2016. 5. 23일 검색)

7) 제4조(성년) 성년의 나이에 관한 규정은 2011년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된 바 있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민법/\(13125,20150203\)](http://www.law.go.kr/법령/민법/(13125,20150203)), 2016년 5월 23일 검색)

2. 청년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매우 제한적인데 이는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에 통계청 등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층 부가조사를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청년층 부가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자 중 15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매년 5월에 교육과 취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청년층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최종학교 입학과 편입, 졸업과 중퇴 및 휴학에 관한 사항과 학교교육 외에 직업훈련이나 직장체험, 취업시험 준비 여부 등 고용과 연관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첫 직장의 종사상지위, 취직 및 이직 시기, 이직 사유와 업종과 직업, 취업경로, 전공일치도, 창업 경험과 계획, 미취업 상황 등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통계청 조사 중에 연령집단을 청년으로 한정해 재분석이 가능한 조사들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출생통계, 혼인·이혼통계, 장래인구추계를 비롯하여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기업생멸통계 등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는 청년인구 규모 추정과 변동 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며 출생통계와 혼인·이혼통계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청년 개인의 시간 활용과 의식을 파악하여 청년들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조사는 국민들의 사회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질문하고 있는데 청년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데 활용되고 있다. 기업생멸통계는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기업 대표자의 연령을 통해 청년기업의 규모와 변동 추세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부처들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등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청년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체나 기업체에 근무 중인 청년 노동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청년들의 주거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 총 2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7월에서 9월까지 두 달간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는 짝수 해에 실시되는 일반조사와 홀수 해에 실시되는 특수조사로 구분되는데 특수조사는 노인, 장애인, 임대주택

등 특정한 정책적 수요를 고려해 조사가 실시된다. 연령집단별로 구분해 청년층의 거주 형태와 주택구입과 대출 현황, 주거비 형태와 부담 정도를 비롯하여 주거에 대한 가치관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횡단조사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와 고졸자취업진로조사(HSGES) 등이 있다. GOMS는 전문대와 4년제 등 대학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을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반복횡단조사들은 청년들의 특정 영역에 관한 대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에 초점을 맞춘 조사들은 반복횡단조사보다는 오히려 패널조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YP: Youth Panel)은 2001년부터 실시된 조사로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이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ES)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는 청소년 시기인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나 2004년부터 실시되어 조사 대상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청년들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패널조사라고 할 수 있다. 패널조사들은 청년들의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해당 연도별로 대표성을 갖는 지표 결과를 추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횡단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반복횡단 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2015년에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배상률, 황여정, 김소라, 2013; 김기현, 2015a). 이 조사는 ① 교육, ② 일과 노동, ③ 주거, ④ 결혼과 가정, ⑤ 여가와 소비, ⑥ 사회적 인식, ⑦ 소통 등 7가지 영역별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장애인종합실태조사 등 대상 중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의 틀을 갖추고 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연령규정에 따라서 19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9월에서 10월 중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 규모는 1,000명이다. 조사 설계는 조사 예산 한계 등으로 인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 명부를 활용해 할당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로 해당 조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2015년 과제 심의를 거쳐 조사 주체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제 Ⅲ 장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1. 한국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핵심지표
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3.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제 III 장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⁸⁾

1. 한국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핵심지표

본 연구는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실시된 2013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배상률 외, 2013)와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김기현, 2015a)의 지표체계를 검토하고 특임장관실(2012)의 『2030청년백서』의 분류틀과 프랑스의 청년지표(Comité interministériel à la jeunesse, 2015)와 유럽연합의 청년지표(European commission, 2011), 미국의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청년지표(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1) 등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청년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지표체계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해 심층 논의를 거친 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에게 수차례의 자문을 거쳐 각 영역별 지표를 구성한 후, 현장 전문가들의 지표 중요도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표 구성항목이 결정되었다(배상률 외, 2013).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지표체계는 시계열을 유지하여 두 조사간의 비교를 위해 2013년 지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015년의 지표체계는 <표 III-1>과 같다. 2015년의 지표체계는 ① 교육, ② 일과 노동, ③ 주거, ④ 결혼과 가정, ⑤ 여가와 소비, ⑥ 사회적 인식, ⑦ 미디어와 소통의 7가지의 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지표체계의 대영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평가와 의식이나 인식, 혹은 정서적인 태도와 관련된 문항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김기현, 2015a: 12).

2016년 지표체계는 만15세-39세 청년층의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해서 설정해야 하는 만큼

8) 이 장은 하형석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신인철 연구교수(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이 조사 결과의 일부는 '제6차 청년정책포럼-2017년 청년일자리정책 진단 및 대응방안'(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주최, 2016년 12월 7일, 광화문 KT빌딩 청년위 대청마루)에서 연구과정 일환으로 발표(하형석 부연구위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의견 및 실태")된 바 있음.

연령대 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구분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영역의 지표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배제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청년세대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표 III-1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지표 체계

구분	분류
교육	교육욕구 및 인식, 대학 전공선택 이유, 대학등록금 마련방법 및 실태, 생활비 지출규모, 스펙경쟁에 따른 스트레스, 각종 스펙 쌓기 여부, 취업유예 경험 및 기간, 일-학습병행제 인지 및 의견, 고시생/공시생 시험 여부 등
일과 노동	취업자 취업경로, 하향취업 여부, 근로여건 만족도, 창업 희망여부 및 분야, 창업시 애로사항,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 니트 경험 여부, 취업관/기업가정신에 관한 의견 등
주거	주거 형태, 주거비 및 대출실태, 주거생활 및 아동, 주거 부담으로 인한 영향, 주거 만족도, 주거 관련 인식, 청년 세입자 피해 경험 및 정책 인지, 대학생 주거 실태 등
결혼과 가정	결혼실태, 출산(희망)시기 및 그 이유, 육아분담 실태,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여부, 출산/양육 지원 정책 평가 등
여가와 소비	비중이 큰 소비활동, 저축실태 및 방해요인 등
사회적 인식	주관적 삶의 질, 성공에 대한 인식, 사회참여 활동, 사회적 불안요인 및 해결 조건 등
미디어와 소통	뉴스를 주로 접하는 매체, 주로 사용하는 SNS 매체/이유, 평균 포스팅 횟수, 진로 및 인생 설계 등

* 출처: 김기현(2015a)의 <표 II-4>를 인용함. p.12.

청년 핵심지표와 관련하여 먼저 특임장관실(2012)의 『2030청년백서』의 대영역은 ① 대학 진학, ② 취업과 직장생활, ③ 결혼, ④ 출산과 가족생활, ⑤ 삶에 대한 만족과 인식, ⑥ 사회참여와 정치적 성향, ⑦ 문화와 소비, ⑧ 환경과 범죄로 총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2013년부터 청년의 모습(일자리, 삶, 주거, 복지, 학업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년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청년통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프랑스의 청년지표

(Comité interministériel à la jeunesse, 2015)는 ① 청년니즈에 맞는 공공정보 제공(Create a public information service, support and guidance that responds to diversity youth needs), ② 학교 중퇴 대응(To promote the success of all young people fighting against dropping), ③ 청년건강 증진(Improving young people's health and promote access to prevention and care), ④ 청년주거 촉진(To facilitate youth access to housing), ⑤ 청년고용 촉진(Promote access to employment for young), ⑥ 취업청년들의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Secure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professional young), ⑦ 청년 수감자 사회복귀(Encourage the young inmates rehabilitation course or the subject of a judicial), ⑧ 청년들의 체육, 예술, 문화, AV, 디지털 접근 확대(Promoting youth access to sports, art, culture and audiovisual and digital offering quality), ⑨ 디지털 활용능력 개발과 새로운 인터넷 환경 청년 접근도(Developing digital literacy and youth access to new Internet business), ⑩ 청년이주 증가 및 다양화(Increasing and diversifying 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mobility of young), ⑪ 청년 참여 촉진(To promote and enhance youth engagement), ⑫ 공공영역에서의 청년 참여 증대(Strengthen youth representation in public space), ⑬ 청년에게 차별적인 제고 극복(Participation rate of students in the elections of the councils of delegates to high school life)의 총 13개의 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청년지표(European commission, 2011)는 ① 인구(Population), ② 교육(Education & Training), ③ 고용(Employment & Entrepreneurship), ④ 건강(Health & Well-being), ⑤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 ⑥ 문화(Culture & Creativity), ⑦ 참여(Youth Participation), ⑧ 봉사활동(Voluntary Activities), ⑨ 청년과 세계(Youth & the World)의 총 9개 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청년지표(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1)는 ① 인구(Demographics), ② 학교 관련 특성(School-Related Characteristics), ③ 고용 관련 특성(Employment-Related Characteristics), ④ 학교 및 직장 밖 활동(Activities Outside of School and Work), ⑤ 건강(Health and Wellness), ⑥ 미래 목표(Future Goals)의 총 6개의 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는 전술한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2030청년백서, 프랑스 청년지표, 유럽연합 청년지표,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청년지표의 대영역들을 비슷한 영역끼리 묶어서 보여주고 있다.

표 III-2 지표 체계 비교

2015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2030청년백서	프랑스 청년지표	유럽연합 청년지표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 의 청년지표
교육	대학 진학	학교 중퇴 대응	교육	학교 관련 특성
일과 노동	취업과 직장생활	청년고용 촉진	고용	고용 관련 특성
주거	-	청년주거 촉진	-	-
결혼과 가정	결혼	청년이주 증가 및 다양화	인구	인구
	출산과 가족생활			
여가와 소비	문화와 소비	-	문화	-
사회적 인식	삶에 대한 만족과 인식	청년에게 차별적인 제고 극복	사회 통합	미래 목표
	환경과 범죄		청년과 세계	
			봉사활동	
미디어와 소통	사회참여와 정치적 성향	취업청년들의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	참여	학교 및 직장 밖 활동
		청년들의 체육, 예술, 문화, AV, 디지털 접근 확대		
		디지털 활용능력 개발과 새로운 인터넷환경 청년 접근도		
		청년 참여 촉진		
		공공영역에서 청년 참여 증대		
-	-	청년건강 증진	건강	건강
-	-	청년니즈에 맞는 공공정보 제공	-	-
-	-	청년수감자 사회복귀	-	-

* 자료: 김기현(2015a), 특임장관실(2012), Comité interministériel à la jeunesse(2015), European Commission(2011),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11).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지표체계의 대영역은 ① 인가와 가족, ② 교육, ③ 경제,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의 총 7가지로 구성하였고 각 지표체계의 세부사항은 <표 III-3>과 같다. ① 인가와 가족 영역은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지표체계의 ‘결혼과 가정’ 영역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2030청년백서의 가족과 유럽연합, 미국의 지표를 참고하고 프랑스 청년지표의 청년이주 관련 항목을 영역에 포함하였다. ② 교육 영역 또한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국내사례와 해외사례 모두 중요한 지표로 분류하고 있다. ③ 경제 영역은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지표의 ‘일과 노동’ 영역을 기반으로 하였고, ‘여가와 소비’ 영역 중 소비를 포함하여 영역을 구성하였다. 또한, 고용과 취업 및 직장생활, 소비 등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경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④ 주거 영역은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주거 지표와 프랑스 청년지표를 참고하였고, ⑤ 건강 영역은 프랑스,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 청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지표체계에 신설하였다. ⑥ 문화와 가치관 영역은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지표체계의 ‘여가와 소비’ 영역 중 여가와 ‘미디어와 소통’ 중 미디어 영역을 기반으로 하였고, 미래 성공 가능성 등의 해외사례와 2030청년백서의 삶에 대한 만족을 참조하여 가치관 영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⑦ 관계와 참여 영역은 201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지표체계의 ‘사회적 인식’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표 III-3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지표체계

구 분	분 류
인가와 가족	청년층 인구수, 혼인율, 초혼 연령 등
교육	대학등록금, 졸업 유예, 대학교육 졸업 후 취업 도움 정도 등
경제	경제활동 참여율, 청년 고용대책 의견, 직무 불일치, 최저임금 등
주거	청년 가구 비율, 청년 주거 대책 의견 등
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신적 문제, 청년 의료비 지출 등
문화와 가치관	여가생활, 여가활동 대상, 계층의식, 생활 만족도 등
관계와 참여	세대갈등, 좋은 시민 행동 의견, 정치 성향 등

<표 III-4>부터 <표 III-10>까지는 각 영역별 핵심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할 필요가 없는 청년 핵심지표에 대해서 기존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차 분석 대상 자료들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출생통계, 혼인·이혼통계, 장래인구추계를 비롯하여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등이며, 고용노동부의 기업생멸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World Value Survey 등이다.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의 핵심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인구와 가족으로 지표를 구분하였으며 2차 자료로 수집가능한 지표로는 청년층 인구수,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혼인건수, 혼인율, 초혼연령,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출산연령 을 설정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지표로는 청년 연령규정, 적정 독립, 결혼, 출산 시기, 해외이주 의사, 연애 망설임 여부, 결혼준비 경험 및 결혼 망설임 여부, 맞벌이 여부, 자녀 유무, 자녀를 가질 계획 등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표 III-4 인구와 가족 영역 핵심지표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2차자료*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1. 인구와 가족	1-1. 인구	1-1-1. 청년층 인구수 1-1-2.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1-1-3. 청년 연령규정 1-1-4. 적정 독립 시기 1-1-5. 적정 결혼 시기 1-1-6. 적정 출산 시기 1-1-7. 해외이주 의사 1-1-8. 해외이주 고려 이유
	1-2. 가족	1-2-1. 혼인건수 1-2-2. 혼인율 1-2-3. 초혼연령 1-2-4. 출생아 수 및 출산율 1-2-5. 출산연령	1-2-6. 연애 망설임 여부 1-2-7. 결혼준비 경험 1-2-8. 결혼 망설임 여부 1-2-9. 맞벌이 여부 1-2-10. 자녀 유무 1-2-11. 자녀를 가질 계획

* 출처: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통계청),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음으로 교육 영역의 핵심지표는 크게 교육생활과 교육여건으로 지표를 구분하였다. 교육생활영역 중 2차자료로 파악할 지표로는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장학금 규모,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대출자 휴학 현황, 대학생 학업중단율을 설정하였고,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할 지표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와 관련한 지표와 스펙 쌓기,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유,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의사를 설정하였다. 졸업 유예는 대학교에서 졸업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서 졸업유예를 위하여 학교의 졸업 유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와 졸업을 늦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졸업유예에 대한 지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소영역인 교육여건의 2차자료로 파악할 지표로는 학교 수, 학생 수, 진학률, 취학률을 설정하였다.

표 III-5 교육 영역 핵심지표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2차자료*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 교육	2-1. 교육생활	2-1-1. 대학등록금	2-1-7.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2-1-2.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2-1-8. 스펙 쌓기
		2-1-3. 장학금 규모	2-1-9.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유
		2-1-4.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2-1-10.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의사
		2-1-5. 대출자 휴학 현황	
		2-1-6. 대학생 학업중단율	
	2-2. 교육여건	2-2-1. 학교수	
		2-2-2. 학생수	
		2-2-3. 진학률	
		2-2-4. 취학률	

* 출처: 교육기본통계(교육부), 교육통계분석자료집(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대학 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음으로 경제 영역의 핵심지표는 크게 직업영역과 소득 및 소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청년들의 소득과 소비 생활의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와 소비의 선호, 취업과 경제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최저임금과 소비생활에 필요한 최소필요비용 등을 파악하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2차자료를 통해 수집할 지표로는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창업비율, 니트(NEET) 비율, 비정규직 비율, 신규 채용률, 청년 소득, 청년 소비,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청년 부채를 설정하였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지표로는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및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직무 불일치등과 같은 의견을 파악하는 지표와 취업 유예, 취업 실태, 직업 훈련 등과 같은 실태를 파악하는 지표들을 설정하였다. 또한, 2017년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과 소비생활 중 지출이 큰 항목, 소비지출 확대 항목, 계획적인 소비 여부, 채부 여부를 설정하였다.

표 III-6 경제 영역 핵심지표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2차자료*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3.경제	3-1. 직업	3-1-1. 경제활동 참여율	3-1-8.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3-1-2. 고용률	3-1-9.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3-1-3. 실업률	3-1-10. 취업 준비	
		3-1-4. 창업 비율	3-1-11. 중소기업 취업 의향	
		3-1-5. 니트(NEET) 비율	3-1-12. 창업 경험 및 의사	
		3-1-6. 비정규직 비율	3-1-13.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3-1-7. 신규 채용률	3-1-14. 직무 불일치	
	3-2. 소득 및 소비			3-1-15. 직업 훈련
		3-2-1. 청년 소득	3-2-6. 최저임금	
		3-2-2. 청년 소비	3-2-7. 소비생활 중 지출이 큰 항목	
		3-2-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3-2-8. 소비지출 확대 항목	
		3-2-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3-2-9. 계획적인 소비 여부	
		3-2-5. 청년 부채	3-2-10. 채무 여부	

*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신설법인동향(중소기업청), 청년층 동향(김기현, 2015c),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한국경영자총연합회),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II-7>은 주거 영역의 핵심지표를 나타낸다. 주거 영역의 핵심지표는 크게 주거 현황과 여건으로 구분하였으며, 청년층 주거형태, 청년층 실주거비, 청년 가구 비율, 청년 1인 가구 비율,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기숙사 수용률 같은 실태를 파악하는 지표는 2차자료를 통해 수집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 부모 동거 여부, 미혼 혼자 거주 여부, 현재 주거 형태, 현재 거주지 전입신고 여부, 주거 마련 시기 의견, 공동주거, 평소 주거 생각 같이 2차자료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지표로 설정하였다.

표 III-7 주거 영역 핵심지표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2차자료*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4.주거	4-1. 주거현황	4-1-1. 청년층 주거형태 4-1-2. 청년층 실주거비 4-1-3. 청년 가구 비율 4-1-4. 청년 1인 가구 비율	4-1-5.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 4-1-6. 부모 동거 여부 4-1-7. 미혼 혼자 거주 여부 4-1-8. 현재 주거 형태 4-1-9. 현재 거주지 전입신고 여부
	4-2. 주거여건	4-2-1.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4-2-3.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4-2-4. 기숙사 수용률	4-2-4. 주거 마련 시기 의견 4-2-5. 공동주거 4-2-6. 평소 주거 생각

*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기숙사 수용률(대학알리미),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요인은 소득, 자산, 나이, 학력, 직업, 건강 등 무궁무진하겠으나 그 중 건강은 다른 요인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요소라 볼 수 있다. 건강 영역은 조사된 해외의 청년 핵심지표에서 전부 다루고 있는 영역으로 청년들의 전반적인 신체적/정신적/주관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건강 영역은 크게 신체 및 정신건강과 의료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2차자료를 통해 파악할 지표로는 정기적인 운동습관, 비만율,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률, 흡연율, 음주율, 청년 의료비 지출, 청년 병원 이용,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을 설정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지표로는 주관적 체형, 주관적 건강 수준과 같은 주관적인 건강 상태의 지표와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같은 객관적인 건강상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스펙 쌓기의 항목 중 성형수술을 의료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내용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III-8 건강 영역 핵심지표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2차자료*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5.건강	5-1. 신체 및 정신건강	5-1-1. 정기적인 운동습관	5-1-8. 주관적 체형
		5-1-2. 비만을	5-1-9. 주관적 건강 수준
5-1-3. 스트레스		5-1-10. 일상생활 스트레스	
5-1-4. 우울증			
5-1-5. 자살률			
5-1-6. 흡연율			
5-1-7. 음주율			
	5-2. 의료	5-2-1. 청년 병원 이용	5-2-3. 성형수술 여부
		5-2-2.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5-2-4. 성형수술 목적

*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사회조사(통계청), 한국의료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음으로 문화와 가치관 영역의 핵심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문화 및 여가, 가치관으로 지표를 구분하였으며 2차자료로 수집가능한 지표로는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비용/만족도, 독서율,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을 설정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지표로는 문화예술 관심, 여가활동 대상, 자주 접한 뉴스매체, 가치 항목별 선호도,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 생활 만족도, 개인적 고민, 성공 여건, 미래 성공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생활이나 의식, 정서적인 태도와 관련한 지표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와 참여 영역의 핵심지표는 크게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영역과 사회활동, 정치 참여와 같은 참여를 의미하는 참여 영역으로 지표를 구분하였다. 관계영역 중 2차자료로 파악할 지표로는 사회적 관계망, 부모와의 교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관계 만족도를 설정하였고,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할 지표로는 친한 친구 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노인과의 갈등과 같은 세대갈등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소영역인 참여의 2차자료로 파악할 지표로는 자원봉사 참여, 기부활동, 단체참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투표율 및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를 설정하였고,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할 지표로는 의견 표명 행동, 한국사회 공정성 수준, 정치 성향 등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표 III-9 문화와 가치관 영역 핵심지표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2차자료*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6.문화와 가치관	6-1. 문화 및 여가	6-1-1.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6-1-2.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6-1-3.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6-1-4. 독서율	6-1-5. 문화예술 관심 6-1-6. 여가활동 대상 6-1-7. 자주 접한 뉴스매체
	6-2. 가치관	6-2-1. 주관적 행복감 6-2-2. 삶의 만족도 6-2-3. 주관적 계층의식	6-2-4. 가치 항목별 선호도 6-2-5.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 6-2-6.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6-2-7.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6-2-8. 성공 여건 6-2-9. 미래 성공 가능성

* 출처: 사회조사(통계청), 국민독서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II-10 관계와 참여 영역 핵심지표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2차자료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7.관계와 참여	7-1. 관계	7-1-1. 사회적 관계망 7-1-2. 부모와의 교류(가구주) 7-1-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7-1-4. 가족관계 만족도	7-1-5. 친한 친구 수 7-1-6. 세대갈등
	7-2. 참여	7-2-1. 자원봉사 참여 7-2-2. 기부활동 7-2-3. 단체참여 7-2-4. 투표율 7-2-5.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7-2-6. 의견 표명 행동 7-2-7. 한국사회 공정성 수준 7-2-8. 정치 성향

* 출처: 사회조사(통계청),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중합사회조사(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1) 조사 개요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청년 고용지표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사회·경제 실태 전반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만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생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과 현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청년 실태를 분석할 자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청년 세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2) 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15세-39세로 포괄적인 청년 정의에 포함되는 연령대를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포괄적으로 조사 대상을 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조사에서 청년 연령 규정에 관한 다양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인기 이행시점은 개인마다 편차가 존재하는데 법률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최저연령은 15세이기 때문에 15세부터 대상을 삼았고 취업, 결혼이나 출산 등과 관련해 최고연령을 39세로 삼아 이행시점과 더불어 이행기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등 연령집단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중복대상인 아동과 청소년, 청년의 경계에 있는 응답자 모두에게 응답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의를 적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유는 2013년과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실시한 선행 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선행 조사들은 19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되 19세보다 15세로 대상 폭을 더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15세로 낮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업 가능 최저연령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표본 크기는 전국 만15세-39세의 2,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 기간은 2016년 6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10주 동안 진행되었다. 또한,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사과정 중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사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 또는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6일 총 9인⁹⁾으로 구성된 조사대상자들에게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고, FGI에 참여한 대상자는 <부록표 2-1>과 같다.

3) 조사 범위 및 내용

조사표의 구성은 만15세-18세에 포함되는 중·고등학생들이 응답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제외한 설문지와 만19세-39세가 전부 응답이 가능한 설문지 두 종류로 구성하였다. 이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설문지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4) 조사 방법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가구방문 면접조사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전문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5) 표본 설계¹⁰⁾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5세-39세의 일반국민이다. 표본추출틀로는 통계청 집계구¹¹⁾를 사용하였고, 표본크기는 2,500명으로 산정하였다.

9) 본 조사의 설문지는 만15-18세용과 만19-39세용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FGI를 위해 필요한 조사대상자 그룹을 A그룹(만15세-18세)과 B그룹(만19세-39세)으로 구분하였고, A그룹은 중학생 1명(여1)과 고등학생 2명(남1,여1)으로 B그룹은 20대 3명(초반/중반/후반)과 30대 3명(초반/중반/후반)(남3,여3)으로 구성하였다.

10) 자세한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설정은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참조.

11) 집계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와 유사하게 공간통계의 기본단위로 이용하기 위해 작성한 별도의 블록(block)이다. 집계구는 평균 1.1km²의 면적에 평균적으로 200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조사구(평균 60가구)에 비해 약 3.3배의 크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 조사 결과

전국 만15세-39세의 2,500명을 목표로 진행된 조사는 결과적으로 2,534명이 조사되었고, 지역별, 성별 목표 표본에 대한 조사완료 비율은 <표 III-11>와 같다. 목표 표본에 대한 조사 완료 비율은 101.4%(2,534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102.5%, 여자가 100.2%로 조사되었다.

표 III-11 시/도별, 성별, 연령별 조사 결과

(단위: %)

구 분		만15-18세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합계
서울	남	103.3	100	106.4	100	100	101.7
	여	100	101.9	97.9	100	98.1	99.6
부산	남	100	100	100	10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대구	남	100	105.9	100	91.7	100	100
	여	100	92.9	100	108.3	100	100
인천	남	100	105.6	114.3	106.3	100	105.3
	여	109.1	105.9	107.7	100	93.8	102.8
광주	남	100	100	114.3	100	100	102.3
	여	100	100	85.7	100	100	97.6
대전	남	100	100	125	111.1	111.1	109.1
	여	100	100	100	111.1	122.2	107
울산	남	100	100	100	10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세종	남	100	100	100	10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경기	남	100	98.6	113.5	96.7	101.5	101.7
	여	102.4	104.8	91.7	98.2	98.5	99.3
강원	남	128.6	90.9	100	100	100	102.4
	여	83.3	100	116.7	85.7	100	97.2
충북	남	114.3	118.2	100	133.3	100	113.6
	여	100	100	100	112.5	100	102.5
충남	남	111.1	116.7	100	109.1	108.3	109.3
	여	100	100	100	120	109.1	106.1

구 분		만15-18세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합계
전북	남	100	100	100	10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전남	남	112.5	100	100	100	100	102.1
	여	87.5	100	100	100	100	97.6
경북	남	100	100	100	10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경남	남	100	95.0	107.1	106.3	100	101.2
	여	100	100	100	93.3	100	98.6
제주	남	100	100	125	75.0	100	100
	여	100	100	100	100	100	100
전국	남	103	101	107.1	101.1	101.1	102.5
	여	100	101.4	98.2	100.8	100	100.2
	합계	101.6	101.2	102.8	101	100.5	101.4

3.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본 절에서는 전술한 한국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핵심지표를 토대로 각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지표는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사회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2차자료를 통해 수집한 결과와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각 핵심지표는 시간에 따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하여 2차자료 지표는 가능한 경우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지표는 동일조사항목이 있는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인구와 가족

(1) 인구

1-1-1. 청년층 인구수

<표 - 12>은 인구와 가족 영역의 첫 번째 핵심지표인 청년층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다. 15세부터 39세로 정의한 청년층인구수는 2000년 2,057만명에서 2015년 1,763만명으로 이 기간 동안의 청년층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CAGR)¹²⁾은 -1.0%로 매년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I-12 청년층 인구수

(단위: 만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청년층 (15-29세)	1,205	1,176	1,145	1,118	1,093	1,072	1,064	1,061	1,059	1,056	1,047	1,038	1,024	1,012	1,004	998
남자	621	607	591	578	566	556	553	552	553	552	549	546	540	535	531	528
여자	584	569	554	540	527	517	511	508	506	504	498	492	484	478	473	470
청년층 (20-29세)	821	815	804	794	777	759	748	737	727	715	700	692	682	677	677	680
남자	422	420	415	409	401	391	387	382	377	371	365	362	359	358	359	362
여자	399	395	390	384	376	367	361	356	350	344	335	329	323	320	318	319
청년층 (15-39세)	2,057	2,032	2,004	1,978	1,952	1,926	1,912	1,901	1,892	1,877	1,860	1,847	1,825	1,803	1,782	1,763
남자	1,057	1,045	1,031	1,019	1,006	993	988	983	980	973	965	960	950	939	929	921
여자	1,000	987	973	959	946	933	925	918	912	904	895	887	875	863	852	842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Ending Value/Beginning Value)^{1/Number of year}-1)로 계산함.

1-1-2. 전체인구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전체인구대비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 인구 구성비는 절대적인 청년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경향으로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도 2000년 43.8%에서 2015년 34.8%까지 약 9.0%p 줄어들어 갈수록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III-13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청년층 (15-29세)	25.6	24.8	24.0	23.4	22.7	22.3	22.0	21.8	21.6	21.5	21.2	20.9	20.5	20.2	19.9	19.7
남자	26.2	25.5	24.7	24.0	23.4	23.0	22.8	22.6	22.5	22.4	22.2	21.9	21.6	21.3	21.0	20.9
여자	25.0	24.2	23.4	22.7	22.1	21.6	21.2	21.0	20.8	20.5	20.2	19.8	19.4	19.0	18.8	18.6
청년층 (20-29세)	17.5	17.2	16.9	16.6	16.2	15.8	15.5	15.2	14.8	14.5	14.2	13.9	13.6	13.5	13.4	13.4
남자	17.8	17.6	17.3	17.0	16.6	16.2	15.9	15.6	15.3	15.0	14.7	14.5	14.3	14.2	14.2	14.3
여자	17.1	16.8	16.5	16.2	15.8	15.3	15.0	14.7	14.4	14.0	13.6	13.3	12.9	12.7	12.6	12.6
청년층 (15-39세)	43.8	42.9	42.1	41.3	40.6	40.0	39.5	39.1	38.7	38.2	37.6	37.1	36.5	35.9	35.3	34.8
남자	44.6	43.8	43.0	42.3	41.7	41.0	40.6	40.3	39.9	39.4	39.0	38.5	37.9	37.4	36.9	36.4
여자	42.9	42.0	41.1	40.3	39.6	39.0	38.4	37.9	37.4	36.9	36.3	35.7	35.1	34.4	33.8	33.3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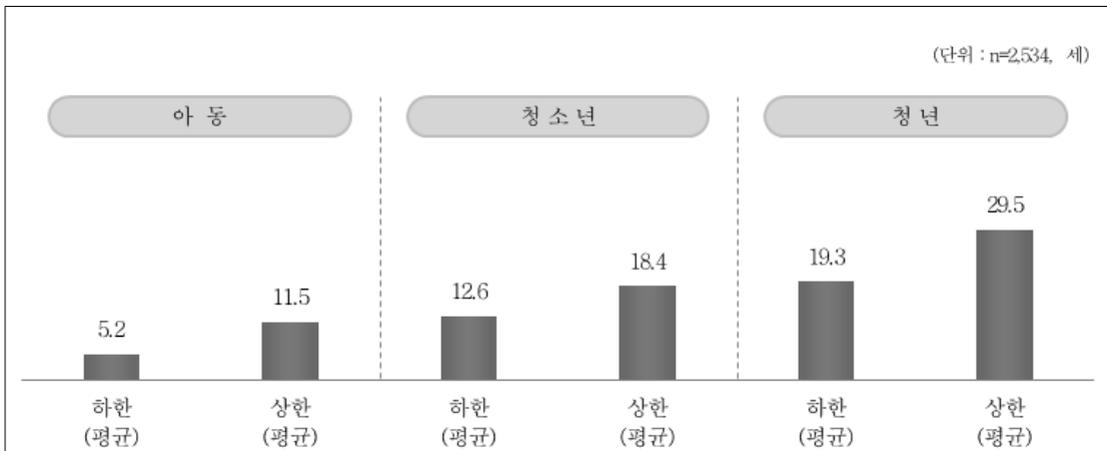
1-1-3. 청년 연령규정

청년 연령규정은 평균적으로 하한 19.3세, 상한 29.5세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15세에서 39세의 응답자들이 청년에 대하여 생각하는 연령으로 대략 20대를 청년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4 청년 연령규정

(단위: 세)

	2016	
	하한(평균)	상한(평균)
전체	19.3	29.5
성별		
남자	19.4	29.7
여자	19.3	29.3
연령		
20대	19.4	29.2
30대	19.3	29.8



【그림 III-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규정

1-1-4. 적정 독립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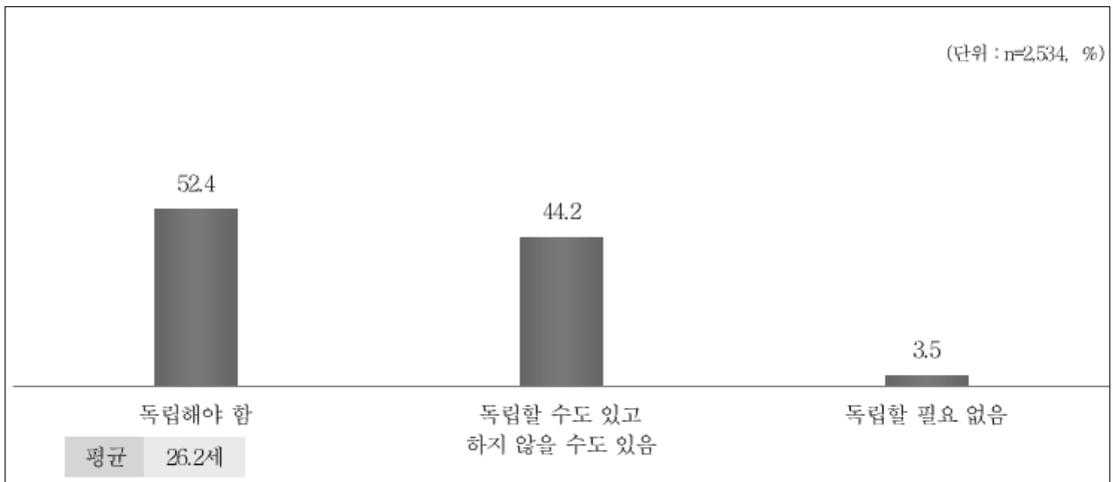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에 '독립해야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52.4%로 나타났으며, 평균 독립 시기는 26.2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을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6%, 여자의 경우에는 50.0%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독립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 시기는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적정 독립 시기

(단위: %)

	2016	
	%	평균(세)
전체	52.4	26.2
성별		
남자	54.6	26.2
여자	50.0	26.3
연령		
20대	52.2	26.2
30대	52.0	26.9

* 주: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에 '독립해야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그림 III-2】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1-1-5. 적정 결혼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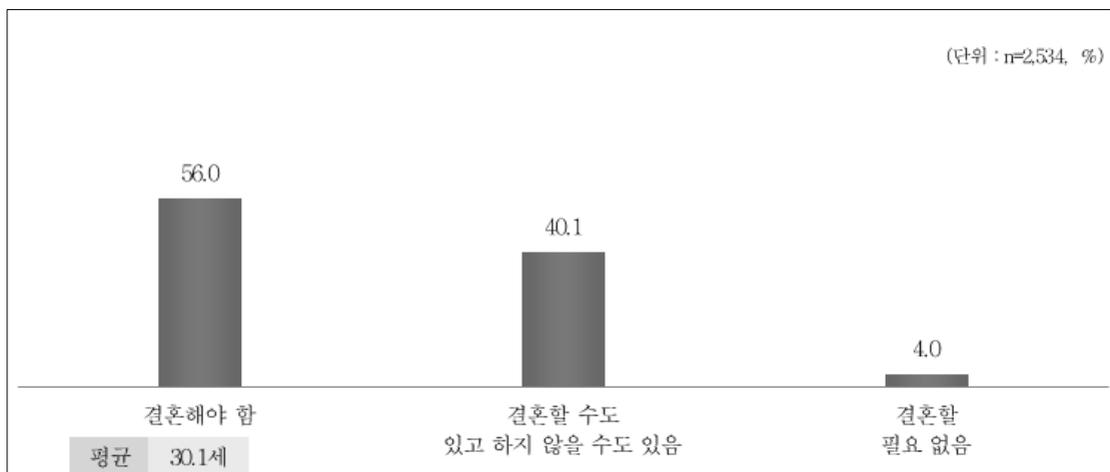
적정 결혼 시기는 2015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되어 시계열로 살펴보았다. 2015년 조사의 경우 31.0세, 2016년 조사의 경우 30.1세로 나타나 적정 결혼 시기에 대한 생각이 약 0.9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적정 결혼 시기로 생각하는 나이가 2016년 기준 0.8세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16년 조사의 경우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적정 결혼 시기

(단위: 세)

	2015	2016
전체	31.0	30.1
성별		
남자	31.6	30.5
여자	30.3	29.7
연령		
20대	30.6	30.1
30대	32.9	30.4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그림 III-3】 결혼의 필요성

1-1-6. 적정 출산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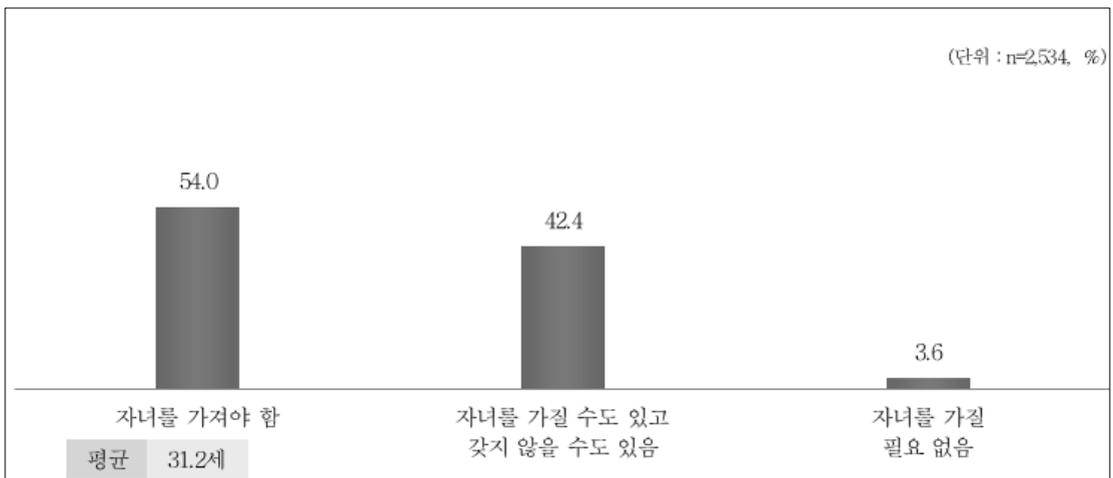
자녀를 가질 필요성에 '자녀를 가져야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54.0%로 나타났으며, 적정 출산 시기는 31.2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 여자의 경우에는 52.9%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지표인 적정 결혼 시기는 30.1세로 조사되었는데, 적정 출산 시기는 31.2세로 나타나 결혼 후 1년 정도 지난 시기를 적정 출산 시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7 적정 출산 시기

(단위: %)

	2016	
	%	평균(세)
전체	54.0	31.2
성별		
남자	55.1	31.7
여자	52.9	30.6
연령		
20대	51.4	31.3
30대	56.6	31.3

* 주: 자녀를 가질 필요성에 '자녀를 가져야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그림 III-4】 자녀를 가질 필요성

1-1-7. 해외이주 의사

다음으로 해외이주 의사를 살펴보면, 만 15세에서 만 39세의 청년 전체적으로는 해외이주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2.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거의 동일하게 해외이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에는 26.5%, 30대의 경우에는 18.1%로 나타나 20대와 30대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8 해외이주 의사

(단위: %)

	2016		
	있 다	없 다	모 름/무응답
전체	22.2	77.7	0.0
성별			
남자	22.2	77.7	0.1
여자	22.3	77.7	-
연령			
20대	26.5	73.4	0.1
30대	18.1	81.9	-

1-1-8. 해외이주 고려 이유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한 해외이주 고려 이유를 살펴보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27.8%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가 18.5%, '자기계발을 위해서'가 12.8%,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가 12.6%,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가 8.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9 해외이주 고려 이유

(단위: %)

구분	2016
행복한 삶을 위해서	27.8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18.5
자기계발을 위해서	12.8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12.6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8.4
빈부격차가 커서	7.8
취업이 어려워서	6.8
집값이 너무 비싸서	2.5
안보가 불안해서	1.7
기타	1.2
모름/무응답	0.0

* 주: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가족

1-2-1. 혼인건수

다음 <표 III-20>은 인구와 가족 영역 중 두 번째 소분류인 가족의 첫 번째 핵심지표인 혼인건수를 나타낸다. 만 15세에서 만 39세로 정의한 청년층의 혼인건수는 남자의 경우 2000년 304천건에서 2015년 248천건으로 15년동안 약 56천건 줄어들었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여자의 경우에도 2000년 313천건에서 2015년 264천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청년층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29세로 살펴본 경우에는 남자의 혼인건수는 여자의 혼인건수의 절반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남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30세가 넘어야 혼인을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III-20 혼인건수

(단위: 천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청년층 (15-29세)																
남자	189	170	154	141	130	124	131	131	119	108	107	104	94	89	80	78
여자	258	238	221	211	204	201	215	218	200	180	184	177	165	157	141	138
청년층 (20-29세)																
남자	187	168	152	140	129	123	129	130	119	107	106	103	93	88	79	77
여자	250	231	216	206	199	195	207	212	193	175	178	172	160	152	138	135
청년층 (15-39세)																
남자	304	287	273	265	263	264	282	293	276	259	272	276	273	270	252	248
여자	313	297	283	277	277	280	300	311	295	276	291	294	290	286	267	264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2-2. 혼인율

혼인율은 혼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써, 인구 1천 명당 몇 건인지를 의미하는 조(粗)혼인율¹³⁾로 보통 표현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년이므로 혼인율을 해당연령 천명당 건으로 재산출 하였다. 만 15세에서 만 39세로 정의한 청년층의 혼인율은 남자의 경우 2000년에 28.8명, 2015년에 27.0명으로 나타나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자의 경우에도 2000년에 31.3명, 2015년에 31.4명으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 20세에서 만 29세로 정의한 청년층의 혼인율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2000년 44.3명에서 2015년 21.2명으로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에도 2000년 62.7명에서 2015년 42.3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혼인율

(단위: 해당연령 천명당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청년층 (15-29세)																
남자	30.5	28.0	26.0	24.4	23.0	22.3	23.6	23.8	21.6	19.5	19.5	19.0	17.4	16.6	15.1	14.7
여자	44.2	41.8	40.0	39.1	38.7	38.8	42.0	42.9	39.5	35.7	37.0	36.1	34.1	32.8	29.9	29.4
청년층 (20-29세)																
남자	44.3	40.1	36.7	34.2	32.1	31.5	33.5	34.1	31.5	28.8	29.2	28.4	26.0	24.6	22.1	21.2
여자	62.7	58.5	55.3	53.6	52.9	53.0	57.2	59.6	55.3	50.9	53.1	52.3	49.6	47.6	43.2	42.3
청년층 (15-39세)																
남자	28.8	27.5	26.5	26.0	26.1	26.5	28.5	29.8	28.2	26.6	28.2	28.8	28.7	28.7	27.1	27.0
여자	31.3	30.1	29.1	28.9	29.3	30.0	32.4	33.9	32.3	30.5	32.5	33.1	33.2	33.2	31.4	31.4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3) 인구 1천 명당 건

1-2-3. 초혼연령

다음 <표 III-22>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을 나타낸다. 먼저, 남성의 경우 평균 초혼 연령은 2000년 29.3세에서 2015년 32.6세로 15년동안 평균이 3.3세 증가하였고,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0년 26.5세에서 2015년 30.0세로 평균이 3.5세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성장률은 각각 0.7%와 0.8%로 남성과 여성 모두 매년 꾸준히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차이의 평균은 약 2.9세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22 성별 초혼 연령

(단위: 세,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초혼 연령(남성)	29.3	29.6	29.8	30.1	30.5	30.9	31.0	31.1	31.4	31.6	31.8	31.9	32.1	32.2	32.4	32.6
전년대비 증감(남성)	0.21	0.26	0.23	0.37	0.39	0.34	0.08	0.15	0.27	0.23	0.22	0.06	0.23	0.08	0.21	0.15
평균 초혼 연령(여성)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28.3	28.7	28.9	29.1	29.4	29.6	29.8	30.0
전년대비 증감(여성)	0.20	0.29	0.24	0.26	0.25	0.20	0.08	0.29	0.24	0.38	0.21	0.23	0.27	0.18	0.22	0.15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2-4. 출생아 수 및 출산율

<표 III-23>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모(母)의 연령에 따른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만 15세에서 만 39세로 정의한 청년층 모의 연령기준 2000년 출생아 수는 627천명에서 2015년 426천명으로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2015년의 출생아 수는 출생아 수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네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만 20세에서 만 29세로 청년층을 정의하면 출생아수는 2000년 403천명에서 2015년 115천명으로 혼인율이 낮아진 만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출생아 수 (모의 연령)

(단위: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청년층(15-29세)	407	338	283	270	242	211	207	222	200	184	175	165	155	128	120	117
청년층(20-29세)	403	334	278	266	239	208	204	219	197	181	172	162	152	125	117	115
청년층(15-39세)	627	547	486	484	466	429	442	486	458	436	460	460	473	425	423	426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증가율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써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대상은 청년이므로 출산율 또한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으로 재산출하였다. 만 15세에서 만 39세로 정의한 청년층의 경우 출산율은 2000년 62.7명에서 2015년 50.5명으로 15년동안 약 12.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정의를 만 20세에서 29세로 정의하면 15년동안 출산율은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대 혼인율이 크게 감소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4 출산율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청년층(15-29세)	69.7	59.4	51.1	49.9	45.9	40.8	40.5	43.7	39.5	36.5	35.1	33.5	31.9	26.7	25.3	25.0
청년층(20-29세)	101.0	84.6	71.4	69.1	63.5	56.5	56.3	61.5	56.3	52.6	51.2	49.1	47.0	39.1	36.9	36.1
청년층(15-39세)	62.7	55.4	50.0	50.5	49.3	45.9	47.7	52.9	50.2	48.3	51.4	51.9	54.0	49.2	49.7	50.5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2-5. 출산연령

다음으로 <표 III-25>은 청년 핵심지표 중 출산연령을 나타낸다. 평균 출산연령은 2000년 29.0세에서 2014년 32.0세로 14년동안 3세정도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족 지표인 혼인건수, 혼인율, 초혼연령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평균 출산연령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I-25 출산연령

(단위: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산연령	29.0	29.3	29.5	29.7	30.0	30.2	30.4	30.6	30.8	31.0	31.3	31.4	31.6	31.8	32.0	32.2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2-6. 연애 망설임 여부

다음으로 미취업 또는 직업(직장) 불안정으로 연애를 망설인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인 연애 망설임 여부는 2015년 17.6%, 2016년 23.5%로 나타나 연애 망설임 여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남자가 여자보다 12.5%p 더 연애를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0대보다 30대가 2016년기준 10.3%p 더 연애를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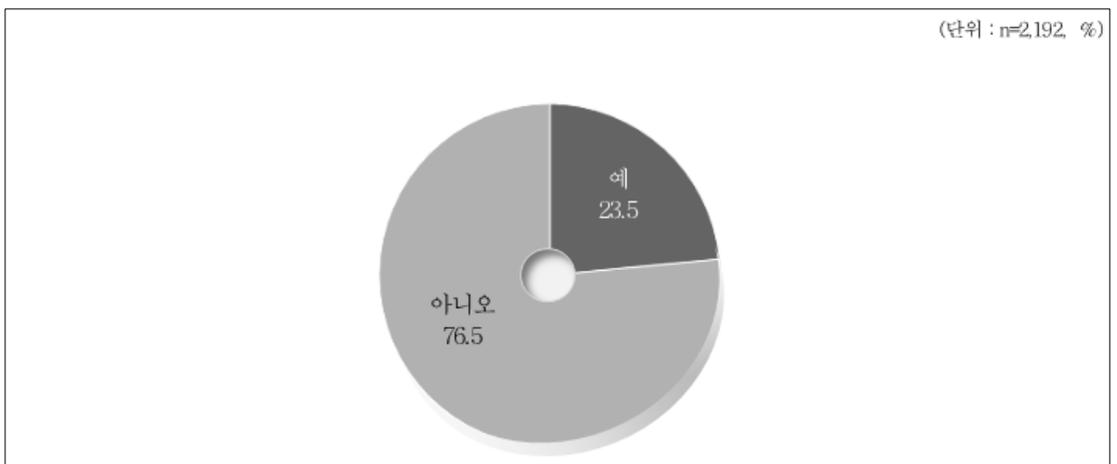
표 III-26 연애 망설임 여부

(단위: %)

	2015	2016
전체	17.6	23.5
성별		
남자	19.0	29.5
여자	15.6	17.0
연령		
20대	12.4	18.4
30대	32.0	28.7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미취업 또는 직업(직장) 불안정으로 연애를 망설인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그림 III-5】 미취업 또는 직업(직장) 불안정으로 연애를 망설인 경험

1-2-7. 결혼준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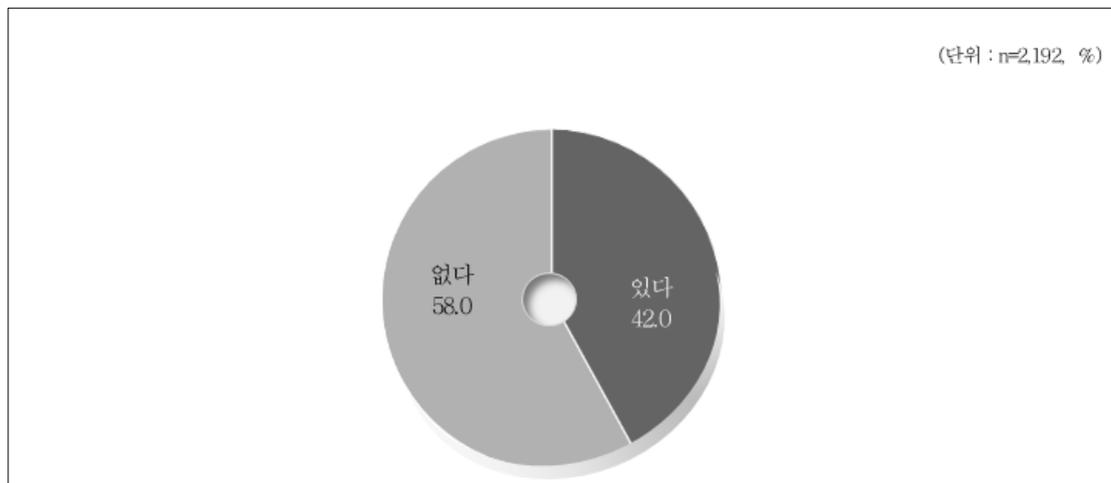
결혼준비 경험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인 결혼준비 경험은 42.0%로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 36.4%, 여자의 경우 47.9%로 남자보다 여자가 결혼준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의 경우 74.8%가 결혼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7 결혼준비 경험

(단위: %)

		2016
전체		42.0
성별	남자	36.4
	여자	47.9
연령	20대	9.2
	30대	74.8

*주: 결혼준비 경험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그림 III-6】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

1-2-8. 결혼 망설임 여부

다음으로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임 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하였는데 그 비율이 41.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대보다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 망설임 여부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8 결혼 망설임 여부

(단위: %)

		2016
전체		41.4
성별		
	남자	46.3
	여자	37.5
연령		
	20대	49.7
	30대	40.5

* 주: 1)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임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1-2-9. 맞벌이 여부

다음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를 살펴보면, 47.7%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9 맞벌이 여부

(단위: %)

		2016	
		예(맞벌이)	아니오(외벌이)
전체		47.7	52.3
성별			
	남자	49.3	50.7
	여자	46.5	53.5
연령			
	20대	49.5	50.5
	30대	47.5	52.5

* 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1-2-10. 자녀 유무

다음으로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조사 대상 중 31.7%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평균 1.6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0 **자녀 여부**

(단위: %)

	2016	
	%	평균(명)
전체	31.7	1.6
성별		
남자	25.2	1.5
여자	38.8	1.7
연령		
20대	4.8	1.2
30대	58.7	1.6

* 주: 자녀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2-11. 자녀를 가질 계획

자녀를 가질 계획은 전체 응답자의 59.5%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남자의 경우 66.2%, 여자의 경우 52.2%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5.5%, 30대가 43.5%로 나타나 20대가 30대보다 자녀를 가질 계획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자녀를 가질 계획**

(단위: %)

	2016
전체	59.5
성별	
남자	66.2
여자	52.2
연령	
20대	75.5
30대	43.5

* 주: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교육

(1) 교육생활

2-1-1. 대학등록금

<표 III-32>은 대학등록금의 변화와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학알리미에서 공시되고 있는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학교유형, 설립유형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의 등록금이 약3%정도 더 많은 편이지만 이는 국공립 대학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가장 적은 국공립대학과 비교하면 전문대는 약 14~16%, 4년제 사립대학은 61~63%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등록금 완화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14년 약696만원에서 2015년 697만원, 2016년 698만원 등 소폭 상승하고 있다.

표 III-32 대학등록금

(단위: 천원)

지역	2014				2015				2016			
	전문대 전체	대학			전문대 전체	대학			전문대 전체	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평균	5,721	5,544	2,641	6,955	5,726	5,553	2,666	6,971	5,730	5,551	2,651	6,984
서울	5,926	4,205	1,178	6,709	5,926	4,231	1,223	6,758	5,920	4,236	1,221	6,776
부산	5,879	5,750	4,068	6,419	5,881	5,728	4,071	6,392	5,879	5,730	4,072	6,401
대구	5,511	5,627	4,208	7,141	5,504	5,598	4,179	7,141	5,500	5,565	4,139	7,140
인천	5,795	6,156	4,483	7,579	5,776	6,158	4,469	7,586	5,761	6,155	4,446	7,594
광주	5,126	5,875	3,992	6,543	5,132	5,912	4,062	6,556	5,141	5,881	3,988	6,578
대전	5,445	6,210	4,635	6,915	5,460	6,133	4,631	6,843	5,462	6,129	4,644	6,837
울산	5,563	7,057	6,177	7,286	5,599	7,062	6,175	7,286	5,625	7,084	6,175	7,285
경기	6,332	7,582	4,061	7,669	6,325	7,577	4,061	7,691	6,319	7,581	4,062	7,695
강원	5,252	5,971	4,115	7,243	5,260	5,985	4,115	7,258	5,247	6,019	4,112	7,296
충북	5,370	6,212	4,046	7,318	5,361	6,173	4,048	7,260	5,356	6,184	4,050	7,272
충남	5,773	6,897	3,774	7,291	5,773	6,904	3,763	7,298	5,776	6,913	3,763	7,314
전북	5,532	5,734	4,007	6,599	5,516	5,731	4,015	6,614	5,508	5,738	4,024	6,628
전남	4,835	4,966	3,890	6,260	4,851	4,964	3,884	6,284	4,846	4,992	3,880	6,309
경북	5,360	6,601	3,757	6,916	5,370	6,610	3,754	6,927	5,379	6,614	3,755	6,933
경남	5,166	5,325	3,862	6,504	5,193	5,333	3,865	6,522	5,207	5,338	3,856	6,533
제주	4,645	4,312	3,782	6,389	4,697	4,443	3,782	6,383	4,768	4,454	3,783	6,384
세종	5,741	8,189	0	8,189	5,788	8,192	0	8,192	5,829	8,194	0	8,194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국립대법인을 포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2-1-2.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표 III-33>은 대학등록금대출자의 비율의 변화와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등록금대출자는 학교유형과 설립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문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2014년 17%가 등록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이후 2015년 15.5%, 2016년 12.6%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설립유형에 따라 많은 격차를 보인다. 국공립학생들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기 때문에 대출자비율도 낮은 편이며, 2014년 5.7%에서 2015년 4.9%, 그리고 2016년 4.1%로 감소하고 있다. 4년제 사립대학생들의 등록금대출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표 III-33 대학등록금대출자비율

(단위: %)

지역	2014				2015				2016			
	전문대 전체	대학			전문대 전체	대학			전문대 전체	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평균	17.42	11.88	5.68	14.41	15.45	10.80	4.87	13.21	12.63	9.21	4.13	11.27
서울	22.16	10.33	2.71	13.04	19.54	9.98	2.71	12.47	15.85	8.86	2.56	10.95
부산	17.11	11.75	7.22	14.23	15.23	10.28	5.96	12.67	11.65	8.19	4.94	10.03
대구	14.48	9.99	7.51	13.24	12.47	8.91	6.23	12.44	9.80	7.65	5.31	10.84
인천	21.29	13.44	11.59	15.07	18.65	11.78	9.65	13.58	14.12	9.56	7.35	11.41
광주	12.61	10.81	6.37	13.38	10.60	9.59	5.42	12.01	8.80	7.61	4.49	9.43
대전	13.87	11.66	6.58	15.08	12.73	10.15	5.49	13.30	10.12	8.14	4.63	10.56
울산	11.77	8.18	6.41	8.55	10.21	7.99	5.84	8.54	7.75	6.86	3.91	7.75
경기	21.65	17.89	7.39	18.21	19.59	16.54	6.05	16.86	16.76	14.50	4.99	14.80
강원	15.87	12.34	8.21	16.08	14.57	10.93	6.91	14.62	11.39	8.92	5.69	11.86
충북	14.37	11.56	6.63	15.85	12.70	9.90	5.14	14.05	10.61	8.31	4.39	11.70
충남	17.29	15.55	7.94	16.90	15.58	13.31	6.75	14.50	12.60	11.24	5.79	12.23
전북	16.37	11.66	6.58	14.81	14.06	10.38	5.81	13.28	11.71	8.76	4.85	11.22
전남	10.84	9.55	6.92	12.67	9.24	8.55	5.56	12.12	7.08	6.92	4.25	10.11
경북	12.79	12.24	5.89	13.08	11.39	10.42	4.44	11.20	8.70	8.68	3.70	9.33
경남	13.66	8.99	6.02	11.50	11.62	7.73	4.89	10.15	9.90	6.36	3.87	8.49
제주	11.51	6.77	6.42	10.77	8.17	5.55	5.07	10.65	5.65	4.31	3.96	7.06
세종	21.67	0.00	0	0.00	18.70	0.00	0	0.00	14.73	0.00	0	0.00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국립대법인을 포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2-1-3. 장학금 규모

<표 Ⅲ-34>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4년제 국공립대학이 가장 적고, 전문대, 그리고 4년제 사립대학의 순으로 1인당 장학금을 더 많이 받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과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4년제 사립대학이 가장 적다(2014년 36.8%→2015년 41.8%→2016년 45.2%). 반면, 4년제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규모가 가장 컸으며, 2014년 63%에서 2016년에는 78.4%로 약15%p 증가하였다.

표 Ⅲ-34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단위: 천원)

지역	2014				2015				2016			
	전문대 전체	대학			전문대 전체	대학			전문대 전체	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평균	2,136	2,307	1,675	2,559	2,421	2,657	1,985	2,917	2,563	2,854	2,078	3,155
서울	2,841	1,809	543	2,376	3,221	2,021	666	2,594	3,426	2,178	732	2,768
부산	2,569	2,376	2,214	2,447	3,008	2,803	2,577	2,903	3,213	3,029	2,598	3,224
대구	2,639	2,556	2,425	2,700	3,028	2,892	2,708	3,095	3,248	2,957	2,715	3,231
인천	2,622	2,521	2,329	2,672	3,106	2,777	2,722	2,817	3,240	2,932	2,928	2,935
광주	2,841	2,511	2,229	2,632	3,221	3,061	2,703	3,213	3,348	3,217	2,868	3,367
대전	2,423	2,623	2,767	2,557	3,113	3,096	3,140	3,076	3,422	3,312	3,237	3,349
울산	2,504	2,595	5,892	1,998	2,991	2,924	6,213	2,250	3,003	3,250	5,976	2,571
경기	2,739	2,669	2,219	2,679	3,124	3,016	2,464	3,032	3,336	3,306	2,566	3,328
강원	2,136	2,634	2,205	2,943	2,421	2,927	2,647	3,125	2,563	3,096	2,759	3,337
충북	2,517	2,744	2,372	2,943	2,939	3,185	2,703	3,451	3,249	3,342	2,769	3,667
충남	2,616	2,812	2,086	2,931	3,136	3,224	2,361	3,347	3,306	3,542	2,325	3,720
전북	2,480	2,475	2,295	2,579	2,872	2,786	2,567	2,915	3,112	2,883	2,552	3,081
전남	2,344	2,422	2,247	2,686	2,758	2,913	2,692	3,244	2,923	3,136	2,897	3,486
경북	2,661	2,464	2,260	2,490	3,171	2,989	2,715	3,023	3,325	3,191	2,696	3,252
경남	2,425	2,198	2,112	2,270	2,948	2,614	2,550	2,670	3,007	2,801	2,672	2,917
제주	2,824	2,292	2,236	3,150	3,161	2,571	2,513	3,432	3,326	2,840	2,611	4,866
세종	2,308	2,991	0	2,991	2,832	3,331	0	3,331	2,932	3,624	0	3,624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국립대법인을 포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2-1-4.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표 III-35>는 대학생들의 졸업까지의 소요기간을 학제별로 살펴본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졸자 전체로 보면 2007년 평균 46개월(3.8년)이 소요되던 것이 2011년 49개월(4.1년)로 증가하고 2015년에는 50개월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용불안으로 인해 취업유예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졸업소요기간은 성별과 학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입대로 인한 휴학 등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약 74~78개월(6.1년~6.5년)이 소요되는 반면, 4년제 대학을 다닌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2년 정도가 짧은 51개월~54개월(4.25년~4.5개월)이 소요된다.

표 III-35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단위: 개월)

	성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졸자	전체	46	48	48	48	49	49	49	49	50
	남자	60	62	62	62	63	63	62	63	62
	여자	37	38	38	39	40	40	40	41	41
4년제	전체	61	62	63	63	63	63	63	62	60
	남자	76	76	77	78	77	77	76	76	74
	여자	51	52	52	53	53	54	53	52	52
3년제 이하	전체	34	34	34	33	34	34	34	34	34
	남자	46	47	46	45	46	47	46	46	45
	여자	26	26	26	26	27	27	27	27	27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년도.

2-1-5. 대출자 휴학 현황

대출자들의 휴학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I-36>와 같다. 대학생활 중 휴학을 경험한 비율은 2007년 36.3%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42.9%로 6%p증가한 후 그 이후부터는 약43%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에는 40%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휴학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2007년 72.4%에서 2015년 76.4%에 이르기까지 대다수가 휴학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로 인한 휴학률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휴학기간은 15개월(1.25년)~16개월(1.3년)으로 남성에 비해 짧다.

표 III-36 대출자휴학현황

(단위: %, 개월)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휴학경험자비율	36.3	38.2	39.4	39.7	42.9	42.7	42.9	42.7	40.3
	병역의무이행	74.5	71.0	70.4	67.8	68.1	68.6	68.8	69.4	72.3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	14.6	16.8	17.2	19.3	17.9	22.1	23.2	22.4	20.2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	10.0	11.3	13.1	14.8	15.4	15.5	12.6	14.2	14.2
	학비(생활비)마련	12.9	12.8	12.7	12.8	12.4	11.1	12.5	14.2	13.1
	기타	11.2	9.5	8.2	9.0	10.7	10.4	8.7	8.0	5.0
	평균휴학기간(개월)	30	29	29	29	29	29	28	28	28
남자	휴학경험자비율	72.4	73.3	73.0	74.5	76.9	78.8	79.7	78.9	76.4
	병역의무이행	95.7	94.3	95.0	95.1	95.8	95.8	95.3	95.3	97.7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	8.9	10.8	10.5	11.9	10.7	11.8	12.8	11.3	9.3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	6.6	5.4	7.5	9.6	8.7	8.9	5.2	7.5	6.9
	학비(생활비)마련	8.5	7.8	7.4	7.1	7.9	8.1	9.9	11.5	9.5
	기타	6.1	6.1	4.8	5.5	6.1	6.5	5.2	5.7	2.2
	평균휴학기간(개월)	34	34	34	35	34	33	32	32	31
여자	휴학경험자비율	13.2	15.6	16.9	18.4	20.6	19.8	19.5	19.2	17.2
	병역의무이행	-	-	-	-	-	-	-	-	-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	34.3	35.5	36.6	37.7	35.5	47.9	50.4	52.0	51.3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	22.3	29.1	29.2	27.7	31.5	32.4	32.1	32.1	35.0
	학비(생활비)마련	27.9	28.0	27.9	26.7	23.4	18.6	19.2	21.3	23.5
	기타	29.2	19.9	18.5	17.6	22.0	20.1	18.1	14.1	13.1
	평균휴학기간(개월)	16	15	15	16	16	16	16	16	1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년도.

* 주: 휴학경험자의 휴학사유는 복수응답이므로 구성비의 합이 100을 넘음.

2-1-6. 대학생 학업중단율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율(재적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수의 비율)은 <표 III-3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전체적으로 6~7% 수준을 계속 유지하며 큰 변화는 없다. 다만, 학업중단율은 학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에서의 학업 중단율은 1.8~1.9배 정도 더 높다.

표 III-37 **대학생학업중단율**

(단위: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고등교육 기관	학업중단자수	225,263	220,588	229,425	226,756	222,263
	재적학생수	3,327,525	3,405,773	3,399,258	3,379,912	3,337,875
	학업중단율	6.8	6.5	6.7	6.7	6.7
일반대학	학업중단자수	81,641	81,614	84,114	84,335	82,875
	재적학생수	2,028,841	2,065,451	2,103,958	2,120,296	2,130,046
	학업중단율	4	4	4	4	3.9
전문대학	학업중단자수	56,658	55,163	58,923	57,651	55,239
	재적학생수	767,087	776,738	769,888	757,721	740,801
	학업중단율	7.4	7.1	7.7	7.6	7.5

* 자료: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 년도.

* 주: 1) 학업중단율=학업중단자수/재적학생수×100

2) 연도구분은 학년도임

3)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2-1-7.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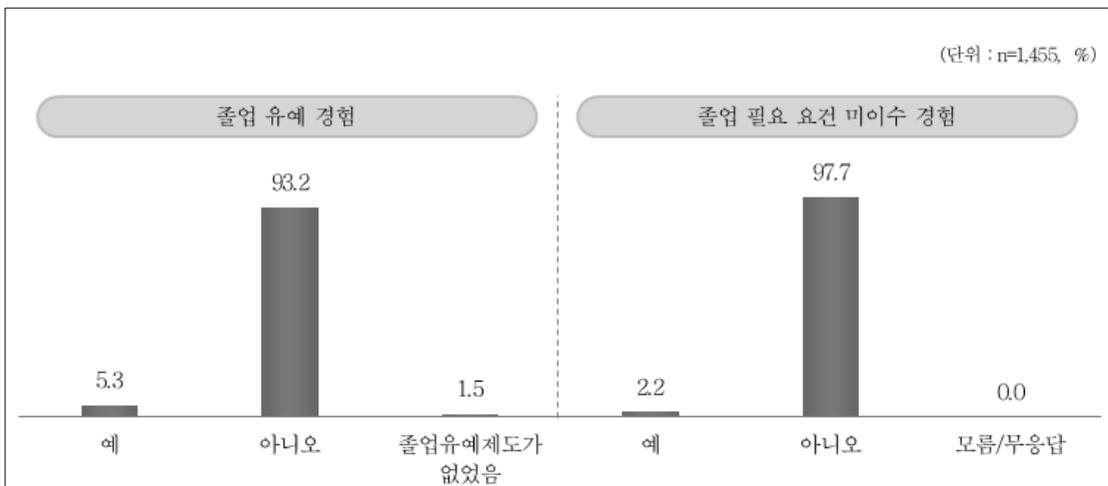
다음으로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은 <표 III-3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졸업 유예 경험은 5.3%가 졸업 유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의 경우 5.8%, 여자의 경우 4.7%로 조사되었다. 연령대 별로는 약 5%대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2%가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0대보다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단위: %)

	2016	
	졸업 유예 경험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전체	5.3	2.2
성별		
남자	5.8	2.7
여자	4.7	1.7
연령		
20대	5.5	1.6
30대	5.2	3.0

*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그림 III-7】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2-1-8. 스펙 쌓기

다음은 교육 영역 핵심지표 중 스펙 쌓기와 관련한 내용이다. 스펙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본 절에서는 대학 학점과 대학시절 사교육 경험, 대학 시절 해외유학 준비 경험, 실제 해외유학 경험, 대학 시절 영어능력시험 경험, 영어능력시험 성적 기준 영어 실력, 대학 시절 봉사활동 경험, 대학 시절 인턴 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 학점 평균이 상위 20%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로 나타났고, 상위 40%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6%, 상위 60%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2%, 하위 40%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 하위 20%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0.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9 대학 학점 평균

		(단위: %)
		2016
구분		
상위 20% 이내		8.0
상위 40% 이내		49.6
상위 60% 이내		37.2
하위 40% 이내		4.5
하위 20% 이내		0.7

*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다음으로 대학 시절 사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34.7%가 영어로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공 공부로 사교육 경험은 16.9%, 여타 취업 준비로 사교육 경험은 13.5%로 나타났다.

표 III-40 대학 시절 사교육 경험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전공 공부		10.0	26.4	16.9
영어		28.8	70.4	34.7
제2외국어(영어 제외)		5.6	18.4	11.5
여타 취업 준비		8.9	19.6	13.5
기타		0.3	0.4	-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대학 시절 해외유학 준비 경험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7.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7.6%, 여자의 경우 8.3%로 여자가 남자보다 0.7%p 준비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8%, 30대가 6.9%로 20대가 30대보다 1.9%p 준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대학 시절 해외유학 준비 경험

(단위: %)

	2015	2016
전체	10.0	7.9
성별		
남자	10.0	7.6
여자	9.9	8.3
연령		
20대	8.8	8.8
30대	11.4	6.9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대학 시절 해외유학 준비 경험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다음으로 해외유학 준비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한 실제 해외유학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52.2%가 실제로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대별로는 20대보다 30대가 실제 해외유학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2 실제 해외유학 경험

(단위: %)

	2015	2016
전체	57.7	52.2
성별		
남자	63.2	46.9
여자	51.5	58.0
연령		
20대	58.8	46.8
30대	56.8	61.1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실제 해외유학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해외유학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대학 시절 영어능력시험 경험은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8.5%가 영어능력시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어능력시험 기준 영어 실력은 전체의 83.7%가 상위 20%에서 상위 60% 사이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43 대학 시절 영어능력시험 경험

(단위: %)

	2015	2016
전체	44.2	48.5
성별		
남자	46.7	49.6
여자	41.3	47.3
연령		
20대	45.2	47.5
30대	42.9	50.7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대학 시절 영어능력시험 경험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I-44 영어능력시험 성적 기준 영어 실력

(단위: %)

	2016
구분	
상위 20% 이내	8.2
상위 40% 이내	41.6
상위 60% 이내	42.1
하위 40% 이내	6.6
하위 20% 이내	1.4

* 주: 영어능력시험을 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다음으로 대학 시절 봉사활동 경험은 2016년 기준 56.2%가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0대보다 봉사활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5 대학 시절 봉사활동 경험

(단위: %)

	2015	2016
전체	46.1	56.2
성별		
남자	48.0	53.3
여자	44.0	59.6
연령		
20대	45.7	52.9
30대	46.6	60.7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마지막으로 대학 시절 인턴 경험은 17.2%가 대학 시절 인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5.3%, 30대가 20.0%로 조사되었다.

표 III-46 대학 시절 인턴 경험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17.0	10.7	17.2
성별			
남자	16.6	10.6	16.6
여자	17.5	10.8	17.8
연령			
20대	16.4	11.1	15.3
30대	17.5	10.2	20.0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2-1-9.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유

다음 <표 III-47>은 대학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을 나타낸다.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였으며,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2016년 기준으로 78.5%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대학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이 약 4%p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7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70.3	66.1	78.5
성별			
남자	71.7	68.1	80.3
여자	68.7	63.9	76.3
연령			
20대	70.2	64.1	78.2
30대	70.3	68.5	80.1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는 '생활비(용돈)가 필요해서'가 2016년 기준 62.9%로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비를 벌려고(20.7%)', '사회경험을 위해서(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2013	2015	2016
생활비(용돈)가 필요해서	69.9	73.2	62.9
학비를 벌려고	18.4	13.4	20.7
사회경험을 위해서	-	7.0	8.0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3.3	2.6	3.4
주위 친구들이 하니까	1.0	1.1	1.7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1.9	1.7	1.6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0.8	1.1	1.2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0.2	-	0.6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4.3	-	-
기타	0.2	-	-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1-10.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의사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한 대학 진학 의사의 경우 2016년 기준 36.6%가 대학 진학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별로 20대의 경우 22.0%, 30대의 경우 4.5%가 대학 진학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49 대학 진학 의사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14.2	13.1	36.6
성별			
남자	15.6	15.5	38.8
여자	12.9	10.9	34.6
연령			
20대	28.7	19.8	22.0
30대	6.4	9.6	4.5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향후 대학 진학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대학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응답한 대학원 진학 의사의 경우 2016년 기준 7.4%가 대학원 진학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 진학 의사와 마찬가지로 20대가 30대보다 대학원 진학 의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대학원 진학 의사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10.4	11.5	7.4
성별			
남자	-	10.4	6.5
여자	-	12.7	8.5
연령			
20대	-	16.0	10.9
30대	-	6.1	2.7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대학원 진학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대학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교육여건

2-2-1. 학교수

<표 III-51>은 학교급별 학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학교수는 학교급에 따라 증감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초등학교는 1980년 6,487개교였던 것이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0년 5,267개교로 약19%정도 감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5년 5,978개교에 이른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 및 도농 간의 차이가 있다. 반면 중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1980년 2,100개교에서 2007년 3,032개교, 2015년에는 3,204개교로 1980년 대비 약52%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1980년 1,353개교에서 2015년 2,344개교로 약 1,000개 정도가 더 설립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의 증가가 눈에 띈다. 대학의 경우에는 1980년 109개교였던 것이 2000년 196개교로 증가하였고 2011년 226개교로 198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1980년 121개교에 그쳤던 것이 2005년 1,051개교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4년 1,209개교까지 늘어났다.

표 III-51 학교수

(단위: 개)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초등학교1)	6,487	6,335	5,267	5,646	5,733	5,756	5,813	5,829	5,854	5,882	5,895	5,913	5,934	5,978
중학교1)	2,100	2,474	2,731	2,935	2,999	3,032	3,077	3,106	3,130	3,153	3,162	3,173	3,186	3,204
고등학교1)	1,353	1,683	1,957	2,095	2,144	2,159	2,190	2,225	2,253	2,282	2,303	2,322	2,326	2,344
일반계고	748	1,096	1,193	1,382	1,437	1,457	1,493	1,534	1,561	-	-	-	-	-
전문계고	605	587	764	713	707	702	697	691	692	-	-	-	-	-
일반고	-	-	-	-	-	-	-	-	-	1,554	1,529	1,525	1,520	1,537
특목고	-	-	-	-	-	-	-	-	-	120	128	138	143	148
특성화고	-	-	-	-	-	-	-	-	-	499	499	494	499	498
자율고	-	-	-	-	-	-	-	-	-	109	147	165	164	161
전문대학2)	128	117	159	161	155	152	151	150	149	167	163	163	163	160
대학3)	109	148	196	224	221	220	217	219	222	226	226	227	226	226
대학원4)	121	298	829	1,051	1,051	1,042	1,055	1,115	1,138	1,167	1,177	1,200	1,209	1,197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2015.

* 주: 1) 초/중등학교 수에서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중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제외
 2)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 포함
 3)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포함
 4) 전체 합계를 산정할 때,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 대학 소계만을 포함

2-2-2. 학생수

<표 III-52>는 학교급별 학생수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980년 약566만명에서 1990년 약487만명으로 감소하였던 2010년에는 약330만명까지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300만명 이하로 떨어져 2015년 271만명 수준이다. 중학생의 경우도 1980년 247만명에서 2015년 158만명으로 약89만명 가까이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980년 약170만명에서 1990년 228만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93만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문대학생들의 경우 1980년 15만명수준에서 2000년 약91만명까지 급격히 증가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720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4년제 대학생의 경우 2014년 213만명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211만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III-52 학생수

(단위: 개)

구분	성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초등학교	전체	5,658,002	4,868,520	4,019,991	4,022,801	3,299,094	3,132,477	2,951,995	2,784,000	2,728,509	2,714,610
	남자	2,912,620	2,506,470	2,129,416	2,123,107	1,723,894	1,634,825	1,538,639	1,448,059	1,415,983	1,404,544
	여자	2,745,382	2,362,050	1,890,575	1,899,694	1,575,200	1,497,652	1,413,356	1,335,941	1,312,526	1,310,066
	여지비율	48.5	48.5	47.0	47.2	47.7	47.8	47.9	48.0	48.1	48.3
중학교	전체	2,471,997	2,275,751	1,860,539	2,010,704	1,974,798	1,910,572	1,849,094	1,804,189	1,717,911	1,585,951
	남자	1,310,646	1,172,529	971,830	1,063,730	1,037,038	999,789	965,286	944,683	898,580	829,918
	여자	1,161,351	1,103,222	888,709	946,974	937,760	910,783	883,808	859,506	819,331	756,033
	여지비율	47.0	48.5	47.8	47.1	47.5	47.7	47.8	47.6	47.7	47.7
고등학교	전체	1,696,792	2,283,806	2,071,468	1,762,896	1,962,356	1,943,798	1,920,087	1,893,303	1,839,372	1,788,266
	남자	974,398	1,210,627	1,078,140	930,023	1,043,637	1,033,540	1,015,934	992,590	960,529	932,220
	여자	722,394	1,073,179	993,328	832,873	918,719	910,258	904,153	900,713	878,843	856,046
	여지비율	42.6	47.0	48.0	47.2	46.8	46.8	47.1	47.6	47.8	47.9
전문대학	전체	151,199	323,825	913,273	853,089	767,087	776,738	769,888	757,721	740,801	720,466
	남자	111,316	204,480	574,040	536,763	462,241	466,491	462,538	454,552	443,849	429,525
	여자	39,883	119,345	339,233	316,326	304,846	310,247	307,350	303,169	296,952	290,941
	여지비율	26.4	36.9	37.1	37.1	39.7	39.9	39.9	40.0	40.1	40.4
대학	전체	402,979	1,040,166	1,665,398	1,859,639	2,028,841	2,065,451	2,103,958	2,120,296	2,130,046	2,113,293
	남자	312,345	744,037	1,069,009	1,175,401	1,250,655	1,263,376	1,282,083	1,284,593	1,283,204	1,264,870
	여자	90,634	296,129	596,389	684,238	778,186	802,075	821,875	835,703	846,842	848,423
	여지비율	22.5	28.5	35.8	36.8	38.4	38.8	39.1	39.4	39.8	40.1
대학원	전체	33,939	86,911	229,437	282,225	316,633	329,933	329,544	329,822	330,872	333,478
	남자	28,153	67,351	149,365	157,295	164,266	171,410	170,512	170,870	170,978	171,104
	여자	5,786	19,560	80,072	124,930	152,367	158,523	159,032	158,952	159,894	162,374
	여지비율	17.0	22.5	34.9	44.3	48.1	48.0	48.3	48.2	48.3	48.7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5.

* 주: 1) 초/중등학교수에서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중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제외
 2)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 포함
 3)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포함
 4) 전체 합계를 산정할 때,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 대학 소계만을 포함

2-2-3. 진학률

먼저 중학교 진학률을 살펴보면, 1980년부터 90%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00%이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률도 1990년 95%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 들어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1980년 30%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0년 들어 60% 이상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5년 만에 80% 이상까지 증가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2015년 70% 대의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53 진학률

(단위: 개)

구 분	성 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95.8	99.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남자	97.4	99.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여자	94.1	99.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84.5	95.7	99.6	99.7	99.7	99.7	99.7	99.7	99.7	99.7
	남자	87.5	96.3	99.5	99.7	99.7	99.7	99.7	99.7	99.7	99.7
	여자	80.8	95	99.6	99.8	99.7	99.7	99.7	99.7	99.7	99.8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27.2	33.2	68.0	82.1	79.0	72.5	71.3	70.7	70.9	70.8
	남자	30.3	33.9	70.4	83.3	77.6	70.2	68.6	67.4	67.6	67.3
	여자	22.9	32.4	65.4	80.8	80.5	75.0	74.3	74.5	74.6	74.6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5.

* 주: 1) 진학률 = (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당해년도 졸업자의 진학률임

2) 중학교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되며, 고등학교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진학자 수 기준 변경: 2010년까지 대학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대학등록자 기준으로 변경.

2-2-4. 취학률

아래의 <표 III-54>는 학교급별 취학률을 제시한 것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이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취학률을 보여 왔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에도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1990년대부터 90%를 넘는 수준을 보여주었고, 초등학교보다는 대체로 낮지만 평균 96%의 비교적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지속적으로 취학률이 높아져 2005년부터 90% 이상의 높은 취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54 **취학률**

(단위: 개)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초등학교	97.7	100.5	97.2	98.8	99.2	99.1	98.6	97.2	96.4	98.5
중학교	73.3	91.6	95	94.6	97	96.7	96.1	96.2	97.7	96.3
고등학교	48.8	79.4	89.4	91	91.5	91.9	92.6	93.6	93.7	93.5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2015.

* 주: 1) 취학률(%) = (취학적령 재적 학생 수/취학적령인구)×100

2) 취학적령 : 유치원(만3~5세), 초등학교(만6~11세), 중학교(만12~14세), 고등학교(만15~17세).

3) 취학적령인구는 통계청(2010)의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고, 2011년 이후는 잠정 추계치이므로 다음 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3) 경제

(1) 직업

3-1-1. 경제활동 참여율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5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15~64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6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09년 국제금융위기에 60.8%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경제활동참가

율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15~29세의 남성의 경우 2000년 50.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49.7%, 2013년 42%까지 감소한 이후 2015년 44.5%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더 심각한데, 15~29세 여성의 경우 2000년 43.9%에서 2005년 48.9%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증감을 계속하다가 2015년 46.9%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결혼·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15~39세 여성의 경우에는 2015년 현재 남성에 비해 18.6% 정도 더 적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표 III-55 경제활동참여율

(단위: %)

성 별	연령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61.2	61.4	62.0	61.5	62.1	62.0	61.9	61.8	61.5	60.8	61.0	61.1	61.3	61.5	62.4	62.6
	15-24세	33.0	33.5	34.4	34.3	34.8	33.3	30.2	28.1	26.3	25.4	25.5	25.5	26.6	26.6	28.6	30.1
	15-29세	47.2	47.7	48.5	48.3	49.2	48.8	47.1	46.0	44.8	44.0	43.8	43.8	43.7	43.2	44.8	45.7
	15-39세	70.4	70.4	70.8	70.4	71.0	71.0	70.9	70.5	70.0	69.2	69.6	69.7	69.6	69.3	70.4	70.8
남자	계	74.4	74.3	75.0	74.7	75.0	74.6	74.1	74.0	73.5	73.1	73.0	73.1	73.3	73.2	74.0	73.8
	15-24세	28.4	27.8	28.6	28.1	28.8	26.7	24.3	23.1	21.0	20.4	20.2	20.6	22.1	22.5	24.6	25.9
	15-29세	50.8	50.3	50.5	49.7	49.9	48.6	46.7	45.7	43.9	43.3	42.6	42.6	42.3	42.0	43.5	44.5
	15-39세	85.2	84.4	84.4	83.9	83.8	83.3	82.5	82.0	81.2	80.8	80.8	80.8	80.2	79.3	79.8	80.0
여자	계	48.8	49.3	49.8	49.0	49.9	50.1	50.3	50.2	50.0	49.2	49.4	49.7	49.9	50.2	51.3	51.8
	15-24세	37.0	38.5	39.4	39.6	40.1	39.0	35.5	32.7	31.1	29.9	30.4	30.1	30.9	30.6	32.5	34.0
	15-29세	43.9	45.4	46.6	47.0	48.5	48.9	47.5	46.2	45.6	44.7	45.0	44.9	45.0	44.4	46.0	46.9
	15-39세	56.2	57.0	57.7	57.4	58.7	59.2	59.7	59.3	59.1	57.7	58.6	58.7	59.1	59.3	60.8	61.4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주: 경제활동참여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3-1-2. 고용률

<표 III-56>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5세이상인구 전체의 고용률에 비해 15~24세의 고용률은 절반 수준이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고용률이 증가하여 15~39세 청년층의 경우에는 전 연령의 고용률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5~39세 남성의 경우 고용률은 2000년 80%인데 반해 여성은 53.7% 수준으로 26.3%p 더 낮으며, 2015년의 경우에는 17.4%p의 격차를 보인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15~39세의 경우 2000년 80.2%에 2015년 75.5%로 4.7%p 감소하였다.

표 III-56 고용률

(단위: %)

성별	연령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58.5	59.0	60.0	59.3	59.8	59.7	59.7	59.8	59.5	58.6	58.7	59.1	59.4	59.5	60.2	60.3
	15-24세	29.4	30.1	31.5	30.8	31.2	29.9	27.2	25.7	23.8	22.9	23.0	23.1	24.2	24.2	25.8	26.9
	15-29세	43.4	44.0	45.1	44.4	45.1	44.9	43.4	42.6	41.6	40.5	40.3	40.5	40.4	39.7	40.7	41.5
	15-39세	66.7	66.9	67.6	66.9	67.4	67.3	67.4	67.1	66.8	65.5	66.0	66.2	66.3	65.9	66.5	66.8
남자	계	70.7	71.0	72.2	71.9	72.0	71.6	71.3	71.3	70.9	70.1	70.1	70.5	70.8	70.8	71.4	71.1
	15-24세	24.6	24.3	25.6	24.8	25.3	23.5	21.5	20.5	18.6	18.0	17.9	18.1	19.9	20.3	21.8	22.9
	15-29세	46.1	45.7	46.2	45.1	45.1	44.1	42.4	41.5	40.1	39.0	38.6	38.8	38.7	38.2	38.9	39.8
	15-39세	80.2	79.7	80.2	79.6	79.3	78.8	78.1	77.6	77.0	76.1	76.3	76.6	76.2	75.2	75.4	75.5
여자	계	47.0	47.7	48.4	47.4	48.3	48.4	48.8	48.9	48.7	47.7	47.8	48.1	48.4	48.8	49.5	49.9
	15-24세	33.7	35.1	36.5	36.0	36.3	35.5	32.3	30.4	28.6	27.4	27.7	27.7	28.3	27.8	29.5	30.7
	15-29세	40.9	42.4	44.0	43.8	45.2	45.6	44.3	43.8	43.0	41.8	42.0	42.0	42.1	41.3	42.5	43.2
	15-39세	53.7	54.5	55.5	54.8	55.9	56.3	57.1	57.0	56.8	55.1	55.8	55.9	56.5	56.6	57.5	58.1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주: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 인구)×100

3-1-3. 실업률

<표 III-57>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실업률은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09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률은 남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군입대 등으로 인해 휴학을 경험하는 남성에 비해 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2015년 기준 15~29세 남성의 실업률은 10.6%인데 비해 여성의 7.9%로 남성이 약 2.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실업률

(단위: %)

성별	연령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4.4	4.0	3.3	3.6	3.7	3.7	3.5	3.2	3.2	3.6	3.7	3.4	3.2	3.1	3.5	3.6
	15-24세	10.8	10.2	8.5	10.1	10.5	10.2	10.0	8.8	9.3	9.9	9.8	9.6	9.0	9.3	10.0	10.5
	15-29세	8.1	7.9	7.0	8.0	8.3	8.0	7.9	7.2	7.2	8.1	8.0	7.6	7.5	8.0	9.1	9.2
	15-39세	5.3	5.0	4.5	5.0	5.1	5.2	5.0	4.8	4.7	5.3	5.2	5.0	4.7	4.9	5.5	5.5
남자	계	5.0	4.5	3.7	3.8	3.9	4.0	3.8	3.7	3.6	4.1	4.0	3.6	3.4	3.3	3.6	3.7
	15-24세	13.6	12.7	10.3	11.9	12.2	12.2	11.7	11.4	11.5	11.9	11.2	12.1	9.7	9.8	11.2	11.3
	15-29세	9.4	9.1	8.4	9.2	9.6	9.3	9.1	9.1	8.6	9.8	9.4	9.0	8.5	9.1	10.5	10.6
	15-39세	5.9	5.5	5.0	5.2	5.4	5.4	5.3	5.4	5.2	5.9	5.6	5.2	4.9	5.1	5.5	5.7
여자	계	3.6	3.3	2.8	3.3	3.4	3.4	2.9	2.6	2.6	3.0	3.3	3.1	3.0	2.9	3.5	3.6
	15-24세	9.0	8.6	7.5	9.0	9.4	9.0	9.0	7.2	7.9	8.6	9.0	8.1	8.5	9.0	9.2	10.0
	15-29세	6.7	6.7	5.6	6.8	6.9	6.8	6.7	5.4	5.8	6.4	6.8	6.4	6.6	7.0	7.7	7.9
	15-39세	4.5	4.3	3.8	4.7	4.7	4.8	4.4	3.9	4.0	4.6	4.7	4.7	4.5	4.6	5.5	5.3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주: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3-1-4. 창업비율

청년들의 창업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신설법인수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III-58>와 같다. 전산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0년 30세 미만의 신설법인수는 5.2% 수준에 그쳤으며 이후 증감을 지속하다가 2015년 5.3% 수준이다. 반면, 30~39세의 경우 30세 미만에 비해 다소 높지만 전체 신설법인수의 약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2010년 25.5%에서 감소하여 2015년 21.8%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이러한 신설법인의 수는 산업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이 창업들이 농림어업광업 부문보다는 서비스업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서비스업의 경우 폐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업의 다각화에 초점을 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표 III-58 신설법인수 및 비율

(단위: 개소, %)

산업	연령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산업	계	60,312	100.0	65,110	100.0	74,162	100.0	75,574	100.0	84,697	100.0	93,768	100.0
	30세 미만	3,117	5.2	2,823	4.3	3,510	4.7	3,644	4.8	3,885	4.6	4,986	5.3
	30-39세	15,401	25.5	15,842	24.3	17,538	23.6	17,667	23.4	18,921	22.3	20,418	21.8
농·임·어업·광업	계	1,077	100.0	1,768	100.0	2,067	100.0	1,637	100.0	2,593	100.0	3,161	100.0
	30세 미만	43	4.0	53	3.0	77	3.7	66	4.0	79	3.0	109	3.4
	30-39세	171	15.9	274	15.5	286	13.8	243	14.8	371	14.3	428	13.5
제조업	계	14,818	100.0	15,557	100.0	17,733	100.0	18,721	100.0	19,509	100.0	20,155	100.0
	30세 미만	524	3.5	562	3.6	619	3.5	668	3.6	761	3.9	885	4.4
	30-39세	3,018	20.4	2,926	18.8	3,231	18.2	3,675	19.6	3,652	18.7	3,777	18.7
건설·전기·가스·수도	계	7,024	100.0	6,892	100.0	7,387	100.0	7,780	100.0	9,508	100.0	14,977	100.0
	30세 미만	198	2.8	225	3.3	218	3.0	253	3.3	276	2.9	284	1.9
	30-39세	1,497	21.3	1,426	20.7	1,320	17.9	1,463	18.8	1,451	15.3	1,602	10.7
서비스업	계	37,393	100.0	40,893	100.0	46,975	100.0	47,436	100.0	53,087	100.0	55,475	100.0
	30세 미만	2,352	6.3	1,983	4.8	2,596	5.5	2,657	5.6	2,769	5.2	3,708	6.7
	30-39세	10,715	28.7	11,216	27.4	12,701	27.0	12,286	25.9	13,447	25.3	14,611	26.3

* 출처: 중소기업청, 「신설법인동향」, 각 년도.

* 주: 2015년 이전의 기타 부문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제외

3-1-5. 니트(NEET) 비율

니트(NEET)는 OECD 규정에 따르면 일과 학습, 그리고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가적 특수성에 따라 개념이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 규모 역시 자료에 따라 다르다. 이에 김기현(2015a)의 연구를 토대로 연령은 15세에서 29세, 실업자나 기혼자를 제외하지 않고 일과 학업,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청년 니트로 보고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니트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59>와 같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동일하게 지난 1주간의 활동이 '일하였음'이나 '일시휴직', '정규교육 기관 통학'이 아니고 '입시학원 통학'이나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이 아닌 경우로 니트를 추정한 결과와 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고 있다. 두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앞선 고용률이나 실업률과는 달리 청년 니트 비율의 편차가 3% 이내로 크지 않지만 추세 자체는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등락을 거듭하는 데 비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차이가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노동패널조사 자료는 니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찰조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59 니트 비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16.5	16.1	15.4	15.4	16.0	15.7	15.4	15.2	15.1	14.8
한국노동패널조사	18.0	16.9	17.5	16.1	17.0	16.7	18.0	15.1	16.5	18.1

* 출처: 김기현(2015c), 「청년층 고용」, KLI패널 워킹페이퍼.

* 주: 니트 - 지난 1주간의 활동이 '일하였음'이나 '일시휴직', '정규교육 기관 통학'이 아니고 '입시학원 통학'이나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이 아닌 경우

3-1-6. 비정규직 비율

<표 III-60>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 취업자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32.6%에서 2004년 37%까지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5년 32.5% 이른다. 그러나 이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인다. 청년층의 경우도 학령기인 15~19세의 비정규직 비율이 약 70%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은 다소 감소한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15~39세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24.5%에서 2005년 29%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5년 23% 수준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03년 34.9%에서 2005년 37.3%로 증가한 후 증감을 계속하다가 2015년 32.5%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 간의 비정규직 비율은 9.5%p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60 비정규직 비율

(단위: %)

성별	연령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전연령	32.6	37.0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15-19세	62.3	61.8	71.0	71.3	70.7	65.1	74.9	69.8	69.4	75.9	74.8	69.5	74.3
	20-29세	29.6	33.3	32.8	30.9	31.2	31.0	31.7	31.3	31.6	30.5	31.2	32.0	32.1
	30-39세	26.3	32.1	30.4	29.8	29.8	26.7	25.2	23.3	24.3	23.1	22.2	21.8	21.2
	15-29세	31.7	35.0	35.1	33.0	33.4	32.9	34.0	33.6	34.0	33.8	34.0	34.6	35.0
	15-39세	28.9	33.5	32.6	31.2	31.5	29.5	29.1	27.8	28.5	27.6	27.2	27.4	27.2
남자	전연령	27.6	32.2	31.5	30.4	31.5	28.8	28.2	27.1	27.8	27.2	26.5	26.6	26.5
	15-19세	61.4	64.6	77.9	74.7	67.9	65.3	75.3	69.0	73.4	73.9	72.0	64.2	71.4
	20-29세	28.9	33.0	32.1	29.5	31.1	30.2	30.6	29.4	30.4	28.6	29.7	31.1	32.0
	30-39세	20.2	26.6	25.3	24.5	25.4	22.5	19.2	18.1	18.6	19.1	17.9	17.6	16.2
	15-29세	30.8	34.7	34.9	31.5	33.2	32.1	32.7	31.5	32.8	31.7	32.2	33.2	34.5
	15-39세	24.5	29.8	29.0	27.2	28.4	26.0	24.1	22.8	23.7	23.6	23.1	23.4	23.0
여자	전연령	39.5	43.7	43.7	42.7	42.1	40.8	44.1	41.8	42.8	41.5	40.6	39.9	40.2
	15-19세	63.2	60.0	64.3	68.9	74.1	65.5	74.6	70.4	67.4	77.5	76.1	73.7	76.6
	20-29세	30.2	33.6	33.4	32.3	31.2	31.8	32.7	33.0	32.7	32.2	32.5	32.7	32.2
	30-39세	38.3	42.8	40.1	39.1	37.6	34.3	36.0	32.7	34.5	29.9	29.3	28.6	29.4
	15-29세	32.6	35.2	35.2	34.4	33.7	33.7	35.2	35.4	35.1	35.5	35.6	36.0	35.4
	15-39세	34.9	38.4	37.3	36.5	35.4	34.0	35.6	34.1	34.8	32.9	32.5	32.4	32.5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 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결과에 따름.

3-1-7. 신규 채용률

신규 채용률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표 III-61>은 산업 및 기업의 규모에 따른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규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살펴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별로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의 경쟁률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각 산업부분별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제조업의 경우 2008년에는 27.8:1의 경쟁률이 보였는데 2015년에는 37:1의 경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입사원 경쟁률은 기업규모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2008년 30.3: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8.4:1로 3.6배 정도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더욱 증가하여 2015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6.6:1인데 반해 대기업은 35.7:1의 경쟁률을 보여 5.4배의 격차를 보인다. 고용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졸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기업 취업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61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단위: 명)

구 분		2008	2013	2015
산 업	제조업	24.4:1	25.6:1	29.4:1
	비제조업	27.8:1	34.5:1	37.0:1
규 모	대기업	30.3:1	31.3:1	35.7:1
	중소기업	8.4:1	6.0:1	6.6:1
전체		26.3:1	28.6:1	32.3:1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각 년도.

3-1-8.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 2016년도까지 3차례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되었다.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중 1순위는 3차례의 조사 결과 바뀌지 않았는데, 매 조사결과 30%가 넘는 비율로 '안정적인 회사'가 1순위로 나타났다. 2순위는 2013년도 조사와 2015년도 조사에서는 '급여가 높은 회사'로 나타난 반면, 2016년도 조사에서는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로 나타났다.

표 III-62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안정적인 회사	36.6	37.5	31.0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15.2	15.2	25.6
급여가 높은 회사	20.0	25.9	18.3
발전가능성이 높은 회사	12.4	8.4	10.5
분위기 좋은 회사	9.6	8.2	8.8
유명한 회사	1.6	1.7	2.9
퇴근이 빠른 회사	4.3	2.7	2.7
기타	0.3	0.4	0.1
모름/무응답	-	-	0.0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3-1-9.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다음으로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1순위는 3차례의 조사결과 바뀌지 않았는데, ‘개인능력(2016년 기준 39.3%)’이 매 조사결과 1순위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2순위는 전공(20.2%), 3순위는 학벌(출신학교의 명성, 12.6%), 4순위는 자격증(11.0%), 5순위는 인성(10.0%)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3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개인능력	39.8	29.7	39.3
전공	23.1	21.4	20.2
학벌(출신학교의 명성)	17.0	22.1	12.6
자격증	9.0	11.8	11.0
인성	7.9	8.7	10.0
외모	1.0	2.2	2.6
어학점수	1.5	1.8	1.3
가족배경	-	-	1.2
인턴(아르바이트)경험	-	0.5	1.0
수상경력	0.3	1.6	0.6
기타	0.4	0.2	0.1
모름/무응답	-	-	0.1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3-1-10. 취업 준비

현재 일자리가 없고,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만 응답한 현재 취업 준비 여부는 19.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27.1%, 여자가 14.8%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가량 더 현재 취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4.8%, 30대가 11.1%로 20대가 30대보다 더 현재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4 현재 취업 준비 여부

(단위: %)

		2016
전체		19.3
성별		
	남자	27.1
	여자	14.8
연령		
	20대	24.8
	30대	11.1

* 주: 현재 취업 준비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일자리가 없는 경우,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만 응답.

3-1-11.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다음으로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68.9%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3.4%, 30대가 66.2%로 나타나 20대가 30대보다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62.8	50.1	68.9
성별				
	남자	62.6	53.4	68.7
	여자	63.0	46.6	69.1
연령				
	20대	63.4	54.3	73.4
	30대	62.2	46.1	66.2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3-1-12. 창업 경험 및 의사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경험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기준 20.1%로 조사되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25%p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0대보다 창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더 많은 만큼 창업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6 창업 경험

(단위: %)

	2015	2016
전체	7.4	20.1
성별		
남자	11.3	21.1
여자	3.1	18.6
연령		
20대	3.1	8.0
30대	11.5	32.3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경험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창업 의사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 29.4%가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10%p더 창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0대보다 3차례 조사결과 모두 창업할 의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7 창업 의사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25.2	12.5	29.4
성별			
남자	28.5	13.9	34.2
여자	21.8	11.2	24.2
연령			
20대	17.0	11.4	27.8
30대	32.9	13.7	34.6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창업 고려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3-1-13.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15.2%가 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에 37.3%가 합격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준비 경험 여부는 남자와 여자 모두 준비 경험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격 여부는 여자가 남자보다 5.9%p 더 많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도 준비 경험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격 여부는 30대가 20대보다 11.0%p 더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8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단위: %)

		2016
전체		15.2
성별		
	남자	15.4
	여자	14.9
연령		
	20대	16.0
	30대	17.6

* 주: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표 III-69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시험 합격 여부

(단위: %)

		2016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전체		37.3	62.3	0.4
성별				
	남자	34.5	64.8	0.8
	여자	40.4	59.6	-
연령				
	20대	30.9	69.1	-
	30대	41.9	57.3	0.8

* 주: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3-1-14. 직무 불일치

직무 불일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공 분야 일치 정도를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였다. 2016년도 조사결과 59.7%가 ‘매우 불일치’와 ‘불일치’에 응답하였으며, 2015년도 또한 58.1%가 ‘매우 불일치’와 ‘불일치’에 응답하여 직무 불일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0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공 분야 일치 정도

(단위: %)

	2015	2016
구분		
매우 불일치	11.7	10.0
불일치	46.4	49.7
일치	34.2	35.7
매우 일치	7.7	4.6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3-1-15. 직업훈련

현재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만 응답한 직업 훈련 경험 여부는 2016년 기준 7.1%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7.9%, 남자가 5.7%로 조사되었다.

표 III-71 직업 훈련 경험 여부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7.6	7.4	7.1
성별			
남자	8.7	5.0	5.7
여자	7.1	8.6	7.9
연령			
20대	9.0	8.1	8.2
30대	6.4	6.3	5.7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직업 훈련 경험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다음으로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받은 목적을 조사하였는데, 2016년 조사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가 1순위로 나타났고,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가 2순위, '경력개발을 위해'가 3순위로 조사되었다.

표 III-72 직업 훈련을 받은 목적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자격증 취득을 위해	53.8	57.7	53.8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30.8	15.4	24.7
경력개발을 위해	7.7	15.4	13.7
창업을 위해	-	11.5	4.2
기타	7.7	-	3.4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2016년 기준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1순위(37.6%)로 나타났고, '직업 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가 2순위(22.1%),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가 3순위(20.4%),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4순위(16.9%)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중/고등학생이 아니면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23.1%가 향후 직업 훈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73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29.6	47.7	37.6
직업 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	16.4	16.2	22.1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	18.2	22.0	20.4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34.0	14.1	16.9
기타	1.9	-	2.2
특별한 이유 없음	-	-	0.1
모름/무응답	-	-	0.6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응답.

표 III-74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단위: %)

		2016
전체		23.1
성별	남자	23.0
	여자	23.1
연령	20대	25.7
	30대	17.1

* 주: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2) 소득 및 소비

3-2-1. 청년 소득

청년들의 소득수준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들의 월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75>과 같다. 전체 취업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많게는 약 5.3%(2007년) 적게는 약 1.5%(2015년)의 증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층의 임금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29세 이하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2006년 144만원 정도로 전 연령 대비 약 30% 정도 더 적게 받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나 2015년이 약 32%가 가장 크다. 반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이고 고용안정을 이룬 30~39세의 경우에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8~9%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75 월임금총액

(단위: 천원)

연령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연령	2,069	2,178	2,279	2,277	2,326	2,428	2,527	2,617	2,700	2,740
29세이하	1,441	1,551	1,612	1,611	1,636	1,727	1,779	1,815	1,901	1,869
30~39세	2,251	2,380	2,489	2,466	2,540	2,619	2,720	2,780	2,961	2,963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각 년도.

* 주: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3-2-2. 청년 소비

아래의 <표 III-76>는 청년들의 연령별 소비 수준과 그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청년들의 소비수준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가구주가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계지출이 2003년 177만원으로 결혼과 출산 연령인 30~39세의 217만원보다 더 적게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층의 가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9세 이하의 경우 2007년 200만원을 넘어 2013년 270만원까지 계속 증가해오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5년 현재 약234만원 수준이다. 또한 30~39세의 경우도 2003년 217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약345만원으로 59% 이상 증가한 것이다.

표 III-76 청년 소비

(단위: 천원)

가구주 연령	가계수지 항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평균	가계지출	2,147	2,277	2,366	2,475	2,584	2,718	2,776	2,961	3,115	3,217	3,262	3,356	3,373
	소비지출	1,700	1,797	1,872	1,945	2,016	2,114	2,149	2,287	2,393	2,457	2,481	2,551	2,563
	비소비지출	447	480	495	530	568	604	626	674	722	759	781	804	810
29세 이하 가구	가계지출	1,772	1,864	1,994	1,928	2,008	2,064	2,107	2,279	2,510	2,632	2,700	2,541	2,336
	소비지출	1,444	1,518	1,624	1,600	1,647	1,695	1,717	1,891	2,053	2,134	2,188	2,093	1,917
	비소비지출	329	345	370	327	361	369	390	389	457	498	512	448	419
30~39세 가구	가계지출	2,172	2,276	2,383	2,465	2,649	2,807	2,875	3,077	3,207	3,215	3,341	3,459	3,451
	소비지출	1,719	1,808	1,903	1,962	2,086	2,189	2,232	2,391	2,501	2,488	2,564	2,667	2,667
	비소비지출	452	467	480	502	563	618	644	686	705	727	777	792	784
39세 이하 가구	가계지출	2,108	2,213	2,330	2,396	2,563	2,709	2,789	2,991	3,151	3,173	3,302	3,389	3,359
	소비지출	1,676	1,764	1,865	1,916	2,027	2,123	2,174	2,337	2,465	2,463	2,541	2,623	2,605
	비소비지출	433	449	465	480	536	585	615	653	686	710	761	766	753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주) 1)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2) 소비지출: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지출 포함

3)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점 포함

3-2-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다음의 <표 Ⅲ-77>은 장년대비 청년층의 상대임금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청년층의 상대임금은 기준이 되는 장년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49세에 대비하여 청년층들의 상대임금을 비교해보면 2006년에는 29세 이하의 경우에는 약 58% 수준이었으며 이후 증감을 계속하다가 2015년 현재 57% 수준이다 반면, 30~39세의 경우에는 격차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 시기에서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50~59세와 대비했을 때는 청년층의 상대임금은 그 격차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즉 29세 이하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최소 61%(2006년)에서 최대 67.2%(2014년)의 수준이며, 30~39세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더욱 감소하여 최소 95.5%이거나 2010년 이후에는 50~59세 보다 상대임금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77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단위: 천원)

기 준	연령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0~49세	전체	82.8	84.1	84.6	84.4	85.1	85.0	85.3	85.7	85.2	83.9
	29세이하	57.6	59.9	59.9	59.7	59.8	60.4	60.1	59.4	60.0	57.3
	30~39세	90.0	91.9	92.4	91.4	92.9	91.6	91.9	91.1	93.4	90.8
50~59세	전체	87.8	88.9	90.7	92.2	93.4	94.0	93.9	91.4	95.5	94.2
	29세이하	61.1	63.3	64.1	65.2	65.7	66.9	66.1	63.4	67.2	64.3
	30~39세	95.5	97.2	99.0	99.8	102.0	101.4	101.1	97.1	104.7	101.9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각 년도.

* 주: 1) 상대임금 = (해당 연령층의 월임금총액 / 기준 연령층의 월임금총액) × 100

2) 월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특별급여 / 12개월

3-2-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아래의 <표 III-78>는 청년층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연령에 따라 비교해본 것이다. 특수형태의 비정규직을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자는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을 제외했을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6년 57% 수준이며, 2007년 58.5%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다가 2011년 소폭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47% 수준이다. 반면, 30~39세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의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6년 약 52%으로 이후 동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3년 57.3%까지 증가한 이후 2015년 53.2% 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같은 연령대의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청년들은 60%도 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8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단위: %)

기 준	연 령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전체	46.7	48.5	47.5	47.3	46.5	46.5	46.2	47.0	42.3	43.0
	29세 이하	57.2	58.5	55.2	54.2	52.7	54.0	51.1	50.7	45.4	47.0
	30~39세	51.7	52.1	53.0	52.1	52.1	52.8	53.9	57.3	50.6	53.2
비정규직 특수형태 포함	전체	53.9	55.4	53.7	52.7	51.8	52.3	51.6	55.4	48.6	49.2
	29세 이하	60.2	61.5	58.0	56.2	55.4	55.5	53.2	53.1	47.7	49.3
	30~39세	63.5	61.8	60.7	56.8	57.9	57.0	57.1	64.1	57.0	58.3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각 년도.

* 주: 1) 상대임금=(비정규직 월임금총액/정규직 월임금총액)×100

2)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3-2-5. 청년 부채

아래의 <표 III-79>는 청년 가구주를 중심으로 연령 계층에 따른 부채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라 부채의 규모와 항목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부채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먼저, 30세 이하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2010년 평균 936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금융부채가 약92%인 857만원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의 비율이 90%까지 이르다가 이후 감소하게 되는데 2013년 이후 임금보증금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주된 연령층인 30~39세이 경우에는 전체 부채 중 임대보증금으로 인한 부채의 비율이 30세 이하에 비해 증가한다.

표 III-79 청년 가구주의 부채

(단위: 만원)

구분	연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가구 평균	보유가구 중앙값										
전체 부채	전체	4,618	3,000	5,205	3,080	5,450	3,240	5,858	3,646	6,051	4,007	6,181	4,470
	30세미만	936	840	1,268	1,000	1,283	1,000	1,401	852	1,481	1,078	1,506	1,300
	30~39세	3,981	2,900	4,609	3,000	4,405	3,200	4,890	3,530	5,257	4,024	5,323	4,634
금융 부채	전체	3,151	2,200	3,597	2,500	3,684	2,700	3,974	3,000	4,118	3,200	4,321	3,760
	30세미만	857	700	1,135	1,000	1,166	960	1,218	800	1,287	1,064	1,322	1,300
	30~39세	2,949	2,300	3,525	2,540	3,423	2,880	3,735	3,000	4,192	3,800	4,393	4,030
임대 보증금	전체	1,468	6,000	1,608	5,800	1,766	6,000	1,884	6,000	1,933	6,000	1,860	6,000
	30세미만	80	4,000	132	5,000	117	4,000	183	4,750	195	2,700	185	1,800
	30~39세	1,031	7,600	1,084	8,500	982	7,500	1,156	8,000	1,065	7,500	930	8,000

*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각 년도.

3-2-6. 최저 임금

아래의 <표 III-80>는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 중 2017년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최저 임금에 대한 응답 평균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의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조사 응답자들이 응답한 7,585원보다 1,115원 적다.

표 III-80 2017년 적정 최저 임금

(단위: 원/시간당)

		2016
전체		7,584.7
성별		
	남자	7,667.9
	여자	7,494.8
연령		
	20대	7,549.9
	30대	7,644.8

3-2-7. 소비생활 중 지출이 큰 항목

다음으로 <표 III-81>는 소비생활 중 지출이 큰 항목을 나타낸다. 2016년 기준으로 청년층의 소비생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8%로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통·통신비(차량 유지비 포함)이 16.5%로 2순위, 외식비가 16.3%로 3순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류비 문화여가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 연료비(전기·가스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도 조사와 2015년도 조사에서는 외식비에 응답한 비율이 식료품비에 응답한 비율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2016년 조사에서는 식료품비에 응답한 비율이 외식비에 응답한 비율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 외식에 대한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81 소비생활 중 지출이 큰 항목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식료품비	20.5	24.5	24.8
교통·통신비 (차량 유지비 포함)	17.9	16.3	16.5
외식비	24.4	26.3	16.3
교육비	11.7	8.8	12.9
주거비	-	-	9.6
의류비	9.9	10.4	9.4
문화여가비	13.3	12.1	9.1
보건의료비	0.1	0.3	0.6
경조사비	0.6	0.7	0.4
연료비(전기·가스 등)	0.7	0.4	0.2
기타	0.9	0.2	0.1
모름/무응답	-	-	0.1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3-2-8. 소비지출 확대 항목

아래의 <표 III-82>는 재정상황이 나아진다면 가장 먼저 지출을 늘릴 항목의 응답 비율이다. 2016년 기준으로 문화여가비가 46.1%로 1순위로 나타났고, 이어서 의류비가 14.6%로 2순위, 교육비가 9.1%로 3순위로 조사되었다. 현재 소비생활 지출이 낮은 비중에 속하는 문화여가비가 재정상황이 나아진다면 가장 먼저 지출을 늘릴 항목 중 50%에 가까운 비율로 1순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문화여가비는 정상재 중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일종의 사치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III-82 소비지출 확대 항목

(단위: %)

구분	2013	2015	2016
식료품비	4.9	7.1	7.1
교통·통신비 (차량 유지비 포함)	3.7	4.7	6.8
외식비	8.6	16.3	7.6
교육비	10.4	11.8	9.1
주거비	-	-	7.4
의류비	18.1	14.2	14.6
문화여가비	51.5	45.2	46.1
보건의료비	1.0	0.6	0.5
경조사비	0.1	-	0.2
연료비(전기·가스 등)	0.5	0.1	0.1
기타	1.2	-	0.4
모름/무응답	-	-	0.2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년도.

3-2-9. 계획적인 소비 여부

다음 <표 III-83>은 계획적인 소비 여부를 나타낸다. 2016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6.7%,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43.9%,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5.8%,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0.7%로 조사되었다.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과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친 비율은 39.7%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과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친 비율인 16.5%보다 2배 이상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3 계획적인 소비 여부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1.3	0.9	0.7
그렇지 않다	26.9	23.5	15.8
보통이다	38.4	42.8	43.9
그렇다	32.2	31.6	36.7
매우 그렇다	1.2	1.2	3.0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3-2-10. 채무 여부

현재 갚아야 할 채무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 <표 III-84>이다. 채무 여부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21.8%, 2016년에는 20.2%로 나타나 청년층 채무자 비중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84 채무 여부

(단위: %)

	2015	2016
전체	21.8	20.2
성별		
남자	19.8	21.1
여자	24.0	19.1
연령		
20대	7.4	9.6
30대	35.5	30.9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갚아야 할 채무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4) 주거

(1) 주거현황

4-1-1. 청년층 주거형태

주택 점유형태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III-85>과 같다.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자가가 약 55%, 전세가 21~28%, 월세가 10~18%의 비율이다. 이와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주거형태를 보인다. 특히 청년층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자가의 비율은 현저히 낮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15~24세의 경우에는 전세보다도 더 높은 비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가나 전세에 거주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예를 들어, 15~29세의 경우 2000년 22.5%에서 2010년 48%로 증가)이 청년층의 전 연령대에서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III-85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연령	연도	자가	전세 (월세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 시택 등)
전국	전체	2000년	54.2	28.2	10.7	2.0	2.2	2.8
		2005년	55.6	22.4	15.1	2.1	1.8	3.1
		2010년	54.2	21.7	18.2	2.0	1.3	2.7
	15-24세	2000년	7.5	36.1	30.4	9.4	13.2	3.5
		2005년	6.5	23.8	46.6	8.9	10.3	3.8
		2010년	5.6	16.2	59.0	8.2	8.1	2.8
	15-29세	2000년	14.3	48.0	22.5	4.8	6.2	4.1
		2005년	12.7	33.3	38.3	5.6	5.4	4.6
		2010년	11.6	27.6	48.0	5.0	3.9	3.9
	15-39세	2000년	32.0	43.7	15.0	2.5	3.1	3.6
		2005년	31.9	34.5	24.1	2.9	2.5	4.1
		2010년	29.5	32.3	30.0	2.6	1.8	3.8
동부	전체	2000년	49.1	32.6	12.1	1.9	2.2	2.1
		2005년	51.6	25.4	16.8	2.1	1.7	2.4
		2010년	50.3	24.3	20.1	2.0	1.3	2.1
	15-24세	2000년	6.9	38.2	32.1	8.1	12.0	2.7
		2005년	6.3	25.0	49.2	7.8	8.6	3.0
		2010년	5.4	16.7	61.8	7.8	6.3	2.1
	15-29세	2000년	13.3	50.3	23.3	4.3	5.8	2.9
		2005년	12.2	34.7	39.8	5.1	4.7	3.6
		2010년	11.1	28.3	49.9	4.8	3.2	2.7
	15-39세	2000년	30.5	46.2	15.4	2.3	2.9	2.6
		2005년	31.0	36.0	24.8	2.7	2.2	3.2
		2010년	28.5	33.4	31.0	2.6	1.6	2.9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주: 2000년의 경우 일반가구수에서 미상인 가구는 제외함.

4-1-2. 청년층 실주거비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층들이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아래의 <표 III-86>는 월세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국 기준에 비해 도시 가구의 월세가 좀 더 높다. 도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월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7년 평균 58,288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77,576원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현재 109,586원에 이른다. 물론, 이 수치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86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단위: 원)

연령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전국	41,552	40,909	41,946	45,839	49,475	55,207	59,087	61,423	74,227
	도시	42,632	41,652	43,131	47,610	51,852	57,250	60,805	63,048	76,264
39세 이하 가구	전국	57,373	54,329	53,072	56,046	67,105	71,996	69,317	81,152	102,720
	도시	58,288	54,858	54,807	57,906	70,405	77,576	72,817	87,132	109,586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주: 실제주거비: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월세액만을 포함하며, 월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4-1-3. 청년 가구 비율

다음의 <표 III-87>은 일반가구 가구주 중 청년층 가구주의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연령층에 따라 그 비율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년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 등과 같이 교육기간의 연장과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모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도 연계된다. 특히, 최근 들어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5~39세의 가구주 비율은 1980년 43.9%에서 2000년 36.5%까지 감소하였고, 2015년 24.2%만이 가구주로서 독립하고 있다. 이는 1980년과 비교해보면 19.7%p 감소한 것이다.

표 III-87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5-24세	5.0	3.9	3.7	3.0	3.1	2.6	2.8
15-29세	15.6	14.2	12.0	10.0	8.7	7.9	7.1
15-39세	43.9	44.7	42.3	36.5	31.3	27.3	24.2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주: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가구수/전체 일반가구수*100

4-1-4. 청년 1인 가구 비율

앞서 청년층이 단독 가구로 독립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다음의 <표 III-88>은 독립했을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제시한 것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데 고령층의 1인 가구 증가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1인 가구 증가도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물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 등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게 되어 1인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지만, 청년층의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먼저, 15~24세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 56.2%에서 2015년 80.9%로 24.7%p 증가하였고, 15~29세의 경우에도 2000년 39.1%였던 것이 2015년 69.9%로 2000년 대비 약 79% 이상 증가하였다.

표 III-88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2000	2005	2010	2015
전체	15.5	20.0	23.9	27.2
15-24세	56.2	63.9	70.9	80.9
15-29세	39.1	52.1	59.2	69.9
15-39세	18.7	27.2	33.8	41.0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주: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1인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4-1-5.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

청년층의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부모님명의로의 집)이 2016년 기준 54.8%로 가장 많은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세가 23.7%, 자가(본인명의로의 집)가 13.0%, 월세(사글세, 보증부 월세 포함)가 7.7%, 무상 및 기타(기숙사 등)가 0.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89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자가(본인명의로의 집)	16.0	11.9	13.0
자가(부모님명의로의 집)	54.9	51.4	54.8
전세	20.5	24.6	23.7
월세(사글세, 보증부 월세 포함)	7.3	10.1	7.7
무상 및 기타(기숙사 등)	1.3	2.0	0.8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4-1-6. 부모 동거 여부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응답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60.2%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가 63.4%, 여자가 56.7%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4.1%, 30대가 23.9%로 나타났다.

표 III-90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60.9	53.4	60.2
성별			
남자	66.7	56.6	63.4
여자	54.8	49.9	56.7
연령			
20대	84.8	80.9	84.1
30대	38.2	27.1	23.9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4-1-7. 미혼 혼자 거주 여부

부모와 비동거 또는 독립인 경우에만 응답한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14.9%로 나타났으며, 남자(21.5%)가 여자(8.9%)보다 약 12.6%p 더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1 미혼 혼자 거주 여부

(단위: %)

	2015	2016
전체	25.1	14.9
성별		
남자	35.8	21.5
여자	15.0	8.9
연령		
20대	77.4	42.4
30대	12.1	9.3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4-1-8. 현재 주거 형태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한 현재 주거 형태는 2016년 기준으로 원룸(다가구)이 35.2%로 1순위로 조사되었고, 아파트가 33.6%로 2순위, 다세대/빌라가 23.7%로 3순위로 나타났다.

표 III-92 현재 주거 형태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원룸(다가구)	6.6	41.0	35.2
아파트	57.7	2.6	33.6
다세대/빌라	17.4	23.9	23.7
오피스텔	1.3	15.4	4.7
하숙	-	1.7	0.6
기숙사	1.2	12.0	-
고시원	0.2	2.6	-
단독주택	15.2	-	-
기타	0.4	0.9	2.2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4-1-9. 현재 거주지 전입신고 여부

현재 거주지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한 비율은 2015년 60.7%에서 2016년 7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조사 기준으로 성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연령대별로는 20대보다 30대가 현재 거주지 전입신고 여부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3 현재 거주지 전입신고 여부

(단위: %)

	2015	2016
전체	60.7	75.2
성별		
남자	61.7	74.8
여자	58.3	76.1
연령		
20대	44.4	64.5
30대	86.7	85.2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현재 거주지 기준 전입신고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2) 주거여건

4-2-1.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의 지표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빈곤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청년 가구주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I-94>과 같다. 먼저, 일반가구 전체를 볼 때 주택 외에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2000년 0.59%에서 2005년 1.36%, 2010년 2.04%, 2015년 3.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4% 미만이다. 이에 반해 청년층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5~39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 외 거주비율이 2000년 0.71%에서 2005년 2.8%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64% 이상 증가한 4.6%이며, 2015년에는 6.5%가 주택 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주거빈곤이 타 연령층에 비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94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및 비율

(단위: 가구, %)

연령	2000		2005		2010		2015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전체	84,353	0.59	216,857	1.36	353,942	2.04	713,986	3.74
15-24세	7,045	1.63	29,298	6.01	44,287	9.79	41,605	7.91
15-29세	17,938	1.25	75,610	5.45	116,216	8.48	130,843	9.68
15-39세	37,285	0.71	139,060	2.80	217,883	4.60	300,822	6.50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주: 1)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2) 주택 외 거주: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4-2-2.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청년층이 깊어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금융부채+임대보증금)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III-95>와 같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은 연령층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전체가구 평균을 기준으로 41.2% 수준이었는데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49.8%, 2012년 51.4%, 2013년 53.9%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50%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이와 유사한 50.9%로 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30~39세의 경우에는 결혼에 따른 주택마련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은 30세 미만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 전체 가구 평균으로 보았을 때 2010년에는 118% 수준으로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형태이며, 2015년에는 127.5%까지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표 III-95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단위: 만원, %)

가구주 연령계층별 (10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가구 평균	보유가구 중위										
전체	가처분소득	3,047	2,395	3,283	2,552	3,476	2,776	3,651	2,946	3,819	3,138	3,924	3,229
	부채	4,618	3,000	5,205	3,080	5,450	3,240	5,858	3,646	6,051	4,007	6,181	4,470
	비율	151.6	125.3	158.5	120.7	156.8	116.7	160.4	123.8	158.4	127.7	157.5	138.4
30세 미만	가처분소득	2,272	1,928	2,546	2,127	2,495	2,265	2,600	2,255	2,963	2,442	2,958	2,635
	부채	936	840	1,268	1,000	1,283	1,000	1,401	852	1,481	1,078	1,506	1,300
	비율	41.2	43.6	49.8	47.0	51.4	44.2	53.9	37.8	50.0	44.1	50.9	49.3
30~39세	가처분소득	3,383	2,852	3,532	3,002	3,779	3,256	3,935	3,392	4,085	3,597	4,174	3,723
	부채	3,981	2,900	4,609	3,000	4,405	3,200	4,890	3,530	5,257	4,024	5,323	4,634
	비율	117.7	101.7	130.5	99.9	116.6	98.3	124.3	104.1	128.7	111.9	127.5	124.5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각 년도.

* 주: 1)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세금, 4대보험, 이자비용 포함)

2) 총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 비율=총부채/가처분소득*100

4-2-3. 기숙사 수용률

다음의 <표 III-96>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기숙사 수용률을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지역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5년을 기준으로 기숙사수용률은 전체적으로 18%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II-96 기숙사 수용률

(단위: 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평균	18.51	22.64	17.11	16.64	15.14	17.40	18.35	18.35	18.36
서울	12.24	17.18	11.50	8.93	3.64	12.76	10.78	5.28	13.46
부산	12.86	16.60	10.93	13.51	17.58	11.42	14.18	17.39	12.46
대구	15.41	19.98	9.84	16.53	22.02	9.69	15.93	20.79	9.87
인천	10.56	9.08	11.65	12.09	12.69	11.70	11.56	10.85	12.05
광주	19.43	24.52	16.90	19.37	24.45	16.77	20.07	25.78	17.12
대전	23.74	33.24	17.29	23.05	31.15	17.38	24.26	33.76	17.59
울산	28.53	102.13	13.92	30.83	102.91	13.88	31.92	89.40	15.05
경기	15.33	11.77	15.48	14.90	14.42	14.92	15.58	15.57	15.58
강원	32.14	30.43	33.40	31.65	30.26	32.67	32.28	29.93	34.09
충북	25.00	21.98	26.97	24.61	21.77	26.42	27.81	27.78	27.83
충남	22.88	31.79	21.44	22.53	31.44	21.23	24.77	30.93	23.84
전북	21.25	18.94	22.81	21.27	18.51	23.14	21.80	19.86	23.17
전남	29.10	28.15	30.43	29.35	27.63	31.74	31.79	28.66	36.26
경북	25.69	25.68	25.70	25.19	26.65	25.01	26.60	26.68	26.58
경남	20.80	20.89	20.72	20.89	20.25	21.51	23.04	24.26	21.87
제주	15.49	16.26	7.00	16.10	15.92	18.43	15.49	15.80	12.42
세종	31.37	0	31.37	31.16	0	31.16	31.64	0	31.64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국립대법인을 포함
2) 사립: 사립 및 기타를 포함함

4-2-4. 주거 마련 시기 의견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시기에 대한 의견은 향후 10년-20년 이내가 34.8%로 가장 많았고, 향후 20년 이후가 17.8%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년층의 50%이상이 본인 명의의 집 마련에 시간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결과이다.

표 III-97 주거 마련 시기 의견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이미 소유하고 있다	14.9	11.9	13.6
향후 1년 이내	1.4	0.4	0.4
향후 1년-3년 이내	3.1	1.7	0.9
향후 3년-5년 이내	6.8	3.8	5.4
향후 5년-7년 이내	9.0	11.6	8.2
향후 7년-10년 이내	19.7	21.0	12.5
향후 10년-20년 이내	30.2	31.9	34.8
향후 20년 이후	10.7	11.1	17.8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4.2	6.6	6.3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4-2-5. 공동주거

공동주거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기준 9.1%로 나타났으며, 남자(9.4%)보다는 여자(8.7%)가 약 0.7%p 경험이 더 많고, 30대(7.6%)보다는 20대(11.2%)가 약 3.6%p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공동주거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청년층의 7.6%로 공동주거에 대한 선호가 그리 크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8 공동주거_공동주거 경험

(단위: %)

	2015	2016
전체	9.5	9.1
성별		
남자	10.9	9.4
여자	7.9	8.7
연령		
20대	10.9	11.2
30대	8.2	7.6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공동주거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표 III-99 공동주거_공동주거 의향

(단위: %)

	2015	2016
전체	17.9	7.6
성별		
남자	18.4	8.0
여자	17.3	7.2
연령		
20대	24.2	9.6
30대	11.9	3.4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향후 공동주거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4-2-6. 평소 주거 생각

다음 <표 III-100>부터 <표 III-103>까지는 평소 주거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다. 먼저, 2016년 조사 기준으로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가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61.8%로 본인 명의의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현재 집 값의 수준에 대한 생각인데,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27.4%, 42.0%로 나타나 약 70%의 청년층이 현재 집 값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9.9%,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27.8%,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앞의 집 값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 본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에 응답한 응답 비율 또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재 집 값 수준의 적정성 여부와 크게 상관없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00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1.1	1.1	1.0
그렇지 않다	11.9	13.7	12.1
보통이다	26.3	24.4	25.2
그렇다	47.8	48.5	48.5
매우 그렇다	12.9	12.3	13.3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표 III-101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14.8	23.0	27.4
그렇지 않다	45.5	38.3	42.0
보통이다	28.6	25.6	21.6
그렇다	9.2	11.6	8.0
매우 그렇다	1.9	1.5	1.0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표 III-102 평소 주거 생각_3.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4.3	6.1	5.6
그렇지 않다	23.7	26.3	22.8
보통이다	37.5	42.7	39.9
그렇다	32.1	23.4	27.8
매우 그렇다	2.4	1.5	3.9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표 III-103 평소 주거 생각_4.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5.5	2.8	6.5
그렇지 않다	29.1	20.4	20.5
보통이다	36.7	42.0	41.6
그렇다	25.1	28.3	26.7
매우 그렇다	3.6	6.5	4.7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5) 건강

(1) 신체 및 정신건강

5-1-1. 정기적인 운동습관

정기적인 운동습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하는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걷기 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분율을 나타내는데, 전체 연령대에서는 2005년 60.7%부터 2013년 37.4%까지 꾸준히 걷기 실천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 41.3%로 소폭 걷기 실천율이 상승하였다. 청년층에서는 만19세에서 29세가 만30세에서 39세보다 모든 연도에서 걷기 실천율이 약 15%p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4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걷기실천율

(단위: %)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60.7	45.8	46.9	46.0	40.9	37.6	38.7	37.4	41.3
연령									
19-29세	61.2	50.9	55.1	53.0	50.9	49.8	50.6	49.0	51.9
30-39세	58.1	39.6	41.6	52.2	38.3	34.9	39.0	35.7	37.1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걷기실천율.

* 주: 걷기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만19세이상.

다음으로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분율을 나타내는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은 만 19이상 29세 이하는 2005년에 14.2%, 2013년에 23.3%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만 30세에서 만 39세 또한 큰 폭은 아니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5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단위: %)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	15.2	13.8	17.0	17.7	15.9	13.9	13.5	17.1
연령									
19-29세	-	14.2	15.7	18.2	20.8	18.6	14.5	17.1	23.3
30-39세	-	15.7	12.2	17.7	16.5	13.9	14.2	14.1	18.5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 주: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분율. 만19세 이상.

5-1-2. 비만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의 비만율(체질량지수 기준 25kg/m² 이상인 분율)은 2001년 30.3%에서 2014년 31.5%까지 큰 변화가 없는것에 비해 만 19세에서 만 29세의 청년층은 2001년 17.3%에서 2014년 23.9%까지 약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0세에서 만 39세의 청년층 또한 2001년 25.6%에서 2014년 31.8%로 약 6.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6 비만율

(단위: %)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0.3	31.4	32.1	31.0	31.9	31.4	31.9	32.8	32.5	31.5
연령										
19-29세	17.3	19.3	22.0	23.0	22.1	20.5	21.7	22.4	22.4	23.9
30-39세	25.6	29.0	27.8	28.0	29.5	31.0	31.5	32.5	33.2	31.8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유병률.

* 주: 비만율 -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분율, 만19세이상.

5-1-3. 스트레스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로 표현한 스트레스 비율은 만 19세에서 만29세 청년층의 경우 2001년 33.7%에서 2014년 28.9%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만 30세에서 만 39세 청년층 또한 2001년 37.0%에서 2014년 34.0%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7 스트레스

(단위: %)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4.6	35.1	27.1	28.9	31.0	28.2	27.9	27.0	23.8	25.5
연령										
19-29세	33.7	33.0	28.0	32.6	34.6	32.1	34.9	34.0	26.5	28.9
30-39세	37.0	36.4	28.0	33.6	36.4	32.9	33.1	30.1	27.7	34.0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스트레스인지율.

* 주: 스트레스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느끼는 분율, 만19세이상.

5-1-4. 우울증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로 정의 한 우울증은 전체 연령대의 경우 2005년 15.4%에서 2013년 10.7%로 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만 19세에서 만 29세는 2005년에 12.4%에서 2013년에 10.4%로 약 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 30세에서 만 39세는 2005년 12.5%에서 2013년 7.6%로 약 4.9%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08 **우울증**

(단위: %)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	15.4	12.7	14.5	15.0	12.8	13.4	12.9	10.7
연령									
19-29세	-	12.4	9.7	12.4	13.3	11.8	13.6	9.3	10.4
30-39세	-	12.5	9.3	10.8	11.9	9.1	11.6	10.8	7.6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우울증상경험률.

* 주: 우울증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 만19세 이상.

5-1-5. 자살률

사망원인통계(통계청)를 살펴본 자살률은 <표 III-109>와 같다. 인구 10만 명당 건으로 표현한 자살률은 전체 연령대와 더불어 청년층의 경우에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9 **자살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1.0	31.2	31.7	28.1	28.5	27.3
연령						
15-19세	10.7	8.3	8.9	8.2	7.9	4.5
20-24세	20.3	18.3	17.7	14.9	14.5	17.8
25-29세	29.3	29.3	30.1	23.9	21.7	-
30-34세	31.2	29.7	30.4	28.3	27.8	27.9
35-39세	31.5	29.4	30.6	26.5	28.9	-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주: 2014년도 값은 전체, 10-19세, 20-29세, 30-39세 순서임.

5-1-6. 흡연율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흡연율을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로 흡연율을 정의하는데, 만 19세에서 만 29세 청년층의 흡연율은 2001년 30.7%에서 2014년 22.5%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만 30세에서 만 39세 청년층의 흡연율은 2001년 32.6%에서 2014년 30.0%로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여준다.

표 III-110 흡연율

(단위: %)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0.2	28.8	25.0	27.3	26.6	26.9	26.3	25.0	23.2	23.3
연령										
19-29세	30.7	31.6	27.8	33.9	32.4	27.8	28.3	28.0	24.1	22.5
30-39세	32.6	33.0	32.0	32.4	32.8	35.0	36.6	32.5	30.7	30.0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재흡연율.

* 주: 흡연율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만19세이상.

5-1-7.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로 정의한 음주율은 전체 연령대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 19세에서 만29세 청년층의 경우 2005년 65.5%에서 69.1%로 약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만 30세에서 만 39세 청년층의 경우에도 2005년 60.0%에서 2014년 66.4%로 약 6.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1 음주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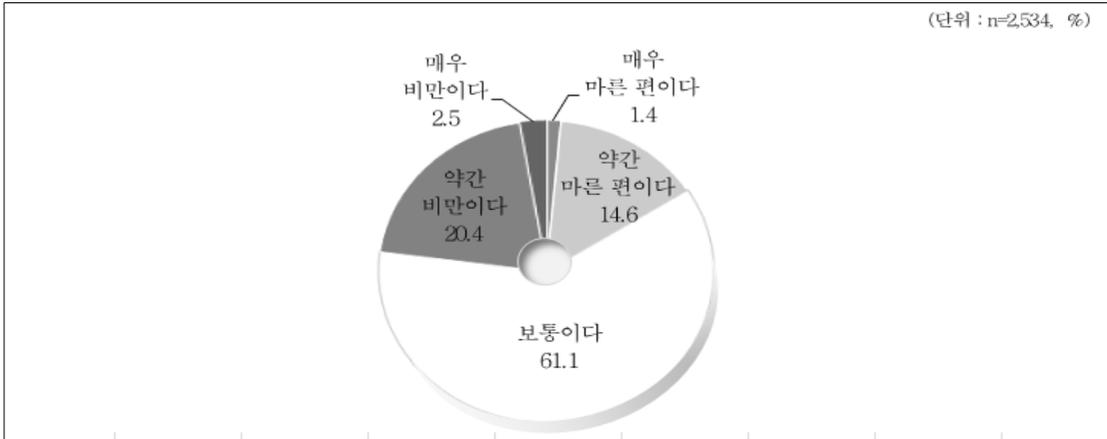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	54.6	56.7	58.7	58.3	59.3	59.2	56.6	58.3	58.1
연령										
19-29세	-	65.5	68.9	69.9	69.6	67.3	73.0	66.6	72.4	69.1
30-39세	-	60.0	62.1	65.5	64.5	67.5	67.5	63.9	67.4	66.4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월간음주율.

* 주: 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만19세이상.

5-1-8. 주관적 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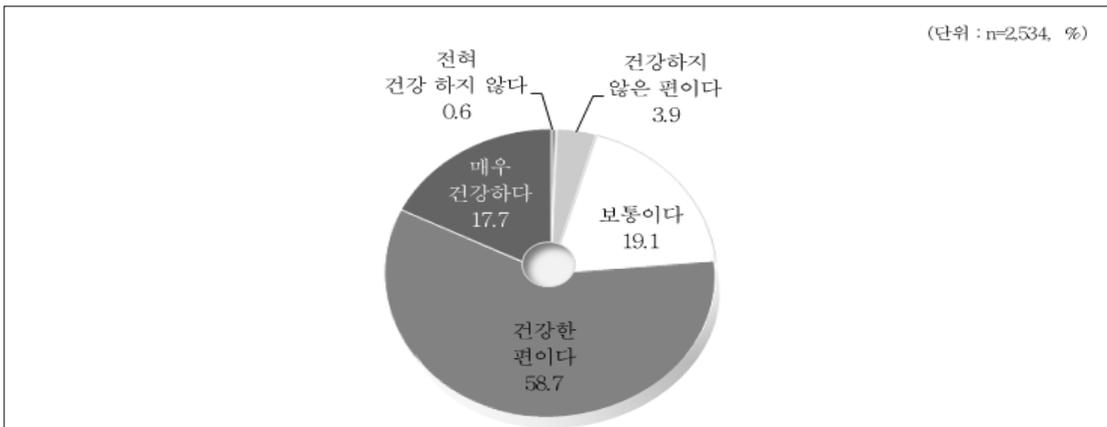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가 61.1%로 가장 많았고, '매우 비만이다'와 '약간 비만이다'를 합쳐서 22.9%, '매우 마른 편이다'와 '약간 마른 편이다'를 합쳐서 16%로 나타났다.



【그림 III-8】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5-1-9. 주관적 건강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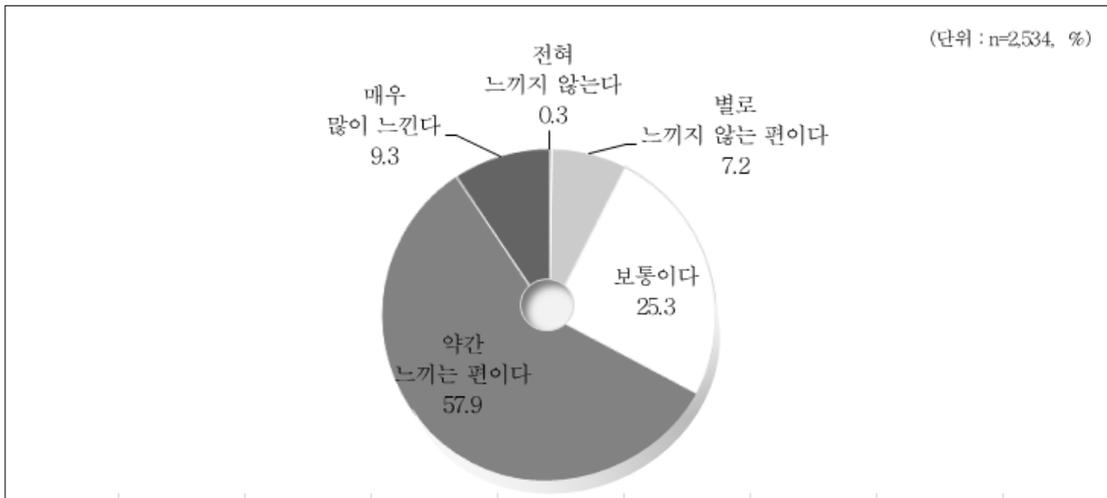
현재 본인의 건강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7%로 나타났고, '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7%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의 약 76.4%는 주관적으로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9】 현재 본인의 건강에 대한 생각

5-1-10. 일상생활 스트레스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67.2%가 느끼는 편이다(약간 느끼는 편이다+매우 많이 느낀다)라고 응답하였으며, 7.5%가 느끼지 않는다(별로 느끼지 않는 편이다+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10】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1) 의료

5-2-1. 청년 병원 이용

다음 <표 III-112>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청년 병원 이용의 결과이다. 청년 병원 이용은 최근 2주 동안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을로 산출하였다.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경우 2001년에는 9.6%로 병원 이용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나 2014년 25.9%로 병원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0세에서 만 39세 청년층의 경우에도 2001년 14.2%에서 2014년 24.2%까지 약 10%p 상승하였다.

표 III-112 청년병원이용

(단위: %)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20.7	26.3	27.8	30.0	28.7	31.4	31.0	30.7	31.6	31.6
연령										
19-29세	9.6	14.7	18.6	21.4	22.5	23.2	25.4	25.7	22.6	25.9
30-39세	14.2	19.3	23.0	20.2	20.7	24.9	22.8	24.4	25.3	24.2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주간 외래이용률.

* 주: 청년병원이용 - 최근 2주 동안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을, 만19세 이상.

5-2-2.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이다. 따라서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은 미래에 위험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일종의 건강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만 10세에서 만 19세 청년층의 경우 2008년 69.3%에서 2013년 80.3%로 약 1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만 20세에서 만 29세 청년층의 경우 2008년 63.2%에서 2013년 71.9%로 약 8.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0세에서 만 39세 청년층의 경우에는 2008년 77.8%에서 2013년 82.1%로 약 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의 경우에는 2008년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기 때문에 상승률은 크지 않더라도 다른 청년층 연령대에 비해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조사되었다.

표 III-113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67.0	67.8	70.7	72.7	73.3	74.2
연령						
10-19세	69.3	70.4	74.0	77.5	78.9	80.3
20-29세	63.2	63.4	68.8	70.5	71.8	71.9
30-39세	77.8	77.6	79.4	82.3	81.5	82.1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국의료패널.

* 주: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 개인단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종신/연금보험 포함.

5-2-3. 성형수술 여부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결과 성형수술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12.7%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7%가 여자의 경우 23.5%가 성형수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6.9%, 30대가 10.9%로 나타났다.

표 III-114 성형수술 경험

(단위: %)

		2016
전체		12.7
성별		
	남자	2.7
	여자	23.5
연령		
	20대	16.9
	30대	10.9

* 주: 성형수술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5-2-4. 성형수술 목적

성형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화상의 치료, 안검하수 등과 같은 의료목적의 성형수술이 있고,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있다. 조사결과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10.0%,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90.0%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 비율이 26.1%로 여자의 8.0%보다 18.1%p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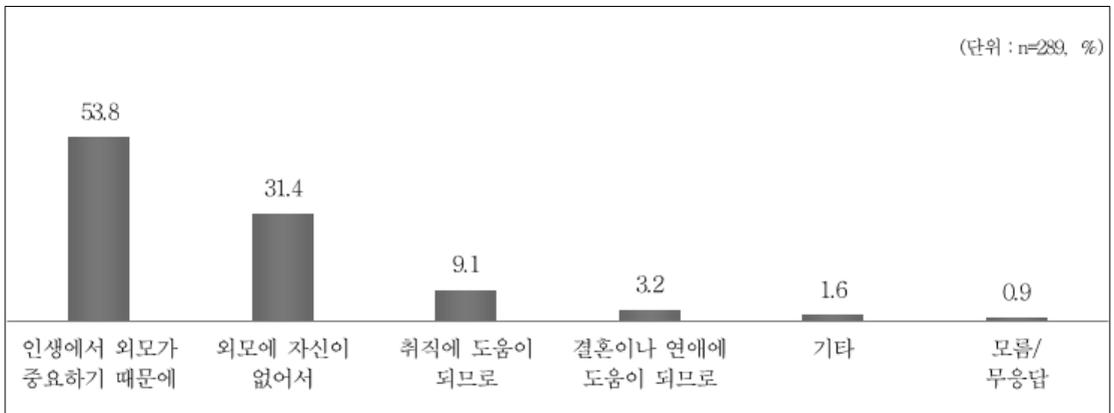
표 III-115 성형수술 목적

(단위: %)

	2016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미용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전체	10.0	90.0
성별		
남자	26.1	73.9
여자	8.0	92.0
연령		
20대	10.0	90.0
30대	10.7	89.3

* 주: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는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가 53.8%로 1순위로 나타났고,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가 31.4%로 2순위,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가 9.1%로 3순위,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가 3.2%로 4순위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의 가장 큰 이유는 외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II-1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6) 문화와 가치관

(1) 문화 및 여가

6-1-1.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을 나타내는 2차자료로는 국민여가활동조사가 있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활동 유형을 휴식활동, 취미오락 활동, 스포츠참여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스포츠관람 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 관광 활동, 문화예술 참여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어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서 보아야 의미가 있는데, 먼저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014년의 경우 만 15세에서 만 19세가 3시간 7분, 20대가 3시간 19분, 30대가 3시간 8분으로 연령대별로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보다 전체 평균으로 약 2시간 12분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 15세에서 만 19세가 5시간 37분, 20대가 6시간 4분, 30대가 5시간 31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16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단위:시간)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평일)	3시간06분	2시간58분	4시간	3시간18분	3시간34분
연령					
10대	3시간33분	3시간19분	3시간6분	2시간36분	3시간07분
20대	2시간50분	2시간34분	3시간42분	3시간06분	3시간19분
30대	2시간38분	2시간17분	3시간12분	2시간48분	3시간08분
전체(휴일)	5시간27분	6시간40분	7시간	5시간06분	5시간46분
연령					
10대	7시간30분	7시간35분	6시간18분	4시간48분	5시간37분
20대	5시간19분	7시간46분	7시간24분	5시간36분	6시간04분
30대	4시간47분	6시간02분	6시간42분	4시간48분	5시간31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하루 평균 여가시간.

* 주: 2014년도 조사는 15-19세임.

6-1-2.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월 평균 여가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만 15세에서 만 19세의 경우 61천원, 20대의 경우 147천원, 30대의 경우 156천원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월 평균 여가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0대에서 20대로 올라갈 때 월 평균 여가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17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단위:천원)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	142	139	168	125	130
연령					
10대	89	31	62	60	61
20대	166	175	205	156	147
30대	168	160	196	150	15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월 평균 여가비용.

* 주: 2014년도 조사는 15-19세임.

6-1-3.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여가생활 만족도는 2006년도는 5점척도, 2012년도는 4점척도, 2014년도는 7점척도로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간의 비교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2014년의 결과만 살펴보면, 만 15세에서 만 19세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4.41점, 20대는 4.69점, 30대는 4.56점으로 나타나 7점 척도의 중앙인 3.5점보다는 다소 높다. 따라서 전체 청년층의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18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점)

	2006	2012	2014
전체	3.16	2.56	4.54
연령			
10대	3.18	2.45	4.41
20대	3.17	2.61	4.69
30대	3.09	2.52	4.5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생활 만족도.

* 주: 1) 2014년도 조사는 15-19세임.

2) 2006년도는 5점척도, 2012년도는 4점척도, 2014년도는 7점척도로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함.

6-1-4. 독서율

독서율은 국민독서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III-119>와 같다. 전체 연령대의 독서율이 2015년 기준으로 67.4%인데 반해 20대 청년층은 91.1%, 30대 청년층은 80.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독서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19 독서율

(단위:%)

	2011	2013	2015
전체	73.7	72.2	67.4
연령			
20대	89.5	89.0	91.1
30대	85.3	83.4	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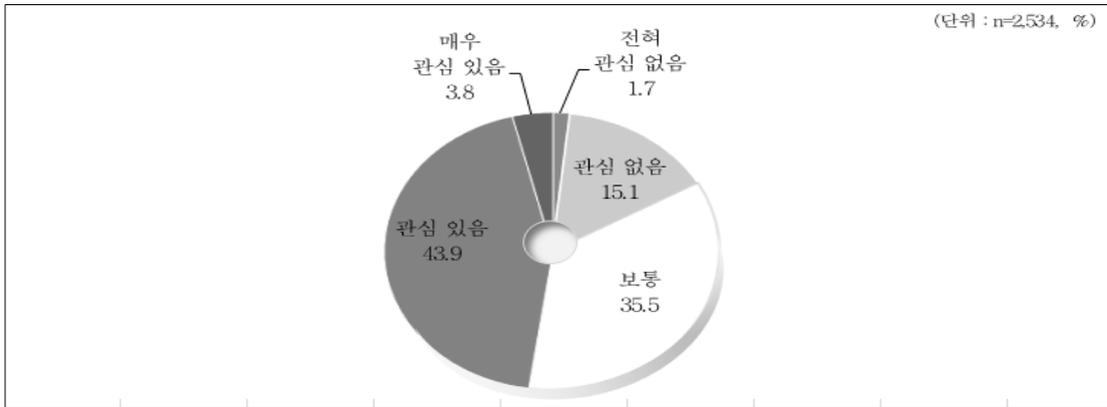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연간 독서율.

* 주: 1) 종이책+전자책 독서율임.

2) 2013년도는 18-29세, 2015년도는 19-29세임.

6-1-5. 문화예술 관심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매우 관심 있음'이 3.8%, '관심 있음'이 43.9%로 나타나 청년층의 절반가량이 평소 문화예술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

6-1-6. 여가활동 대상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하는 사람은 친구가 50.7%로 1순위로 나타났고, 배우자/자녀가 28.7%로 2순위, 혼자가 7.7%로 3순위, 연인이 6.9%로 4순위, 그 다음으로 그 외 가족/친지,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20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 하는 사람

(단위: %)

구분	2016
친구	50.7
배우자/자녀	28.7
혼자	7.7
연인	6.9
그 외 가족/친지	3.0
직장동료	2.0
동호회 회원	0.9
모름/무응답	0.0

6-1-7. 자주 접한 뉴스매체

자주 접한 뉴스매체로는 인터넷신문 또는 2016년 기준 포털이 59.0%로 청년층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텔레비전이 21.4%로 2순위, SNS 등 소셜미디어가 15.0%로 3순위로 조사되었다.

표 III-121 자주 접한 뉴스매체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	54.2	48.9	59.0
텔레비전	35.9	40.3	21.4
SNS 등 소셜미디어	6.2	8.1	15.0
종이신문	2.6	2.1	3.7
라디오	1.1	0.6	0.8
없다	-	-	0.1
모름/무응답	-	-	0.0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2) 가치관

6-2-1.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 중 행복감의 점수를 1점(전혀 행복하지 않았다)에서 10점(매우 행복했다)으로 측정하였다. 전체 연령의 주관적 행복감은 2013년 6.3점, 2014년 6.2점, 2015년 6.2점으로 나타났고, 청년층의 주관적 행복감 또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 주관적 행복감

(단위:점)

	2013	2014	2015
전체	6.3	6.2	6.2
연령			
19-29세	6.5	6.3	6.4
30대	6.4	6.4	6.4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행복감.

* 주: 점수범위: 1점(전혀 행복하지 않았다)-10점(매우 행복했다).

6-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2015년 기준 만 19세에서 만 29세의 경우 5.8점, 30대의 경우에도 5.8점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3 삶의 만족도

(단위:점)

	2013	2014	2015
전체	5.7	5.7	5.8
연령			
19-29세	5.7	5.9	5.8
30대	5.8	5.8	5.8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삶에 대한 만족도.

* 주: 점수범위: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매우 만족한다).

6-2-3. 주관적 계층의식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III-12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연령대에서는 2015년 기준 5.0점으로 사회적 지위가 평균적으로 중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19세에서 29세가 4.8점이고 30대가 5.1점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대가 증가하면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III-124 주관적 계층의식(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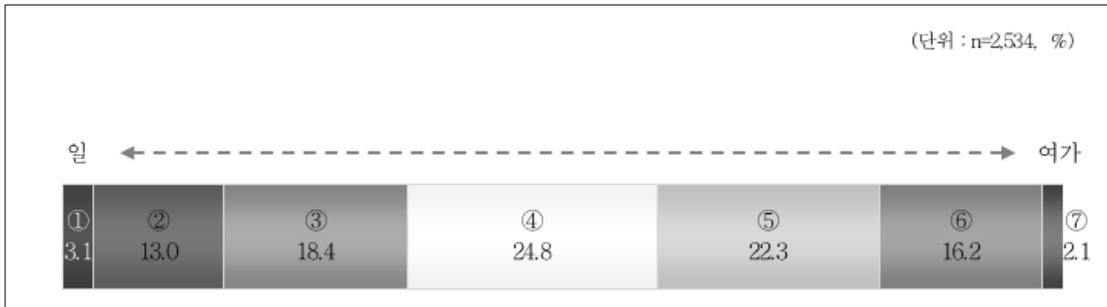
	2013	2014	2015
전체	4.7	4.8	5.0
연령			
19-29세	4.7	4.8	4.8
30대	4.8	5.0	5.1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 주: 점수범위: 1점(매우 낮다)-10점(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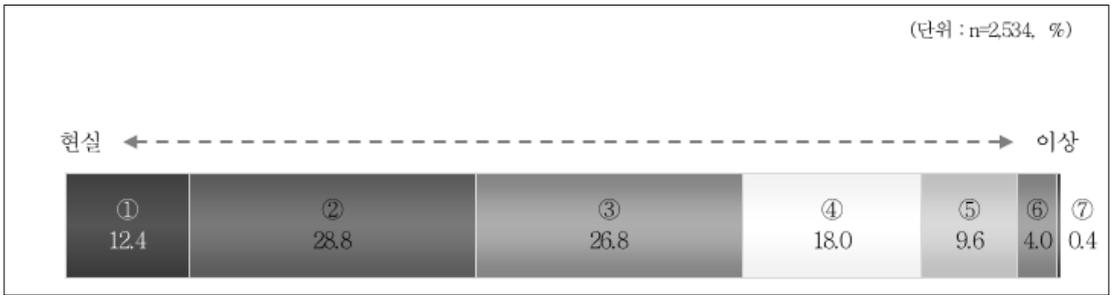
6-2-4. 가치 항목별 선호도

청년층의 가치 항목별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로 상반되는 가치에 대하여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7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1점에서 3점이면 일 중시이고, 5점에서 7점이면 여가를 중시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일은 34.5%, 여가는 40.6%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청년층은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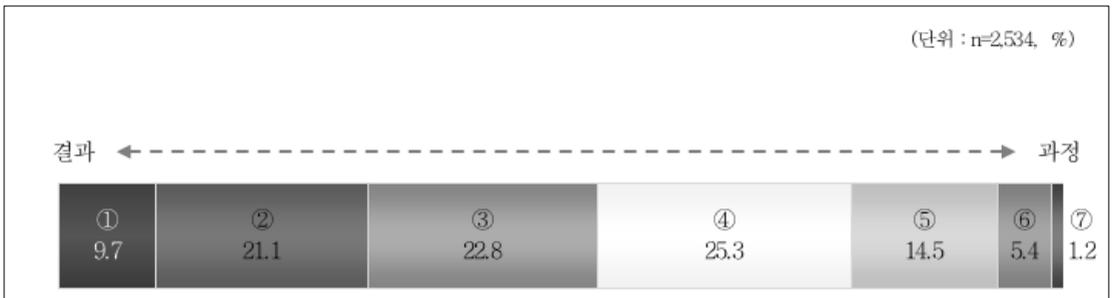
【그림 III-13】 선호하는 가치(일 중시 vs 여가 중시)

다음으로 현실과 이상에 대한 선호도인데, 앞의 일과 여가와 마찬가지로 1점에서 3점이면 현실 중시, 5점에서 7점이면 이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현실 중시가 68.0%, 이상 중시가 14.0%로 나타나 청년층은 이상보다는 현실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II-14】 선호하는 가치(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아래의 그림은 결과와 과정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도이다. 결과 중시가 53.6%, 과정 중시가 21.1%로 나타나 청년층의 절반이상이 결과를 과정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15】 선호하는 가치(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마지막으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선호도인데, 개인 중시가 41.4%, 집단 중시가 21.2%로 나타나 청년층은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II-16】 선호하는 가치(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6-2-5.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 중 즐거움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느꼈다(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항상 느꼈다)라는 응답이 75.9%(2016년 기준)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즐거운 감정을 자주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25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_1. 즐거운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73.0	77.9	75.9
성별			
남자	69.2	76.8	75.1
여자	77.0	79.1	77.0
연령			
20대	71.5	78.1	74.6
30대	74.5	77.7	76.7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가끔 느꼈다(5점)+자주 느꼈다(6점)+항상 느꼈다(7점).

다음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 중 행복함의 경우 69.7%(2016년 기준)가 행복함을 느꼈다(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항상 느꼈다)라고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0대보다 행복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6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_2. 행복한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70.0	75.6	69.7
성별			
남자	65.9	72.9	68.5
여자	74.3	78.5	71.2
연령			
20대	65.7	75.2	67.0
30대	74.1	76.0	73.0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가끔 느꼈다(5점)+자주 느꼈다(6점)+항상 느꼈다(7점).

다음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감정 중 짜증나는 감정의 경우 56.4%(2016년 기준)가 짜증이 났다(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항상 느꼈다)라고 응답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앞의 즐거운 감정과 행복한 감정은 2015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인 반면, 짜증나는 감정은 2015년도(39.7%)에 비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II-127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_3. 짜증나는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50.1	39.7	56.4
성별			
남자	47.4	37.6	55.9
여자	53.0	42.0	56.9
연령			
20대	51.3	44.3	53.5
30대	48.9	35.4	55.8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가끔 느꼈다(5점)+자주 느꼈다(6점)+항상 느꼈다(7점).

무기력한 감정 또한 짜증나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느꼈다(가끔 느꼈다+자주 느꼈다+항상 느꼈다)라는 응답이 2015년도(27.8%)에 비해 2016년도(31.3%)가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II-128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_4. 무기력한

(단위: %)

	2013	2015	2016
전체	30.5	27.8	31.3
성별			
남자	27.3	27.6	30.0
여자	33.9	28.0	32.9
연령			
20대	32.6	31.6	31.7
30대	28.5	24.2	29.7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가끔 느꼈다(5점)+자주 느꼈다(6점)+항상 느꼈다(7점).

6-2-6.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2016년도 조사에서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44.4%로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도 조사인 2015년도의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29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9	0.1	0.8
만족하지 않는다	14.4	4.4	11.2
보통이다	41.1	34.1	43.5
만족한다	40.9	61.0	43.2
매우 만족한다	2.7	0.4	1.2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6-2-7.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의 조사 결과 2016년도 기준으로 '화목한 가정'이 27.1%로 1순위로 나타났다. 청년층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화목한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인 '화목한 가정'에 이어 '재산·경제력'이 24.3%로 2순위로 나타났고, '자아성취'가 12.3%로 3순위, '직업·직장'이 11.4%로 4순위, '건강'이 8.0%로 5순위로 조사되었다.

표 III-130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화목한 가정	27.9	27.6	27.1
재산·경제력	23.2	23.3	24.3
자아성취	15.0	17.5	12.3
직업·직장	7.1	7.3	11.4
건강	6.9	6.2	8.0
친구·대인관계	4.6	3.1	5.0
감사·긍정적 태도	8.9	8.0	4.9
꿈·목표의식	3.3	4.4	4.9
연인(이성관계 등)	2.4	1.5	1.4
종교생활	0.7	1.0	0.6
기타	-	0.1	0.0
모름/무응답	-	-	0.0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6-2-8. 성공 여건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은 2016년도 기준으로 '삶의 주관적 만족감'이 42.1%로 1순위로 나타났다. 2013년도와 2015년도에도 '삶의 주관적 만족감'이 1순위로 나타났으나 2순위인 '금전적 보상이나 재력'과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다. 2016년도에는 2순위인 '금전적 보상이나 재력'과 약 15%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소 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131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삶의 주관적 만족감	36.2	28.2	42.1
금전적 보상이나 재력	27.0	25.2	27.1
꿈이나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	13.3	14.6	12.3
사회적 지위나 권력	13.7	22.6	11.5
주위의 평판이나 명성	9.8	9.3	6.9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6-2-9. 미래 성공 가능성

미래 성공 가능성에는 2016년 기준으로 '있는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48.5%,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2%, '없는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10.4%로 나타났다. 2015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있는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12.7%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은 6.8%p, '없는 편이다'는 6.0%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의 미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있는 편이다'에서 '보통'과 '없는 편이다'로 옮겨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III-132 미래 성공 가능성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없는 편이다	17.1	4.4	10.4
보통	38.3	34.4	41.2
있는 편이다	44.6	61.2	48.5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없는 편이다(Low4 : 1-4점), 보통(Mid2 : 5-6점), 있는 편이다(Top4 : 7-10점).

7) 관계와 참여

(1) 관계

7-1-1. 사회적 관계망

청년층의 사회적 관계망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III-1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화상대가 있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2011년 81%, 2015년 82.4%), 그리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2011년 75.9, 2015년 76.8%)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정도는 청년층에게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 연령층에 비해 여러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3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단위: %)

연 령	항목	2011	2015
전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75.9	76.8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48.6	50.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1.0	82.4
13-18세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	-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58.6	63.8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4.6	89.0
19-29세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82.3	82.6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59.2	61.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8.4	88.8
30-39세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77.7	78.5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57.6	59.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6.7	86.5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7-1-2. 부모와의 교류(가구주)

다음의 <표 III-134>는 청년층이 부모와의 교류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의 만남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부모와 독립하여 독립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주인 청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만남정도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먼저 30세 미만의 경우 '거의 매일' 만난다는 비율은 2008년 4.3%에서 2014년 3.6%로 감소한 반면, '거의 만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은 2008년 1.1%에서 2014년 3.1%로 2%p 증가하였다. 30세 미만에 비해 30~39세 청년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부모와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만난다는 비율은 5.1%에서 2014년 6.1%로 1%p 증가하였고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30세 미만에 비해 2.5%p 더 많다.

표 III-134 부모와의 만남 정도(가구주)

(단위: %)

연령	항목	2008	2010	2012	2014
전체	거의 매일	4.7	5.2	5.3	5.1
	일주일에 한두번	14.6	16.9	17.8	16.7
	한달에 한두번	38.3	39.2	40.6	41.8
	1년에 몇 번	40.5	36.5	33.9	34.2
	거의 만나지 않음	1.8	2.2	2.4	2.2
13-29세	거의 매일	4.3	4.8	4.1	3.6
	일주일에 한두번	16.7	19.0	23.9	17.6
	한달에 한두번	47.8	46.9	43.7	48.8
	1년에 몇 번	30.1	26.9	25.0	26.8
	거의 만나지 않음	1.1	2.4	3.3	3.1
30-39세	거의 매일	5.1	6.2	6.4	6.1
	일주일에 한두번	17.8	20.2	20.6	19.9
	한달에 한두번	40.7	41.7	43.9	44.2
	1년에 몇 번	34.9	29.6	27.2	27.7
	거의 만나지 않음	1.6	2.2	1.8	2.2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주: 2008년과 2010년은 15-29세임.

7-1-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다음의 <표 III-135>은 부모부양에 대한 청년층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년층의 경우 일반 국민 전체와 비교할 때 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족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데 반해,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35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연령	항목	2002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	스스로해결	9.6	7.8	11.9	12.7	13.9	16.6
	가족	70.7	63.4	40.7	36.0	33.2	31.7
	가족과 정부/사회	18.2	26.4	43.6	47.4	48.7	47.3
	정부/사회	1.3	2.3	3.8	3.9	4.2	4.4
13-19세	스스로해결	11.2	8.4	12.1	11.8	10.9	13.7
	가족	67.5	58.0	41.7	42.0	37.2	38.9
	가족과 정부/사회	19.3	31.3	42.9	43.2	48.5	43.7
	정부/사회	1.8	2.2	3.3	2.9	3.3	3.6
20-29세	스스로해결	9.0	6.7	10.8	10.8	11.2	13.8
	가족	66.5	61.4	39.1	37.3	34.0	33.6
	가족과 정부/사회	23.0	29.9	47.1	49.5	51.2	49.6
	정부/사회	1.3	1.9	3.0	2.4	3.6	3.1
30-39세	스스로해결	7.9	6.0	9.8	11.2	11.1	14.2
	가족	68.3	60.9	37.4	32.4	30.3	28.7
	가족과 정부/사회	22.5	31.3	49.1	52.8	54.8	52.7
	정부/사회	1.1	1.8	3.7	3.7	3.7	4.2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주: 1) 기타 항목 제외를 제외한 비율임

2) 2010, 2008, 2006은 15-19세, 2002년, 2008년과 2010년은 15-29세임.

7-1-4. 가족관계 만족도

다음의 <표 III-136>는 청년층이 갖고 있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연령층에 따라 비교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는 달리 청년층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III-136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연령	2006	2008	2010	2012	2014
전체	50.3	56.1	54.8	56.1	55.2
13-19세	54.6	62.2	62.7	68.0	70.8
20-29세	53.5	65.4	64.8	65.0	63.6
30-39세	56.3	62.0	59.7	62.3	61.5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주: 1) '매우만족', '약간만족'에 응답한 비율임.
2) 2006, 2008, 2010의 경우 15-19세임

7-1-5. 친한 친구

2016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90.6%, 여자가 92.1%로 조사되어 여자가 남자보다 약 1.5%p 더 친한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93.4%, 30대가 88.1%로 나타났다. 또한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친한 친구가 3.2명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37 친한 친구

(단위: %)

	2016	
	%	평균(명)
전체	91.3	3.2
성별		
남자	90.6	3.5
여자	92.1	2.9
연령		
20대	93.4	3.2
30대	88.1	2.9

* 주: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7-1-6. 세대 갈등

다음으로 세대 갈등을 살펴보면, 먼저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에 대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7.8%로 나타나 청년층은 기성세대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로 대부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의 경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8.9%,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28.4%로 나타났는데, 청년층은 기성세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는 생각에는 크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는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의 경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가 31.6%로 나타났으며,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29.4%로 나타났다. 기성세대가 다른 세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 또한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노인에 대한 생각은, '노인들은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에 대해 38.4%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0.7%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청년층은 노인들이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는 의견에 대해 상당부분 동의한다고 판단된다. '노인은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에 대해 40.4%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것에는 동의하지만 존경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의 경우 34.7%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2.8%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청년을 비롯한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에 대해 29.1%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7.3%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8 세대 갈등

(단위: %)

구 분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			노인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전혀 그렇지 않다	0.6	2.4	1.8	2.2	1.1	1.3	4.0
그렇지 않다	9.7	26.5	29.8	18.5	20.0	21.5	23.3
보통이다	31.9	42.7	39.0	41.0	38.5	42.5	43.5
그렇다	50.3	25.6	26.1	33.4	36.7	31.1	24.6
매우 그렇다	7.5	2.8	3.3	5.0	3.7	3.6	4.5

(2) 참여

7-2-1. 자원봉사 참여

다음의 <표 III-139>은 청년층의 자원봉사참여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전 연령층의 경우 자원봉사참여 여부는 2003년 14.6%에서 2006년 14.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9년 19.3%로 2006년 대비 5%p 증가한 이후 약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13~19세의 경우에는 2003년 52.4%로 높은 편이며 2013년 80.1%까지 증가한 이후에 2015년 76.6%에 이른다. 이는 학교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20~39세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참여 정도가 낮은 편이다. 다만, 참여 여부는 적지만 참여자의 경우에는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30~39세의 경우에는 2015년 참여시간이 20.8시간으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6.5시간 정도 감소하였다.

표 III-139 자원봉사참여(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기간)

(단위: %, 횟수, 시간)

연 령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여부	횟수	시간	여부	횟수	시간	여부	횟수	시간									
전체	14.6	-	-	14.3	-	-	19.3	-	-	19.8	-	-	19.9	7.6	25.1	18.2	7.8	24.4
13-19세	52.4	-	-	59.5	-	-	79.8	-	-	77.7	-	-	80.1	5.4	16.4	76.6	5.4	16.0
20-29세	10.3	-	-	8.3	-	-	13.9	-	-	13.2	-	-	13.7	7.4	28.7	11.6	8.3	30.6
30-39세	11.6	-	-	10.2	-	-	13.6	-	-	11.2	-	-	11.2	7.6	27.3	10.6	6.9	20.8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주: 1) 자원봉사참여 여부: 연간 평균 참여여부
 2) 자원봉사참여 횟수: 연간 평균 참여횟수
 3) 자원봉사참여 시간: 연간 평균 참여시간
 4) 2003년, 2006년, 2009년의 경우 15세-19세임

7-2-2. 기부활동

다음의 <표 III-140>는 청년층의 기부활동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29세 청년층의 기부활동 정도가 13~19세나 30~39세와 같은 다른 청년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부여부만을 볼 때 전 연령층의 청년들이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증가해오던 기부활동이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40 기부활동(기부여부, 현금기부여부, 물품기부여부)

(단위: %)

연 령	2006			2009			2011			2013			2015		
	기부	현금	물품	기부	현금	물품	기부	현금	물품	기부	현금	물품	기부	현금	물품
전체	31.6	-	-	32.3	-	-	36.4	34.8	8.5	34.6	32.5	5.9	29.9	27.4	6.2
13-19세	15.3	-	-	19.4	-	-	41.1	39.6	4.0	30.1	28.2	4.7	31.0	28.4	5.7
20-29세	19.2	-	-	23.2	-	-	25.5	23.7	5.2	24.8	23.1	3.3	20.8	18.8	3.9
30-39세	36.3	-	-	38.4	-	-	40.2	38.3	10.2	38.0	35.6	6.7	32.2	28.7	7.6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주) 2003년, 2006년, 2009년의 경우 15세-19세임

7-2-3. 단체참여

다음의 <표 III-141>은 청년층의 단체참여 정도를 알아본 것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 연령층을 기준으로 볼 때 단체참여 정도는 2003년 44.8%에서 이후 증감을 계속해오다가 2013년 50.1%까지 증가한 이후 2015년에는 48.9%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단체참여에 있어 청년층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I-141 **단체참여**

(단위: %)

연령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전체	44.8	38.8	39.8	46.6	50.1	48.9
13-19세	23.7	19.3	22.0	32.4	35.1	31.9
20-29세	41.4	32.7	35.6	44.1	48.0	44.9
30-39세	47.1	39.4	40.3	46.2	49.2	48.1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주: 2003년, 2006년, 2009년의 경우 15세-19세임

7-2-4. 투표율

다음의 <표 III-142>는 선거 유형별로 청년층의 투표율을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20대의 경우 20대 후반보다는 20대 전반의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으며, 20대보다는 30대의 투표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0대 내에서도 30대 전반보다는 30대 후반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20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지방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 등의 순으로 투표율이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III-142 **투표율**

(단위: %)

선거	년도	전체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대통령선거	2002	70.8	-	57.9	55.2	64.3	70.8
	2007	63.0	54.2	51.1	42.9	51.3	58.5
	2012	75.8	74.0	71.1	65.7	67.7	72.3
국회의원 선거	2000	57.2	-	39.9	34.2	45.1	56.5
	2004	60.6	-	46.0	43.3	53.2	59.8
	2008	46.1	33.2	32.9	24.2	31.0	39.4
	2012	54.2	47.2	45.4	37.9	41.8	49.1
	2016	58.0	53.6	55.3	49.8	48.9	52.0
지방선거	1998	52.7	-	37.8	30.5	40.3	51.8
	2002	48.9	-	36.3	27.0	34.5	44.8
	2006	51.6	37.9	38.3	29.6	37.0	45.6
	2010	54.5	47.4	45.8	37.1	41.9	50.0
	2014	56.8	52.2	51.4	45.1	45.1	49.9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 주: 1)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2)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 및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7-2-5.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다음의 <표 III-143>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청년층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국가승인통계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층 내에서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 기관 중에서도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앙정부였으며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증가 할수록 신뢰도는 하락함을 알 수 있다.

표 III-143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단위: %)

구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앙정부	전체	1.47	1.45	1.51	1.57	1.58	1.56	1.59	1.65	1.62	1.63	1.65
	15-24세	1.50	1.47	1.58	1.73	1.70	1.52	1.61	1.64	1.65	1.60	1.60
	15-29세	1.44	1.40	1.54	1.62	1.67	1.52	1.57	1.60	1.62	1.61	1.60
	15-39세	1.42	1.41	1.51	1.58	1.60	1.48	1.54	1.55	1.57	1.55	1.61
지방정부	전체	1.51	1.54	1.61	1.62	1.63	1.61	1.63	1.69	1.62	1.69	1.67
	15-24세	1.53	1.51	1.60	1.64	1.69	1.57	1.76	1.77	1.67	1.60	1.69
	15-29세	1.47	1.48	1.57	1.58	1.67	1.57	1.66	1.67	1.63	1.60	1.66
	15-39세	1.44	1.46	1.56	1.56	1.60	1.53	1.58	1.62	1.56	1.53	1.63
국회	전체	1.23	1.19	1.22	1.27	1.28	1.30	1.25	1.33	1.34	1.32	1.33
	15-24세	1.19	1.16	1.20	1.29	1.31	1.29	1.25	1.31	1.32	1.33	1.34
	15-29세	1.18	1.14	1.17	1.24	1.29	1.26	1.24	1.29	1.33	1.32	1.30
	15-39세	1.19	1.15	1.17	1.23	1.24	1.24	1.21	1.26	1.29	1.27	1.31

*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 주: 기관에 대한 신뢰는 매우 신뢰(3), 다소 신뢰(2), 거의 신뢰하지 않음(1)에 대한 평균값임

7-2-6. 의견 표명 행동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는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으로는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서명에 참여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를 조사하였다.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를 살펴보면,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가 38.7%로 나타났으며, 참여한다는 응답(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이 33.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의 경우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41.7%, 참여한다는 응답(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이 33%로 나타났다. ‘서명에 참여하기’에 대해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34.8%, 참여한다는 응답(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이 34.2%로 나타났고,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에 대해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57.9%, 참여한다는 응답(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이 12.7%로 나타났다.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서명에 참여하기’는 참여한다는 응답이 3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는 참여한다는 응답이 12.7%로 나타났다.

표 III-144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단위: %)

구분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서명에 참여하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14.3	16.5	14.9	24.4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24.4	25.2	19.9	33.5
보통이다	27.8	25.3	31.0	29.5
아마도 참여함	30.5	28.4	28.2	11.2
확실히 참여함	3.0	4.6	6.0	1.5

7-2-7. 한국사회 공정성 수준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불공정+매우 불공정) 56.0%로 나타났으며, 공정하다는 응답(공정+매우 공정)은 9.9%로 나타났다.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2013년에는 40.0%, 2015년에는 41.3%로 나타나 점점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5 한국사회 공정성 수준

(단위: %)

	2013	2015	2016
구분			
매우 불공정	7.0	5.9	8.7
불공정	33.0	35.4	47.3
보통	38.2	40.9	34.2
공정	21.2	17.7	9.8
매우 공정	0.6	0.1	0.1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7-2-8. 정치 성향

청년층의 정치성향의 경우 2016년 조사 기준으로 '진보' 성향이 37.1%, '보통'이 45.5%, '보수'가 17.4%로 나타나 중도 성향을 가진 청년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순으로 정치 성향이 나타났다.

표 III-146 정치 성향

(단위: %)

	2015	2016
구분		
진보	22.2	37.1
보통	48.3	45.5
보수	29.5	17.4

* 출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년도.

* 주: 진보(Low4 : 1-4점), 보통(Mid2 : 5-6점), 보수(Top4 : 7-10점),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제 IV 장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2. 해외 청년(청소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제 IV 장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¹⁴⁾

1. 우리나라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청년 관련 법령 현황과 새롭게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본다. 이어서 현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관련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청년정책사업 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청년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2016년 현재 청년 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1792호)과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52호) 등 2가지가 있다. 먼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04년 참여정부 시기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법률 제7185호)에서 시작해 이명박정부 시기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당시 법령의 명칭 개정은 실업해소라는 수동적 접근이 아니라 청년고용촉진이라는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제정이후 현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법률 개정은 2013년에 이루어졌는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14)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이 연구 결과의 일부는 ‘청년세미나 - 청년 기본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주최, 2016년 1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의장)에서 연구과정 일환으로 발표(김기현 선임연구위원, “청년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된 바 있음.

있다. 동시에 법률 내용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의무할당제를 당초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이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 연령은 15세에서 29세로 30대 초반 역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해 시행령의 청년 연령 규정을 청년고용할당제에 한해 34세까지 연장하는 개정작업도 이루어졌다¹⁵⁾. 한편, 현재 20대 국회에 입법 발의¹⁶⁾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총 11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신설된 정부조직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2013년도에 제정되었다.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 시행령으로 당초 2005년도의 국가청소년위원회처럼 행정위원회 형태로 정부조직을 구성하고자 했으나 자문위원회로 조직 성격이 변경되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담고 있으며 실무추진단 구성과 관련하여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의결기구인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추진단은 기획총괄부, 인재양성부, 일자리부, 창업지원팀, 소통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턴 및 운전원을 제외하고 추진단장을 포함해 44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현행 법률체계는 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미미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당연히 19대 국회를 비롯하여 20대 국회 개원이후 청년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새롭게 입법 발의된 법률안들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별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경우 11개에 이르는 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5) 개정된 시행령의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6339&efYd=20160913#0000>, 검색일: 2016년 10월 18일).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1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서 현재 입법 발의된 개정법안의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 청년 관련 기본법안 발의 현황 및 문제점

청년 관련 입법 발의된 법률안은 주로 청년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이나 여성, 장애인, 노인 등과는 달리 청년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우선 19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청년 관련 기본법안을 살펴보자. 19대 국회에서 3가지 법률안이 입법 발의되었는데 국회가 20대로 넘어간 후 자동 폐기되었으나 현재 새롭게 입법 발의된 법률안의 근거가 되고 있으므로 19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률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V-1 19대 국회 청년 관련 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청년 연령	19-40세 (제2조의 1)	19-39세 (제2조의 1)	19-34세 (제2조의 1)
청년 정책	청년 참여의 촉진과 청년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제2조의 2)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확대, 문화·복지 증진,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제2조의 2)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친 청년의 참여확대 및 그 밖에 청년의 권익증진 등 청년과 관련하여 우리사회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제2조의 2)
정부 조직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조정 기구	국무총리소속 청년정책조정회의	대통령소속 청년발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청년발전위원회
주요 내용	·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 청년주간 (1년 중 1주간)	· 청년정책관 지정 · 청년주간(매년 5월 셋째주)	· 청년정책관 지정 · 청년주간 (1년 중 1주간)

* 출처: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청년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9701)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청년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10709)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청년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17647)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외 대표 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과 민주당의 김광진의원과 박기춘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 등 3개 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3개 법안 모두 명칭은 청년발전기본법안으로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10789호)」과 동일하다. 다만 3개 법안이 참조한 「여성발전기본법」은 2015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3369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대 국회 개원이후 제안된 청년 관련 기본법안들은 발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먼저 청년 연령 정의는 하한연령은 공통적으로 19세로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성인 연령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한연령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30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경우가 34세, 가장 적은 경우가 40세로 나타나고 있다. 하한연령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중복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정책에 대한 정의는 공통적으로 참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취업, 창업)이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담고 있다. 가장 폭넓게 청년정책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다른 법안과는 달리 권익증진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3가지 법안이 큰 차이를 보여준다. 박기춘의원안은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반해서, 김상민의원안은 기획재정부가, 김광진의원안은 부처가 아닌 정부의 행정위원회 형태로 국무조정실에서 맡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박기춘의원안은 기존의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이 중복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청년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은 취업이나 창업, 등록금 등 생활안정이나 주거분야로 여성고용정책을 제외하고 이러한 분야를 거의 다루지 않았던 여성가족부가 무리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청년정책이 일자리사업 예산만도 2016년 2조에 이를 정도로 큰데 비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예산은 3,000억 원미만인 현실에서 청년 사업 전반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김상민의원안은 더 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맡는다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 청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투자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으나 이는 한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언젠가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IV-2 20대 국회 청년 관련 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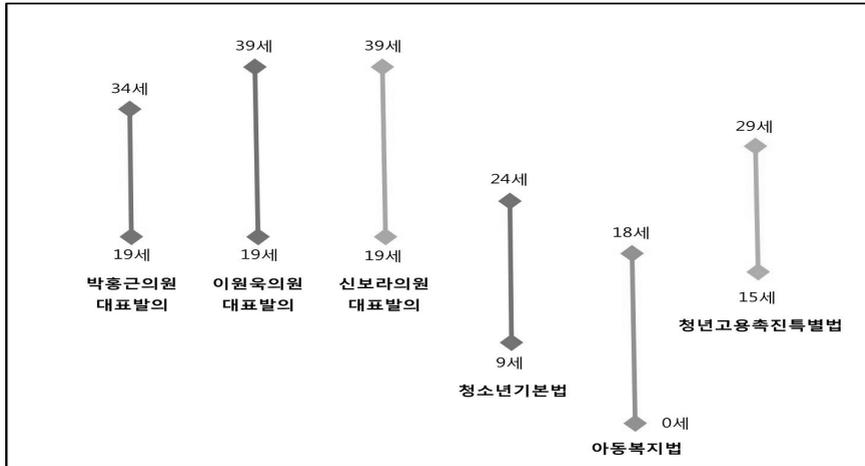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청년 연령	19-39세 (제3조의 1)	19-34세 (제2조의 1)	19-39세 (제2조의 1)
청년 정책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1.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 마련, 5.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청년의 자질 향상(제2조)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및 그 밖에 청년의 권익증진 등에 관하여 우리사회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제2조의 2)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1. 청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및 개개인의 자질 향상,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기반 조성, 4. 청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 마련, 5. 교육, 직업훈련, 취업·창업 등 청년의 자립 과정에서의 평등한 기회 제공, 6. 건전한 청년문화의 육성과 활성화
정부 조직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국무총리
조정 기구	국무총리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주요 내용	·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 청년의 날 (매년 8월)	· 청년정책관 지정 · 청년의 날 (대통령이 지정)	· 청년정책관 지정 · 청년주간 (1년 중 1주간)

* 출처: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 청년기본법안(의안번호24)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청년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1620)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 청년기본법안(의안번호 1778)

마지막으로 김광진의원안은 대상 중심 정책의 경우 다양한 부처에서 업무를 추진 중이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논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은 대부분 중앙부처 중에 한 곳이 맡고 있으며 해당 부처가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정책을 일시적으로 정부 행정위원회 형태로 추진한 바 있으나 위원회 위원장의 지위가 차관급으로 장관급이 참여하는 정책조정기구에서 총괄과 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청년 기본법안을 살펴보자. 새누리당의 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 김상민의원안에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청년정책에 대한 정의를 기본이념으로 변경하고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복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김광진의원안과 유사해 19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측면이 있다. 가장 최근에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의원안은 앞선 2가지 법안을 절충하고 있는데 신보라의원안에서 청년연령 규정과 기본이념을 가져오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정책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조직 운영에 있어서 기존 19대 김광진의원안이나 20대 박홍근의원안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박기춘의원안에서 제기한 여성가족부 주관부처 방안은 현재까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청년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대상 연령의 중복문제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0세에서 18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고, 3개의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의 하한연령을 19세에서 시작하고 있다. 3개 법안 중 어떤 것이든 원안대로 청년 대상 연령이 정해진다면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과 청년기본법안의 청년 연령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률은 아니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청년은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5세부터 18세는 법적으로 아동이자, 청소년이자, 청년인 상황이다. 청년기본법이 상위법은 아니나 모법의 위상을 갖는다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연령정의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이 15세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 인구의 출발연령이 15세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혼란이 발생할 소지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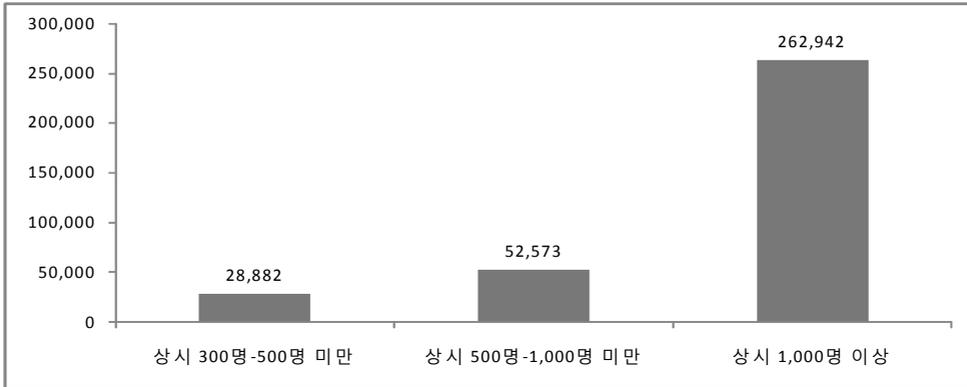
【그림 IV-1】 아동, 청소년 법률과 입법발의된 청년 관련 법안 연령 비교

19대 법안과 20대 법안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19대 법안에 대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기획재정위원회, 2014; 여성가족위원회, 2015). 이 보고서들은 우선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가들이 청소년과 청년을 지칭하는 유스(youth)를 대상으로 입법과 정부조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10대를 제외하고 20대나 30대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입법화를 추진한 국가들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4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 연령규정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법안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연령정의가 상이(하한연령 - 동법 15세, 제안 법안 19세, 상한연령 - 동법 29세, 제안 법안 30대 포함)하여 현행 정책 추진체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발의 현황 및 문제점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한 법안은 총 11개에 이르고 있다. 11개 법안 중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자는 내용과 청년고용할 당률을 높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용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529)에서는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의무고용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과 현행 청년고용할당률을 3%에서 5%로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같은 더불어 민주당의

박남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34)을 비롯하여 국민의 당 김삼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5), 박주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19)과 정의당 이정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에도 같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6)

【그림 IV-2】 민간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적용 시 고용지원금 비용추계 결과(백만 원)

이 법안들은 민간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해당 기업에 지원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삼화의원 대표발의안을 대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비용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년간 3,4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이 288억 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기업이 525억 원, 1,000인 이상 기업은 2,629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은 상시 노동자의 규모에 따라 청년고용할당률을 달리하고 있는데 추계작업은 이를 반영해 기업 규모에 따라 예산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실제 기업에서 채용할 인원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업인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의 결과(인턴 참여자 대비 정규직 전환비율 71%)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 추계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있고 법안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원 확보 시 재정 투입은 추계결과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의무고용제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시급하고 절실한 청년 고용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시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적

규제 방식보다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동참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득의원 대표발의안과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2)은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수당,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용득의원 대표발의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안도 3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지급 대상을 좁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계층 청년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처럼 청년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외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 동안 '전역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직접 수당이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은 전체 청년들에게 적용될 경우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동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실업부조나 수당지급이 오랫동안 정착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재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로 야당 중심으로 고용지원금이나 수당과 같은 정부 재정투자방식의 개정안을 제안한데 비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정 투입이 크지 않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조원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762)을 청년 미취업자가 면접을 볼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상시 고용된 노동자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기업이 면접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24)은 정부가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때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 및 법인, 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백재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587)은 증거 기반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및 운영보고서 작성 등을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시 법안으로 변경하거나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2018년을 2020년 이후로 늦추자는 제안을 담은 개정안들도 있다.

2) 청년 관련 정부조직 현황 및 문제점

(1) 청소년정책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에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5세에서 24세는 법적으로 청소년이지만 동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상 청년이기도 하다. 이처럼 15세에서 24세는 법률적으로 청소년이자 청년이므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15세 이상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은 청년 관련 업무로 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연령 집단을 전기(9-12세), 중기(13-18세), 후기(19-24세)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가족부(2016)에서는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업무 현황을 정리해 제시한 바 있다. 19세는 현재 입법 발의된 청년기본법안들의 하한 연령이므로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정책 사업 중에서 후기청소년을 포함하고 정책 사업은 11개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10대만이 아니라 20대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을 포함한 정책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참여 활동 사업은 대부분 정책대상을 20대를 포함해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참여 연령을 24세까지 되어 있다. 청소년 복지와 관련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의 건강지원사업이나 이주배경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가출청소년 대상 사업 역시 20대를 정책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인 CYS-Net이나 청소년지원센터도 상담 등을 진행하는 정책 대상으로 20대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사업 수로 보면 11개로 적어보이지만 청소년정책의 주요사업들이며 청소년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후기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청소년 참여활동을 제외하고 실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후기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조직으로 볼 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에 포함된 청소년정책관의 모든 청소년부서들은 후기청소년을 포함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청년 혹은 후기청소년을 담당하는 업무가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국 중 여성인력개발과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청년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부처·청	국/실	관/단	과/팀/담당	후기청소년 포함 정책 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업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14-24세)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15-24세) ·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9-24세) · 청소년참여기구(9-24세) · 학교밖 청소년 건강지원(9-24세) ·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9-24세) ·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16-24세) · 청소년 한부모 가구지원(만24세까지)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9-24세) · 가출청소년 대상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9-24세) ·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지원(9-24세)
	여성정책국	-	여성인력개발과	·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관련 정부조직 현황과 문제점

청년 관련 정책은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주거정책, 등록금, 장학금을 비롯한 대학생 학비 지원정책,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등 다양하다. 그렇지만 대부분 특정 연령집단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년만을 특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 중앙부처의 청년 관련 정부조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중앙부처의 부서명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서업무에 명시적으로 청년을 포함하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 명확히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 한정해 중앙부처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IV-4

중앙행정기관 청년 관련 부서 현황

부처·청	국/실	관/단	과/팀/담당	청년관련 업무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	미래정책총괄과 인력정책과	· 고용정책 및 청년고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 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지원과 여성고용정책과	· 청년일자리 사업 및 청년고용대책 총괄 · 청년취업아카데미 · 취업성공패키지 · 한국 잡월드 운영 · 청년고용 동향통계 모니터링 업무 · 청년고용통합전산망 개발 및 운영 · 해외취업지원(K-Move) · 대학 청년고용센터 , 취업지원관 운영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친화강소기업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취업창업교육지원 과	· 산학협력 관련 법령정비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 산학협력 EXPO · 대학생 취업, 창업 활성화 · 희망사다리 장학금 · 학교기업지원 사업
	평생직업교육국	-	인재직무능력 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활용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미래인재포럼 · 자격제도 및 정책기본계획 · 국가역량체계 구축 · 고졸취업활성화 및 문화 확산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	창업진흥과	· 청년창업사관학교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 팁스타운 건립 운영 · 창업도약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운영 · 대학 기업가센터, 창업선도대학 지원 · 청년창업콘서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실무추진단	기획총괄부 인재양성부 일자리부 창업지원팀 소통부	·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 창업 및 창조경제 확산 ·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친화적 일자리 환경 확충 · 청년 권익보호 및 삶의 질 개선 · 청년 응원 콘서트 · 2030 정책참여단 · 청년 포털 및 블로그기자단

* 출처: 각 부처 홈페이지

앞서 살펴본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3개 부처, 1개 청, 1개 위원회 등 5개에 이르고 있다. 부서 조직명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1곳으로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정책실에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두고 있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에는 청년고용기획과와 청년고용지원과가 있다. 청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조직에서 부처명이나 국/실 단위에 청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이 아직까지 명확한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현재 청년정책을 대표하는 정부조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청년 취업이나 창업 관련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고 이를 주도한 부처가 기획재정부이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청년 업무 부서를 갖고 있지 않으며 미래경제전략국의 미래정책총괄과와 인재정책과에서 청년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부처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명시적으로 청년 업무 부서를 갖고 있는데 관련 정책 사업수도 취업성공패키지, 대학청년고용센터 등 11개로 가장 많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업무와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업무가 청년 관련 업무로 추진 중에 있다. 산학협력 업무는 주로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업무는 정책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청년 창업이나 기업가정신 함양 등 청년 업무를 추진 중이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청년 참여활동과 관련하여 2030정책참여단 등을 운영 중에 있다.

3) 청년 관련 정책사업 현황 및 문제점

박근혜정부 들어서 발표된 청년 관련 종합대책은 주로 청년 취업이나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박근혜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13.10)」에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까지 6개의 종합대책이 발표하였다.

명시적으로 청년 관련 기본계획이나 종합대책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이나 종합대책 중에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정책기본계획이나 종합대책 중에서 청년과제를 담고 있는 것은 11개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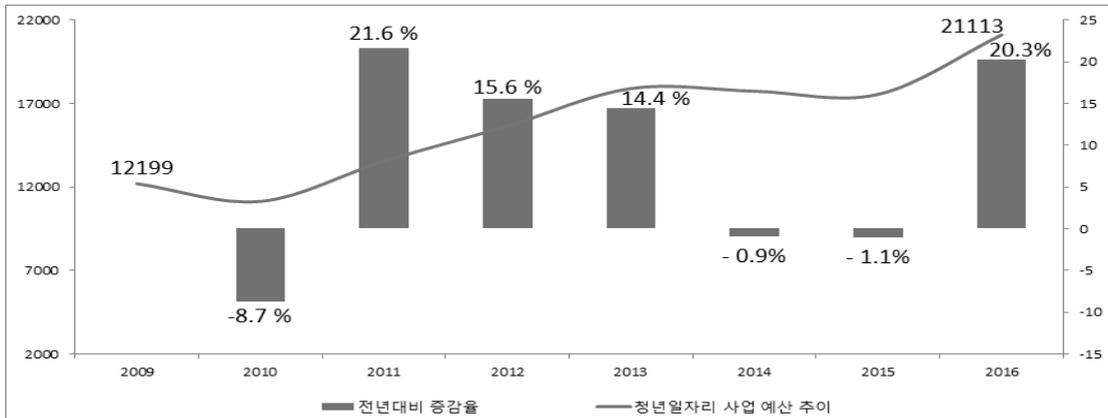
표 IV-5 정부부처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청년 관련 정책 과제

소관부처	계획 및 대책	청년 관련 정책 과제
여성가족부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청년기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 · 양성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교육
고용노동부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 청년층 시험고용 확대 및 장년 적합직종 개발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실시 · 청년 채용형 인턴제 확대 · 청년 창업 활성화 ·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 일학습병행제 추진 ·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교육부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기술창업 촉진 · 대학 내 창업교육 내실화 · 창업 경험·노하우 공유 및 창업도전자 우대 · 창업 재도전 기회 제공
국토교통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대학생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 청년층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지원 ·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 청년 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창업지원 확대 · 공공부문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및 여성친화적 청년인턴사업 확대 ·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 여성 1인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전 지원 · 청년여성인재의 주요 국제기구 인턴십 진출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촉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청년 사업가 성장기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 열린 독서환경 조성

소관부처	계획 및 대책	청년 관련 정책 과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인턴제 우량기업 인증제도 도입 ·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확대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확대 ·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 유도 · 청년 일자리 사업 통폐합 · 재정지원 대상 청년 연령기준 확대 ·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 청년고용+센터 확대 · 청년 해외취업 촉진
고용노동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및 우수 훈련과정 엄선 · 청년의 조기 진로탐색 지원

* 출처: 각 부처

먼저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인 기본계획은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3-2017)」이 청년 관련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종합대책 중에는 「해외취업 촉진대책(15.11)」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이 있다. 이 기본계획은 주로 장애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에 대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관 종합대책은 청년 고용종합대책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고용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청년 고용정책 추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을 취합하고 심의,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원(2015)의 감사 결과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로 청년 일자리계획을 취합하고 평가, 심의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출처: 김기현 외(2015), 2016년 예산은 기획재정부(2016)에서 가져옴.

【그림 IV-3】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추이(억원) 및 전년대비 증감률(%)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 1조 원에 그치던 예산이 2016년 들어 2조 원을 넘어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년대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게 예산이 증액되었다기보다는 특정 시기(2011년, 2016년)에 예산 증액이 크게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2016년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이 2조 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직접일자리지원 사업이 2조 6천억 원 규모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해 2016년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반영해 전년 대비 각각 13.1%, 10.2%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6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및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억 원)

구분	'15년(본 예산)		'16년(안)	
	전체	청년	전체(증감%)	청년(증감%)
총계	139,766	17,549	157,796 (12.9)	21,113 (20.3)
직접일자리	24,634	3,241	26,342 (6.9)	3,686 (13.8)
직업훈련	17,899	6,664	19,716 (10.2)	9,338 (40.1)
고용서비스	6,102	1,450	6,904 (13.1)	2,103 (45.0)
고용장려금	25,961	1,742	28,208 (8.7)	2,581 (48.1)
창업지원	18,339	4,453	19,148 (4.4)	6,405 (23.5)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6,832	-	57,478 (2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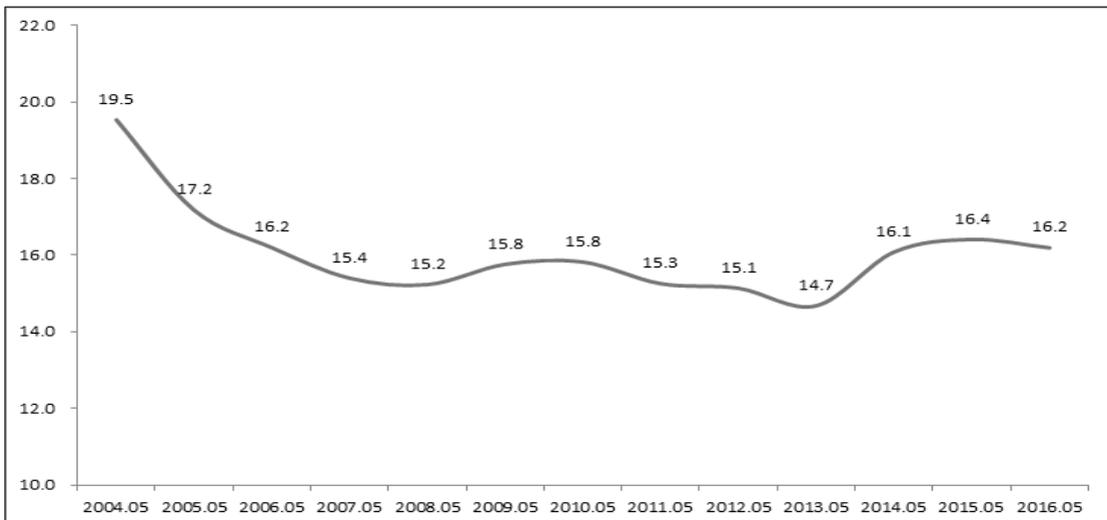
* 자료: 고용노동부(2015), 20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출처: 변정현·전예원(2016), <표 2> p. 11

2016년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청년 지원 예산은 2조 1천억 원 규모로 전체 예산 중 1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5년도와 비교해 0.8%p 늘어난 수치로 큰 차이가 없지만 전체 사업 예산 중 청년 예산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청년 예산만 놓고 보면 20.3%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과는 달리 직업훈련 예산이 9천억 원 규모로 가장 높고 이어서 직접일자리 사업이 3천 7백억 원, 창업지원이 3천 4백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청년들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으로 이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업훈련 예산이 높게 책정된 것은 적절해 보인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를 벗어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예산 비중이 높고 창업의 경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3.5%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사업 영역별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고용대책의 성과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선 청년 고용대책의 주력 사업인 직업훈련의 경우 정부 재정 투자 확대에서 불구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비중은 아직까지도 첫 조사가 이루어진 2004년 19.5%에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15% 미만으로 낮아졌던 직업훈련 참여비율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16%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 것이 위안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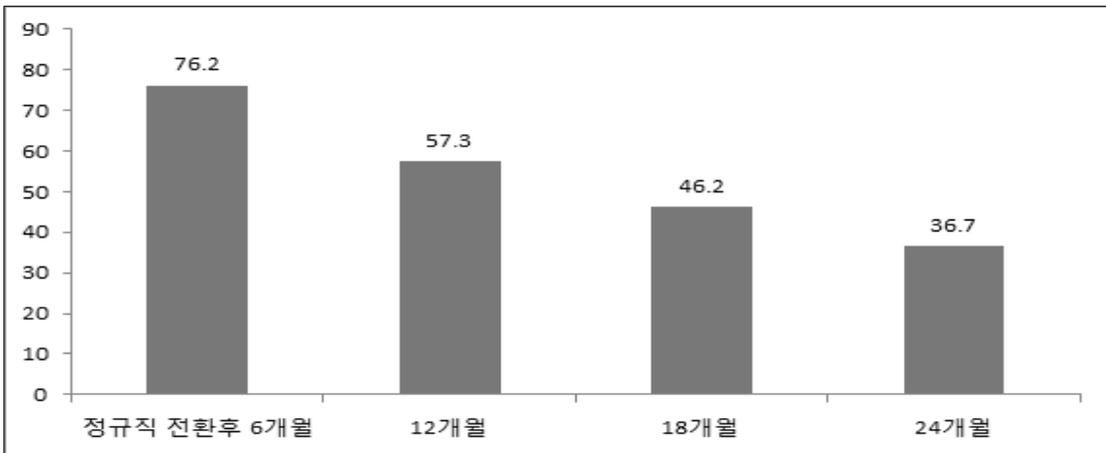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년도,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IV-4] 청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추이(%)

2015년 주로 청년 일자리사업의 법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감사원은 2016년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감사원, 2016).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지적은 정책목표를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로 바꾸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고용의 질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청년층의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고용의 양적 실태 위주로 접근할 경우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고 저임금, 단시간,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청년층의 근로형태, 임금수준, 고용유지 기간 등 고용의 질적 실태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별사업별로 고용의 질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청년정책사업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중단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사업참여자 중 고용이 유지된 경우는 6개월경과 시 57.3%에 불과했고 1년경과 시 46.2%로 낮아졌으며 1년 6개월경과 시 36.7%만이 남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 기업종사자들의 고용유지율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추가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 인턴으로 참여한 청년들 중 정규직 전환률이 62.4%에서 81.5%까지 증가했으나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이처럼 유지되지 않는다면 정규직 전환이 증가해도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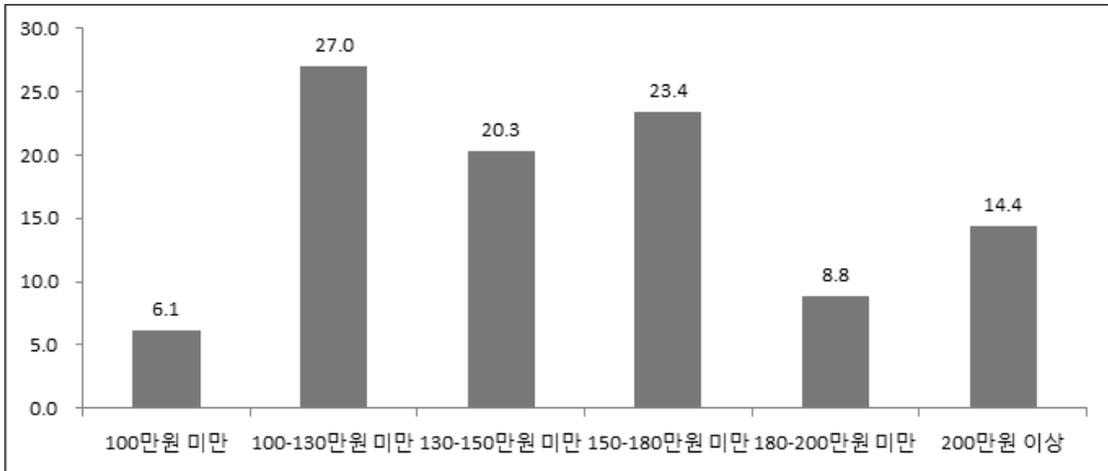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인턴 DB

* 출처: 감사원(2016). [표 21], p. 43

【그림 IV-5】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율 추이(% , 2011-13년 평균)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해외취업지원 사업으로 감사원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기본적인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해외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취업을 나간 청년 취업자 중 절반 가까이가 취업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출처: 감사원(2016), [표 38], p. 63

【그림 IV-6】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취업자 월평균 임금수준(2014년)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청년고용정책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원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저임금(중위 임금의 2/3) 일자리에 취업했으며 1년이 안 되어 일자리를 그만두는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 고용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인 기본계획인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은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된 이후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력개발지원이나 건강지원, 진로 및 직업의식 교육 등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에 청년 고용부문을 담고 있는데 정책 과제는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으로 청년고용 종합대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보면, 청년 문제는 고용만이 아니라 주거나 건강, 등록금, 학자금 등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부분을 포괄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영역들에서 청년 문제를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연령별로 사회보장을 정리한 부분에서 ① 소득보장과 관련 국민연금 내실화, ② 돌봄·교육문화에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③ 주거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렌트푸어 지원, ④ 건강에서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과 예방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⑤ 안전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이 청년(20-30대)과 관련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이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 역시 청년 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고용문제에 대한 부분이며 주거 지원은 청년 예비부부 주거지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에서 청년 고용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책과제들은 주로 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학원생 기술창업이나 대학 내 창업교육,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창업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대학에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 창업 입장에서 보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으로 정책 사업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해 보이지만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6.4)」에서 일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과제들은 청년층 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과 신혼부부와 대학생 수요에 맞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주거 부분이 청년 고용 부분만큼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체 주거 대책의 일부로 청년 주거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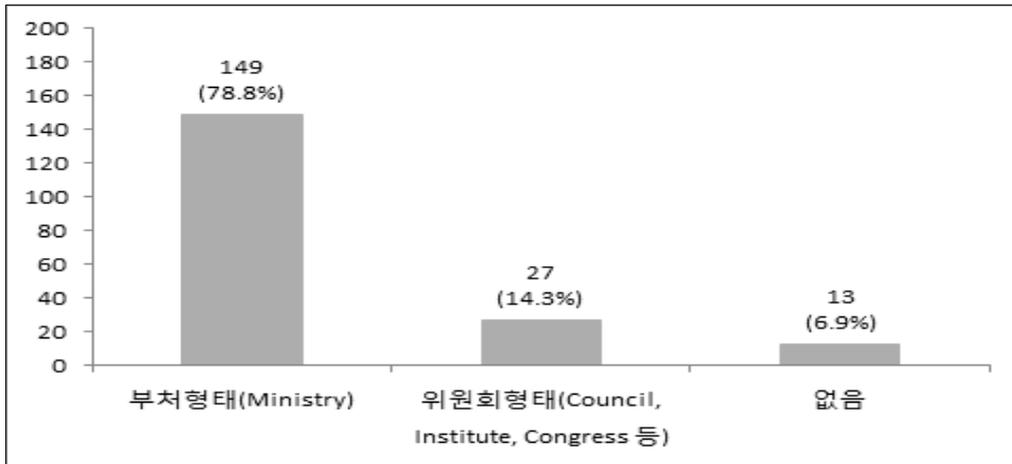
2. 해외 청년(청소년)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1) 전 세계 청년(청소년)정책 현황과 시사점

현재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볼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정책 대상의 연령 규정에서 대다수가 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과 청년(youth)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책 현황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Youthpolicy.org는 전 세계 189개 국가(사회)의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정책 현황을 국가별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및 청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을 주관하고 있고 청년정책은 주관 부처 없이 자문기구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존재하며 고용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 안건으로 청년 고용대책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정책의 정부조직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189개 국가(사회) 중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가 청소년 및 청년정책업무를 주관하는 곳은 149개로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유사하게 행정위원회 혹은 자문기구, 중앙부처협의회, 의회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사회)는 27개로 14.3%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정책이 추진 중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청년단처럼 정부조직이 아닌 별도 조직에서 운영하거나 아예 없는 곳은 1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의원 입법 중인 청년기본법안 중에서 위원회 방식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볼 때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처럼 정책업무를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있고 대상 중심 정책의 특성 상 동시에 각 부처의 청소년 및 청년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나 협의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등 5곳은 위원회나 협의회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 출처: Youthpolicy.org(<http://youthpolicy.org>)

【그림 IV-7】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 중앙조직 형태 비교

위원회나 협의회, 기구 형태의 정부조직들은 당연하게도 청소년 및 청년을 조직 명칭에 담고 있다. 반면, 중앙부처에서는 청소년 및 청년만을 담당하는 부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특정 기능 중심 부처에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우선 중앙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이나 청년(youth) 명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사회)는 부처형태를 취하고 있는 149개 중에서 107개로 71.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을 처음 추진했을 때 체육청소년부라는 명칭으로 부처 명에 정책대상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 주관부처를 옮기면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은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는 국제적으로 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며 최근 들어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이나 청년 대상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중앙부처에 명칭을 포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어떤 중앙부처에 청소년과 청년정책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책 대상 중심 부처로 분류하였다. 정책 대상 중심 부처에는 청소년 및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노인, 시민, 장애인, 가족 등 부처명에 정책 대상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로 분류하였다. 대부분 대상 중심이 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이나 복지 등을 다루는 부처도 이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정책 대상 영역을 다루는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및 청년 업무를 수행 중인 국가(사회)는 11곳이었고 청소년 및 청년 단독 부처까지 포함한다면 25곳으로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7 전 세계 중앙부처 청소년 및 청년(youth) 명칭 포함 여부

구분	국가 수	국가명
부처명	명칭 포함	107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안티과&바브다,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기에2, 벨리즈,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브라자빌, 콩고-킨사사,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피지,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레나다, 기니비사우, 기니-코나크리, 가이아나, 아이티,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이이보리코스트, 자메이카, 케냐,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몰도바,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루마니아,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미포함	42 대한민국 ,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호주, 벨라루스, 부탄, 칠레, 코모로,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미얀마, 나우루, 네덜란드, 니우에,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러시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타이완, 통가, 영국, 우루과이, 베트남

* 출처: Youthpolicy.org(<http://youthpolicy.org>)

대상 중심 중앙부처 외에 기능중심 부처 중에서 청소년 및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곳은 문화 영역의 중앙부처였다. 문화 영역은 중앙부처 명칭에 문화 외에 체육, 관광, 미디어, 종교가 포함된 경우로 우리나라도 1990년 처음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 체육청소년부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까지 15년 동안 문화 영역 중앙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관장하였다. 한국도 처음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 해외사례를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현재까지 문화 영역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청소년 및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많은 국가(사회)에서 청소년 및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영역은 교육과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영역은 교육이나 지역사회개발 등이 부처 명칭에 포함된 곳을, 노동 영역은 노동과 함께 고용, 경제, 정보기술 및 통신,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중앙 부처들을 의미한다. 교육영역에서 청소년 및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사회)는 10개였으며 노동영역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6개였다.

표 IV-8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youth)정책 중앙부처 영역 비교

구분	국가 수	국 가 명	
부 처 영 역	단독	14	뉴질랜드, 볼리비아, 카보베르데, 도미니카공화국, 기니-코나크리, 이집트, 케냐,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문화 영역	68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알제리, 앙골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네덜란드공동체), 벨기에(독일공동체), 보츠나와, 브루나이,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킨샤사,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적도기니, 에타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레나다,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모리타니, 몰도바,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카타르, 루마니아, 세르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수리남, 스와질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예멘, 잠비아, 베냉, 불가리아, 캄보디아, 아이티, 아이보리코스트, 몰디브, 나미비아,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키츠 네비스,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바누아투
	교육 영역	10	핀란드, 룩셈부르크, 안도라, 부르키나파소, 콩고-브라자빌, 토고, 안티과 바브다, 벨리즈, 모나코
	노동 영역	6	오스트리아, 르완다, 세네갈, 스리랑카, 탄자니아, 짐바브웨
	대상 영역	11	대한민국, 독일, 말리, 우간다,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에소토, 마다가스카, 상투메 프린시페, 트리니다드&토바고

* 주: 문화영역은 문화, 체육, 관광, 미디어, 종교가 포함된 경우이며 교육영역은 교육, 지역사회개발이 포함된 경우임. 노동영역은 노동, 고용, 경제, 정보기술 및 통신, 기술개발이 포함된 경우이고 대상영역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시민, 가족 등 대상 중심 정책이 포함된 경우임. 2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처 명에서 앞에 위치한 명칭으로 분류함. 기타로 분류가 불가능한 곳은 40개 국가(사회)임.

* 출처: Youthpolicy.org(<http://youthpolicy.org>)

청소년 및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책 대상영역을 제외하고 수요 관련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6개이며 공급 관련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78개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영역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교육영역보다는 문화영역에서 다루어 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 형식교육과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통합하는 과정이며 취업이나 창업 과정에서 청소년 및 청년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이나 고용, 경제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도 청년이나 청년 관련 정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9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youth) 대상 하한 연령

구 분	국가 수	국 가 명
0세부터	14	미국, 스위스, 벨기에(네덜란드공동체), 핀란드, 일본, 독일, 네덜란드, 코모로, 콩고-브라자빌, 쿠바, 적도기니, 세인트키츠 네비스, 슬로바키아, 수리남,
1~9세	7	대한민국 , 프랑스, 아이슬란드, 안티과 바브다, 에스토니아, 조지아, 이라크
10~14세	48	영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독일공동체), 터키,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베냉, 부탄,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 말라위, 몰타, 모르타니, 멕시코, 팔레스타인, 파푸아뉴기니, 루마니아, 르완다, 솔로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15~20세	111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칠레, 콩고-킨샤사,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기니비사우, 기니-코나크리, 아이티,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이탈리아, 아이보리코스트, 자메이카, 케냐, 키리바시, 코소보,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북한,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카타르, 러시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탄자니아, 타이,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튀니지, 투발루,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21세 이상	0	-

* 출처: Youthpolicy.org(<http://youthpolicy.org>)

정책 대상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청년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렇다면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연령 규정은 어떨까? 정책대상 연령은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을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으며 청년기본법안들이 제안하고 있는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30대 초반 혹은 40세까지이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혹은 청년 연령에 대한 하한 연령을 살펴보자. 현재 절반 이상의 국가(사회)에서는 15세에서 20세로 청소년 및 청년 연령을 시작하고 있다. 10에서 14세가 48개로 뒤를 이었다. 0세부터 청소년 및 청년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회)는 14개였으며 우리나라처럼 1세에서 14세 사이를 하한 연령으로 정한 국가(사회)는 7개로 가장 적었다. 대다수

국가들이 15세에서 청소년 및 청년 연령을 출발하고 있는 것은 15세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경제활동인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15세가 되지 않은 아동이 일을 할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거친 후 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경제활동참여율이나 실업률, 고용률 등 공식통계를 집계할 때에도 15세에서 출발하는 유스(youth) 통계를 내고 있다. 각 국가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나 청년을 15세로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표 IV-10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youth) 대상 상한 연령

구분	국가 수	국 가 명
19세 이하	3	이스라엘, 미얀마, 영국
20~24세	21	대한민국,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부탄, 지부티,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아이티, 아일랜드, 자메이카, 코소보, 마케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이완, 토고, 예멘
25~29세	62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베이도스, 벨기에(독일공동체),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카보베르데,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에콰도르,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조지아, 독일, 그레나다, 가이아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란,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멕시코, 북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시리아, 타이,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루과이, 잠비아
30~34세	48	앙골라, 안티과&바브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벨기에(네덜란드공동체),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캄보디아, 쿠바, 체코, 도미니카, 프랑스, 감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룩셈부르크, 몰타, 모리타니,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나미비아, 니카라과, 니우에, 팔라우, 필리핀, 산마리노,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수리남, 스위스, 카자흐스탄, 동티모르,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35~39세	43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콩고-브라자빌, 콩고-킨샤사,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피지, 가봉, 가나, 그리스, 기니비사우, 기니-코나크리, 이탈리아, 아이보리코스트,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 마라위, 몰디브, 모잠비크, 나우루, 니제르,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40세 이상	3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네팔

* 출처: Youthpolicy.org(<http://youthpolicy.org>)

표 IV-11 전 세계 주요 국가 청(소)년 대상 연령 및 중앙조직 명칭

국가명	대상연령	중앙조직
호주(Australia)	12-24세	교육·고용·노동관계부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오스트리아 (Austria)	14-24세	경제·가족·청(소)년부 (Ministry for Economy, Family and Youth)
벨기에(Belgium)	0-30세	문화·청(소)년·체육·미디어부 (Ministry of Culture, Youth Sports and Media) (네덜란드·프랑스공동체)
	12-26세	문화·미디어·관광부 (Ministry for Culture, Media and Tourism (독일공동체))
브라질(Brazil)	15-29세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Secretariat)
중국(China)	14-28세	공산주의청년단(All-China Youth Federation)
핀란드(Finland)	29세 이하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프랑스(France)	3-30세	체육·청(소)년·대중교육·지역생활부 (Ministry for Sports, Youth, Popular Education and Community Life)
독일(Germany)	0-26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Ministry of Family, Senior, Female, and Youth)
그리스(Greece)	15-35세	교육·종교·업무부(Ministry of Education & Religious Affairs)
헝가리(Hungary)	15-29세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아이슬란드(Iceland)	6-25세	교육·과학·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아일랜드(Ireland)	15-24세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uncil of Ireland (NYCI))
이탈리아(Italy)	15-35세	청(소)년정책·체육부(Ministry for Youth Policies and Sports)
일본(Japan)	0-30세	내각부(Cabinet Office)
룩셈부르크 (Luxembourg)	12-30세	교육·아동·청(소)년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Children and Youth)
멕시코(Mexico)	12-29세	멕시코청(소)년위원회(Mexican Institute of Youth (IMJUVE))
네덜란드 (Netherlands)	0-24세	건강·복지·체육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VWS))
뉴질랜드 (New Zealand)	12-24세	청(소)년 개발부(Ministry of youth Development)
노르웨이(Norway)	12-29세	아동·가족·업무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폴란드(Poland)	15-25세	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러시아(Russia)	15-29세	교육·과학부(Ministry for Education & Science)
대한민국(Korea)	9-24세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스페인(Spain)	15-29세	건강·사회서비스·평등부(Ministry of Health, Social Services and Equality)
스웨덴(Sweden)	13-25세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Council of Swedish Youth Organisations(LSU))
스위스(Switzerland)	30세 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Swiss National Youth Council (SNYC))
영국(United kingdom)	13-19세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미국(United States)	0-25세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Office of Global Youth Issues)

* 출처: Youthpolicy.org(<http://youthpolicy.org>)

이어서 청소년 및 청년정책의 상한 연령을 살펴보자. 상한 연령에서 10대까지 만을 포함한 국가(사회)는 3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소년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소년과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이 청소년이라면 20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용어 정의상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10대를 지칭한다. 그렇지만 법령 상 청소년은 24세로 20대를 포괄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0대만을 청소년 및 청년으로 보는 국가(사회)는 거의 없다는 볼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20에서 24세로 상한 연령을 정한 국가(사회)는 21개로 많지 않은 편이다. 20대 후반이 62개로 가장 많고 30대 초반 48개, 30대 후반도 43개에 이르고 있어 30대 전체를 놓고 보면 91개 국가(사회)로 20대 전체(83개) 보다 많다. 이처럼 30대를 포괄하여 청소년 및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40세 이상을 포함한 국가(사회)는 10대만 포함하는 경우처럼 3곳으로 매우 적은 상황이다.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 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대상 중심 정책을 중앙부처가 아닌 행정위원회나 부처협의회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상 중심 정책은 여러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총괄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지만 정책 추진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두 번째로 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다수 국가들에서 10대 20, 30대는 공통의 정책 대상이며 이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10대와 20, 30대의 사회경제적인 상태가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고용상태에 있지 않고 가정으로부터 분가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면서 과거 10대의 사회경제적인 상태가 20대까지, 나아가 30대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연령 정의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한 연령이 15세이며 상한 연령이 29세인 경우이다.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 등은 아동, 청소년, 청년을 통합하는 생애주기적 접근을 제안한 바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 청년은 사회경제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0세부터 20세 후반을 포괄하여 생애주기적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주요국가 청년(청소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 절에서는 대표적인 청소년 및 청년정책 선진국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특징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많은 참조를 한 국가들은 독일과 일본이며 이 두 국가는 여전히 모범사례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 국가에 포함하였다. 최근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를 비롯하여 청년 고용정책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핀란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법률 및 정책대상 정의: 독일, 핀란드, 일본

여기에서는 먼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과 정책 대상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은 독일 사회법전 제8권(Achtes Buch Sozialgesetzbuch)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에 기초해 있다. 이 법률은 1990년 6월에 시행되었으며 가장 최근 이루어진 법 개정은 2013년 7월에 이루어졌다(European Commission, 2016).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일반규정으로 이 법의 목적이나 정의,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은 아동,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아동, 청소년, 청년 복지에 관한 다른 규정을, 제4장은 정보수집에 대한 정보보호 문제를, 제5장은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사업을 위한 협력과 전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제6장은 행정적인 업무를, 제7장은 정책서비스의 범위와 관할권 문제를, 제8장은 재정 및 비용 문제를, 제9장은 조사 및 통계, 제10장은 처벌과 벌칙에 대한 규정, 11장은 최종 규정을 담고 있다.

제2장을 통해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사업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항은 청소년 및 청년 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청년 복지, 청소년 및 청년 교육,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항은 가족교육에 대한 추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항은 보육센터와 가족보육 아동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네 번째 항은 장애아동이나 위기 혹은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지원과 젊은 성인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는 이 법률의 제1장 일반 규정 제7조에 정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아동은 14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청년은 27세 미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¹⁷⁾.

독일의 법률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포괄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애주기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청년 연령을 독립적으로 구성해 연령 중복 문제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정책대상 연령은 0세가 아닌 12세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청(소)년전략(Jugendstrategie 2015-2018)에서 이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외에 다른 아동, 청소년, 청년을 다루는 법률에서도 국제법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연령 규정을 하고 있어 연령 정의에 있어서 일관성을 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핀란드의 「청(소)년법(Nuorisolaki)」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법률은 핀란드에서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가장 최근 2006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http://www.finlex.fi/fi/laki/>). 핀란드의 「청(소)년법」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사항으로 이 법의 목적과 정의를 담고 있다. 제2장은 국가의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3장은 지방정부의 정책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중앙정부의 기금과 예산, 재정에 대한 사항을, 제5장과 제6장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원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제1항에서 제시한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의식과 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데 두고 있다. 제1장 제2조정의에서 정책대상에 대한 정의는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¹⁸⁾.

마지막으로 일본의 아동·청년(子ども・若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10년으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平成21年法律第71号)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주로 10대 중심으로 청소년(青少年)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정책 대상을 0세부터 30세까지로 확정하고 주로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애주기적인 접근을 채택하였다.

17) 원문을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Im Sinne dieses Buches ist 1. Kind, wer noch nicht 14 Jahre alt ist, soweit nicht die Absätze 2 bis 4 etwas anderes bestimmen, 2. Jugendlicher, wer 14, aber noch nicht 18 Jahre alt ist, 3. junger Volljähriger, wer 18, aber noch nicht 27 Jahre alt ist, 4. junger Mensch, wer noch nicht 27 Jahre alt ist.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 검색일: 2016년 10월 21일 검색)

18) 원문을 교육문화부(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Määritelmät, Tässä laissa tarkoitetaan: 1) nuorilla alle 29-vuotiaita.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2006/20060072> 검색일: 2016년 10월 21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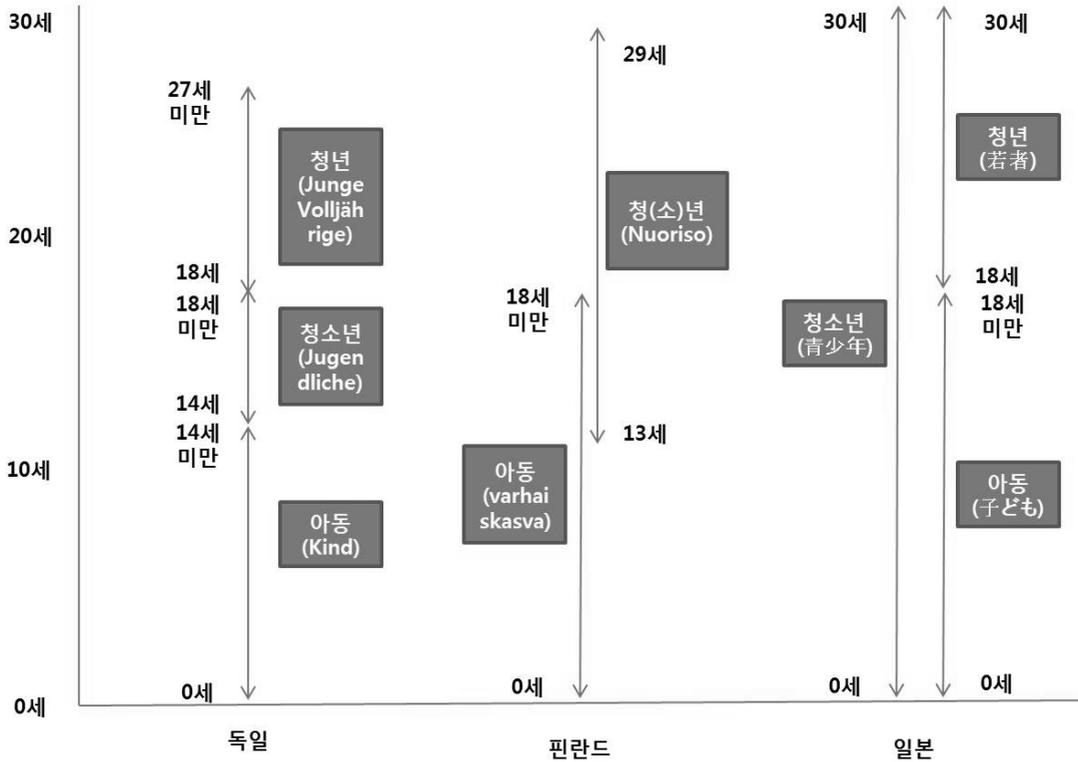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아동과 청년육성지원정책(子ども・若者育成支援施策)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제4장에서는 정책 추진체제와 관련하여 아동과 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제1장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육성과 원활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기본이념은 (1) 아동과 청년의 자립, (2)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차별 금지, (3) 좋은 가정 환경 구축, (4) 좋은 생활 조성, (5)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정책 추진, (6) 교육, 복지, 보건, 의료, 보호, 고용 등 각 분야 연구결과 종합, (7)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년에 지원 등 총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대상인 아동 및 청년에 대한 규정은 법률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에서 정책대상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¹⁹⁾. 이에 따르면 아동은 영유아기, 학동기 및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유아기는 의무교육 연령까지 이르는 자이며 학동기는 초등학생인 자이고 사춘기는 중학생부터 대략 18세까지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은 사춘기를 거쳐 청년기에 있는 사람으로 대략 18세부터 30세 미만까지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정책사업 중에 40세 미만까지 포스트 청년기에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 핀란드, 일본의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법률과 정책 대상 연령 정의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3개국 모두 하한 연령은 0세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상한 연령은 20대 후반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다.

19) 일본 내각부(内閣府)의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子ども・若者等°子ども：乳幼児期，学童期及び思春期の者°若者：思春期，青年期の者°施策によっては，40歳未満までのポスト青年期の者も対象とします°青少年：乳幼児期から青年期までの者°なお，乳幼児期からポスト青年期までを広く支援対象とするということを明確にするため，「青少年」に代えて「子ども・若者」という言葉を用いています°※乳幼児期は，義務教育年齢に達するまでの者，※学童期は，小学生の者，※思春期は，中学生からおおむね18歳までの者，※思春期の者は，子どもから若者への移行期として，施策により，子ども，若者それぞれに該当する場合があります°※青年期は，おおむね18歳からおおむね30歳未満までの者，※ポスト青年期は，青年期を過ぎ，大学等において社会の各分野を支え，発展させていく資質・能力を養う努力を続けている者や円滑な社会生活を営む上で困難を有する，40歳未満の者(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pdf, 검색일: 2016년 10월 21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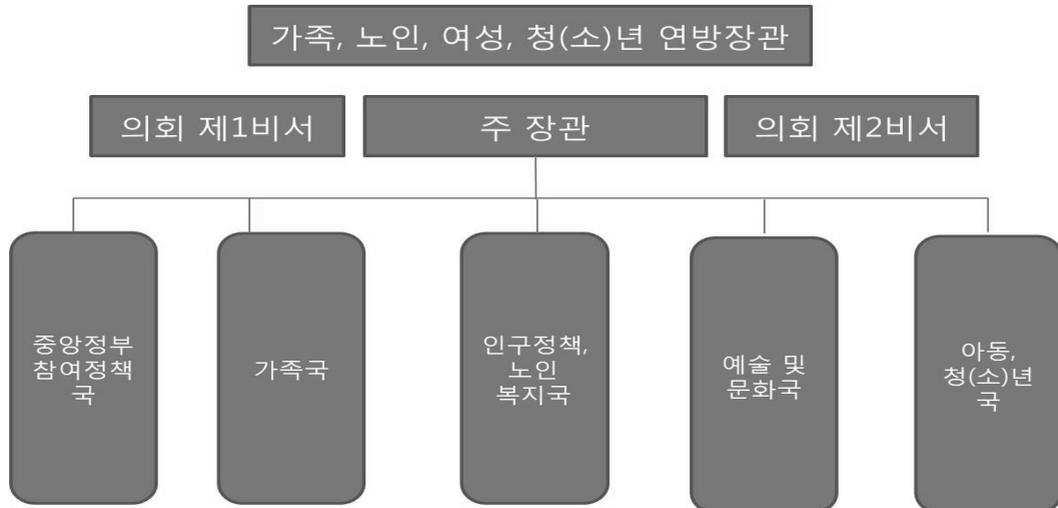
* 주: 독일의 경우 법령은 0세부터 아동을 정의하고 있지만 독일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정책대상연령은 12세에서 27세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림 IV-8】 독일, 핀란드, 일본의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연령 규정 비교

독일은 명확하게 대상 간 중복을 없애고 독립적으로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서 핀란드는 국제연합의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을 정의하는 한편, 청소년과 청년을 13세부터 시작해 13세부터 18세 미만은 정의상 연령이 중복되고 있다. 일본 역시 핀란드와 유사하게 아동, 청소년, 청년을 중복해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아동과 청년을 모두 포함하여 0세에서 30세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핀란드처럼 아동과 청년의 중복을 없애고 아동은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청년은 18세 이상에서 30세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독일과 핀란드는 정책 대상 연령을 법률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본은 법률에 정의하지 않고 정책기본계획에 수록하고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

(2) 정부조직: 독일, 핀란드, 일본

이 절에서는 3개국의 정부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에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는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이다. 이는 각 국가의 중앙부처 중에서 대상 중심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데 아동과 노인 정책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하고 여성가족부가 청년 정책을 주관할 경우 독일과 유사한 부처 형태를 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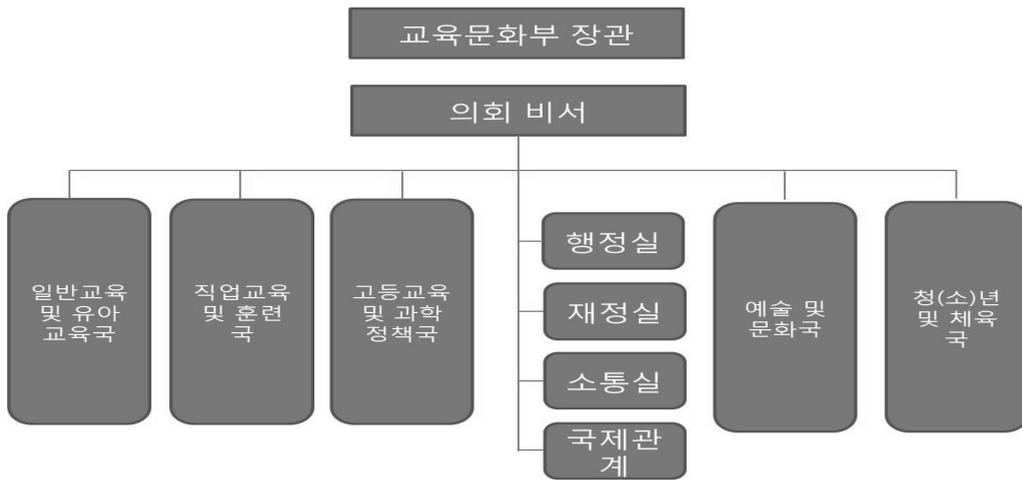
* 출처: 독일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홈페이지(<https://www.bmfsfj.de/>)

【그림 IV-9】 독일 청소년 및 청년 담당 중앙부처 조직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소년 및 청년을 담당하는 독일연방의 중앙부처는 문화예술 업무와 복지업무도 일부 맡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인 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연방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5개의 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영역별로 가족, 노인, 예술 및 문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주관하는 부서로 구분된다.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정책 대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연방부처는 노동사회부, 외무부, 교육 및 연구부, 식품, 농업 및 소비자보호부, 보건부, 내무부, 법무부,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안전부, 운송 및 건설, 도시업무부, 국방부,

경제기술부, 경제협력개발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독일연방정부의 정책전달체계는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밑에 아동 및 청(소)년국이 있고 아동 및 청(소)년국은 청소년 및 청년복지과와 아동관리과로 구분된다. 지방정부는 각 주마다 청소년청을 두고 있어 지방정부 역시 명확한 정책추진체계와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다.



* 출처: 핀란드 교육문화부 홈페이지(<http://www.minedu.fi/>)

【그림 IV-10】 핀란드 청소년 및 청년 담당 중앙부처 조직도

이어서 핀란드의 정부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자. 핀란드에서 아동과 청소년, 청년 정책사업을 맡고 있는 중앙부처는 교육문화부(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다. 교육문화부는 일반교육과 유아교육국(Yleissivistävän koulutuksen ja varhaiskasvatuksen osasto), 직업교육과 훈련국(Ammatillisen koulutuksen osasto), 고등교육과 과학정책국(Korkeakoulu- ja tiedepolitiikan osasto), 예술과문화정책국(Kulttuuri- ja taidepolitiikan osasto), 청(소)년과 스포츠정책국(Nuoriso- ja liikuntapolitiikan osasto)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정책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최근 추진 중인 청년 정책 사업도 수행 중이라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청(소)년과 스포츠정책국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체

육관광부가 핀란드에서는 교육문화부의 국 단위로 존재하며 문화예술과 체육이 구분되고 체육 관련 사업은 아동, 청소년,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정책 추진 시에 존재했던 체육청소년부가 교육문화부의 하위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과 스포츠정책국은 총괄부서인 전략조정과(Strategia-ja ohjausryhmä)와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정책과(Nuorisotyön ja - politiikan vastuualue), 스포츠과(Liikunnan vastuualue)로 나누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내각부(內閣府)에서 아동, 청소년 및 청년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일본의 내각부는 입헌군주제와 내각책임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각 중앙부처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진 부처라는 점에서 부처 위의 부처라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내각부는 당초 경제안정본부에서 출발해 1940년대 우리나라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1950년대 이후 기획재정부의 경제기획원의 역할도 수행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내각부는 오키나와개발청의 정책 업무까지 포괄해 중앙 부처들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일본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내각부 산하에 있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이다.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회의, 현재 청년기본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가 통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의 추진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지명하는 본부장과 부분부장이 참여하며 이 외에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하는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 총무대신, 법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률에는 이외에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 중에서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직 형태는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들은 독일, 핀란드, 일본 모두 매우 포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서 맡고 있다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각 국가에서 젊은 세대를 다루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나라처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나누거나 별도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청소년, 청년을 포괄하는 접근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본계획 및 정책사업 : 핀란드, 독일, 일본

이 절에서는 3개 국가들의 청소년 및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정책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는 청소년 및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계획(KJP: Kinder- und Jugendplan)과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한 청(소)년전략(Jugendstrategie 2015-2018)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청(소)년전략을 4년에 한 번씩 수립해 제시하고 있는데 2011-2014년도에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청(소)년전략이 발표되었다. 2015-2018 청(소)년전략은 “아동 및 청(소)년 친화적인 사회를 위한 행동(Handeln für eine jugendgerechte Gesellschaft)”이라는 주제로 정책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서는 0세부터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전략에서 제시한 정책대상은 12세에서 27세로 다르다. 연령에 대한 규정은 법적 정의이고 실제로 정책 사업은 10대부터 출발해 20대 후반까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이 전략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은 효과적인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의 안전한 권리,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 청소년을 위한 시간과 장소 제공,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의 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 제시하고 대표적인 사업은 청(소)년을 강하게(JUGEND STÄRKEN)! 프로젝트가 있다. 청(소)년을 강하게(JUGEND STÄRKEN)!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유럽연합 사회기금(ESF)과 함께 자체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 전역에 청소년을 돕는 지원기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사회, 교육,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위 프로그램으로 역량센터(Competence Agencies), 학교거부-두 번째 기회(Schulverweigerung-Die 2.Chance), 지역활동(Aktiv in der Region)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역량센터는 고용이나 직업교육 같은 기존 시스템에 통합되거나 재통합하여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지원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평생학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케이스 매니저(Case Manager)는 지역별 청소년의 개별적인 상황에 기초해 지원방안과 절차를 계획하고 지역별 지원수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성인기 이행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학교거부-두 번째 기회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교 거부에서 벗어나 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지원지침(Förderleitlinien)을 제정하여 목적, 대상, 법적 근거, 지원금의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량지원센터의 케이스 매니저가

학업중단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학교와 학부모 지원을 포함한 개인상황에 맞는 개인 복귀 계획을 단계적으로 학생과 함께 작성하고 이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활동(Aktiv in der Region)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원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구조를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현지 지원의 맞춤형 종합시스템으로 지역청(소)년위원회는 지역기업을 포함한 학교, 청소년 기관, 직업센터, 연방 고용 지원센터,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이민자 서비스(Jugendmigrationsdienste) 프로그램은 12세~27세 사이의 이민자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케이스 매니저가 맞춤형으로 성인기 여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핀란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적인 과제를 생활관리, 무차별, 그리고 참여와 사회통합 등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정책 방향은 “(1) 아동과 젊은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아동과 젊은이가 문화, 여가 그리고 신체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다, (3) 젊은이가 취업을 하고 그들의 고용률을 향상시킨다, (4) 차별 없는 상황을 실현한다, (5)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한다, (6) 젊은이가 독립적으로 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7) 배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과 젊은이가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8) 아동과 젊은이의 웰빙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갖춘다, (9) 아동과 젊은이와 가족이 높은 수준의 역량과 좋은 상호관계를 갖도록 관리 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청(소)년 보장제(NuortenYhteiskuntatakuu)이다. 29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보장은 청소년들 학습기회(Nuorten työpajat, youth workshop activities)와 자원봉사활동(Etsivä nuorisotyö),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지원(Monialainen yhteistyö) 등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문화부가 업무를 총괄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보건부와 노동부가 함께 청(소)년 보장제를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의 청년보장제도는 1990년부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5년 도입된 모델이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social guarantee)이며 2013년에 청년보장제로 전환되었다. 정책대상은 25세 미만인 유럽연합과는 달리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실업자에게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학업 혹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개별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개별 계획이 작성되면 해당 청년의 수요와 지원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일자리 또는 훈련 기회가 제공된다. 핀란드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PES) 중에서 원스톱가이던스센터(on-stop guidance center)는 교육, 고용, 건강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한 장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youth)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청년 보장제 전담 기구로 일원화되었다. 현재 핀란드에 40개 정도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센터를 방문하면 노동청 전문가, 보건상담 전문가, 사회 복지부 직원, 간호 전문가 등 전문가 들이 모여 상담을 진행하고 논의를 거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보장제 예산은 2015년 중도성향의 중앙당이 승리하면서 공공지출 축소를 내걸면서 연간 7,000만 유로(한화 약 897억 원)이던 것이 1,000만 유로(124억 원)로 축소되었다. 현재 핀란드에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basic income)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일본의 아동 및 청소년,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새롭게 수립된 「아동·청년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0대 청소년 중심의 계획을 수립해 오다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는 미래 세대 전반을 대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보고서로 「아동·청년비전」을 준비해 왔다(김정숙, 김기현, 황세영, 2105).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이념은 5가지이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에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념이며 두 번째 이념은 성인들과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대상별로 정책 이념을 밝히고 있는데 우선 일반 아동과 청소년, 청년은 자립과 성장, 발달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마지막으로 성인들의 경우 미래세대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갖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 V 장



정 책 제 언

1. 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들의
정책 수요 및 정책 방향
2.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3.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제 V 장 정 책 제 언²⁰⁾

1. 실태조사를 통해 본 청년들의 정책 수요 및 정책 방향

이 장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책제언은 본 연구원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로부터 위임받아 처음으로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2016) 결과에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참고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절에서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2016)를 통해 본 청년들의 정책 수요 및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는 연령 정의에 관한 부분에서 출발해 고용, 교육, 주거 등 청년정책 핵심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년정책 대상

연령으로 이루어진 정책 대상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현행 법률에서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15세에서 29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시에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정책 대상 정의를 위임한 것은 정책대상의 중복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은 정책대상 연령을 각각 18세 미만과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법률로 정책대상을 정의할 경우 15세에서 18세미만은 법적으로 아동이자, 청소년, 청년인 중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법(법률 제912호)」에서 출발하는데 1961년에 제정된 법률의 아동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18세 미만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동이라는

20)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현과 괴리감이 존재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UNCR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부터 발표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에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이 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이러한 기준을 「아동복지법」이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 이어서 제정된 법률이 「청소년기본법」이다.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고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 중 9세에서 18세미만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시기에 통합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 정책 대상의 중복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동권리협약에 따르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해서 뚜렷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 다만, 법적 용어 역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례적이고 정서적인 용법과 너무나 상이해서는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아동을 10대 미만과 초등학생으로 생각하며 청소년을 10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청년기본법안이 10대 후반에서 30대 이상으로 청년을 정의한다면 이 역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2016)에서는 15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 청년에 대한 연령 규정을 조사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은 5.2세에서 11.5세였고 청소년은 12.6세에서 18.4세였다. 청년은 19.3세에서 29.5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령 정의는 성별 간에, 지역 간에, 연령 집단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초등학생, 중·고학생, 대학생을 구분 짓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연령정의에 대한 관례적이고 정서적인 용법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청년기본법안에서 제안한 하한연령인 19세는 거의 일치하지만 상한연령인 34세나 39세, 40세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의 상한연령은 24세인데 응답자들은 18세 정도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며 19세에서 2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아동		청소년		청년		
		하한 (평균)	상한 (평균)	하한 (평균)	상한 (평균)	하한 (평균)	상한 (평균)	
전 체	2,534	5.2	11.5	12.6	18.4	19.3	29.5	
성별	남자	1,315	5.2	11.6	12.7	18.4	19.4	29.7
	여자	1,219	5.2	11.5	12.6	18.4	19.3	29.3
연령	만15~18세	363	5.2	11.5	12.7	18.4	19.4	29.5
	만19~29세	1,073	5.2	11.4	12.5	18.4	19.4	29.2
	만30~39세	1,098	5.1	11.6	12.7	18.4	19.3	29.8
지역	서울	527	5.2	11.9	13.0	18.3	19.2	29.2
	인천/경기	794	5.2	11.6	12.6	18.4	19.2	28.6
	대전/충청/세종/강원	328	4.7	11.1	12.3	18.5	19.5	30.4
	광주/전라/제주	267	4.4	11.2	12.4	18.4	19.4	30.7
	부산/울산/경남	382	5.7	11.5	12.6	18.6	19.6	29.7
	대구/경북	237	5.6	11.3	12.7	18.5	19.5	30.4
학력	중/고등학생	342	5.2	11.5	12.7	18.4	19.4	29.5
	대학생/대학원생	458	5.2	11.5	12.6	18.5	19.4	29.1
	고졸이하	799	5.2	11.6	12.7	18.3	19.2	29.1
	대졸이상	935	5.1	11.5	12.6	18.5	19.4	30.0
주거 형태	동거	1,525	5.2	11.5	12.6	18.4	19.3	29.4
	비동거/독립	1,009	5.1	11.6	12.6	18.4	19.3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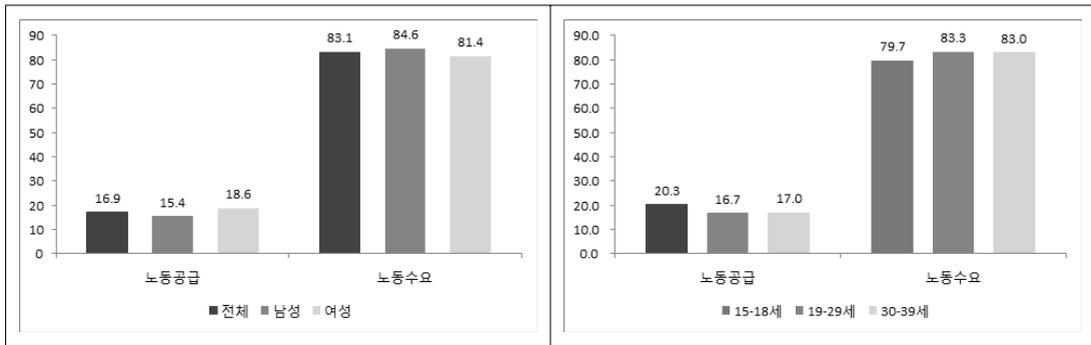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이 정도로 합의 수준이 높다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정의는 국제협약을 따르는 것이므로 별도로 하더라도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각각 12세에서 18세, 19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각 국가에서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유연하게 대상을 정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10대와 20대를 분리해 법률을 제정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행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청년기본법」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사례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해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정책영역별 정책수요 및 정책방향

(1) 고용정책

이 절에서는 정책영역별로 15세에서 39세들의 응답결과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 고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동 공급(개인, 교육)과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의 정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정책 분야인지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자.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포함하는 고용은 학교와 일자리가 만나는 과정으로 정책적으로 볼 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이를 원활하게 만드는 정책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번 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은 노동수요 정책이 노동공급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이나 연령별로 보면, 응답 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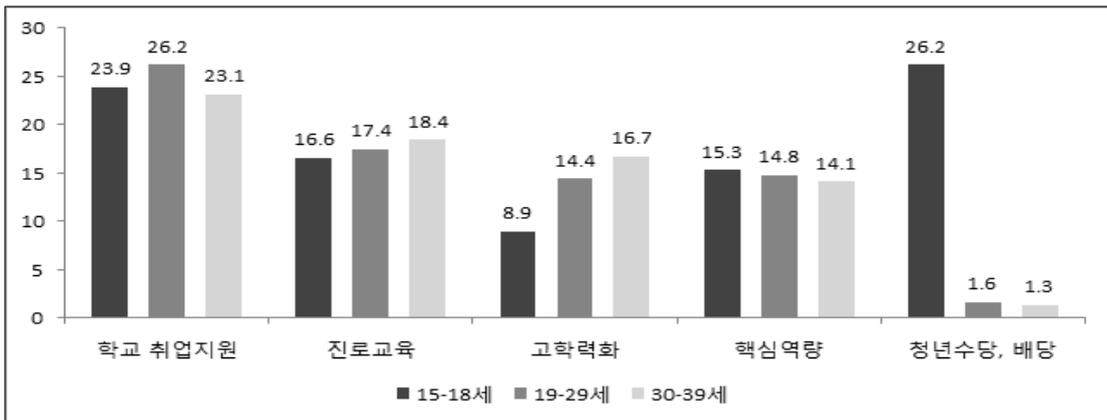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중, 고등학생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그림 V-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중요한 정책분야 응답 결과(%)

이어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을 구분해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사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가 24.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가 17.9%,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가 15.5%, 청년들의 능력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가 14.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큰 편차가 존재한다. 15세에서 18세 응답자들은 현재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수당이나 배당을 비롯해 청년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정책 사업에 대한 응답 결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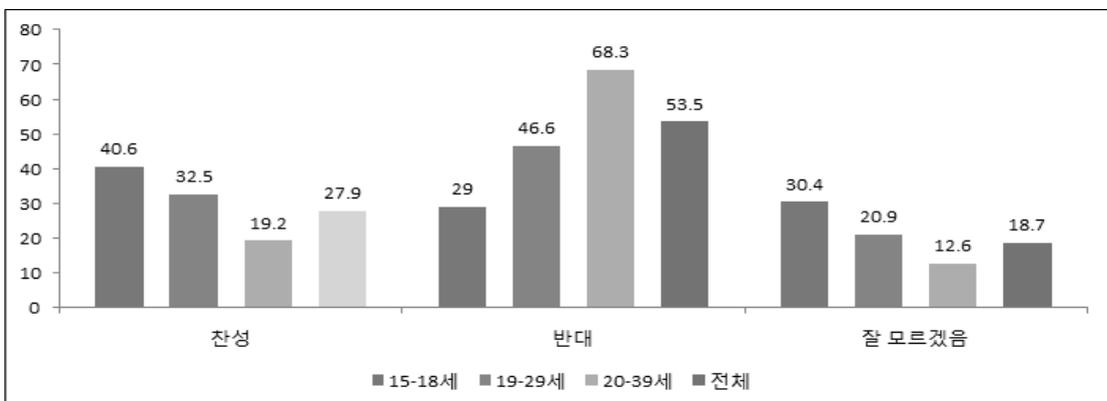
26.2%로 가장 높았다. 다만, 학생인 경우 응답자에서 제외해 21명이 응답한 결과여서 결과가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19세부터 39세 응답자들 중에서 청년 수당과 배당, 직접 보조금을 청년에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세에서 29세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았고 30세에서 39세 응답자들은 진로교육의 활성화나 핵심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중, 고등학생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그림 V-2】 노동공급 관련 상위 4개 청년정책사업 연령별 응답 결과(%)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중, 고등학생 포함한 결과임.

【그림 V-3】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응답 결과(%)

미취업 청년에게 급여방식으로 수당이나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자. 이는 중, 고등학생들도 응답하게 했으므로 15-18세 연령집단의 대표성을 좀 더 갖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39세 응답자들은 청년수당이나 배당에 대해 27.9%가 찬성의견을, 53.5%가 반대의견을 제시해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15-18세는 반대보다는 찬성이 높았고 특히 30-39세 응답자들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으로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 응답 결과가 많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급여방식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참조한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지역에서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일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의미하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가 늘어나면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추진 중이던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를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에 적용해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2).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제시한 청년보장제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신규졸업자이거나 실업자인 상태에서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이나 창업을 연계시켜주거나 교육이나 직업훈련, 역량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원활한 이행을 돕는 제도이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 유럽연합에서는 각 회원국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 사업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양하게 추진 중인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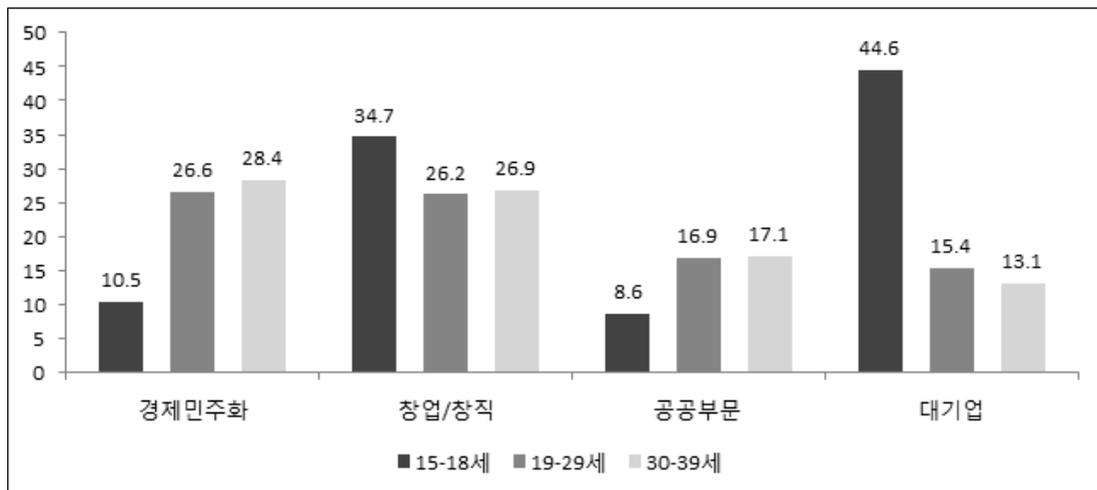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추진 주체(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지원방식(청년직접지원 수당, 급여 대 기업, 훈련기관, 학교 보조금), 지원영역(생활비 대 직업훈련비)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문제이며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수행 중인 청년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청년보장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며 서울시처럼 청년에게 수당(youth allowance)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일랜드와 프랑스 등이 있다.

이어서 노동수요측면에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정책 사업은 어떤 것일까? 전체 응답결과를 보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가 27.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청년 창업과 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가 26.6%,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16.9%,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가 14.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5-18세 응답자들은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44.6%)했고 청년 창업과 창직 지원이 34.7%로 뒤를 이었다. 반면, 19세부터 29세나 30-39세 응답자들은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어서 창업 및 창직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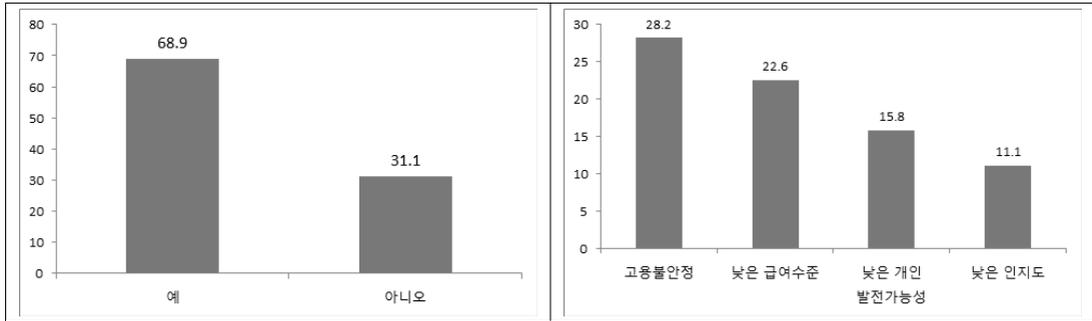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중, 고등학생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그림 V-4】 노동수요 관련 상위 4개 청년정책사업 연령별 응답 결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 결과, 15-39세 청년들 중에서 70% 가까이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불안정이 28.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낮은 급여수준(22.6%), 낮은 개인의 발전가능성(15.8%), 낮은 사회적 인지도(11.1%)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의 고용이 안정되고 급여 수준이 높아진다면 청년들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충분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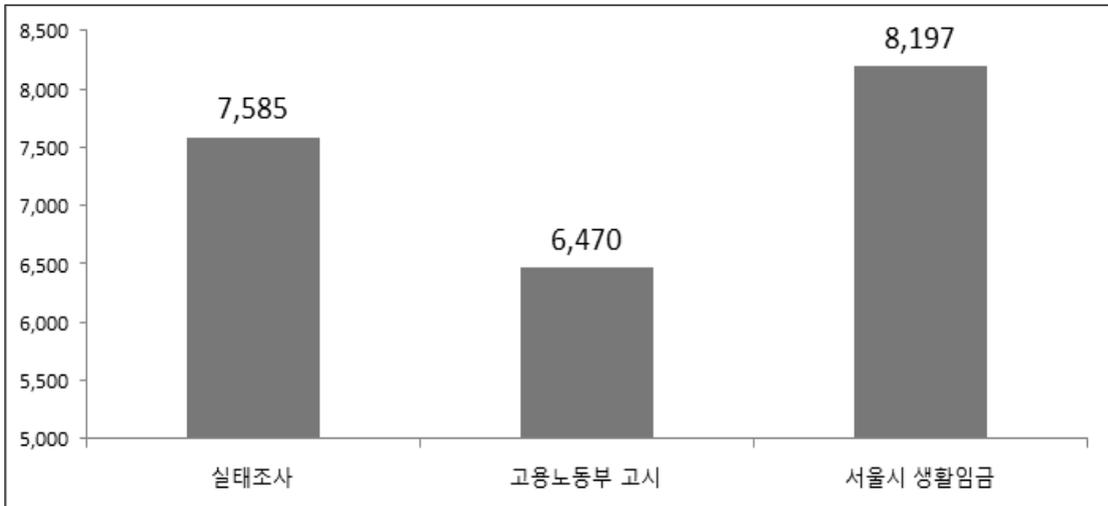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V-5】 중소기업 취업 의사 여부 및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

종합해 보면, 청년들의 경우 2012년 정치적인 화두로 등장했던 경제민주화가 현재로 매우 시급하며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번 조사 결과는 극소수에 대한 지원이고 직접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창업이나 창직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반응도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7월에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사용자위원측이 제시한 인상률 7.3%를 최종안으로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15명이 찬성해 최저임금안으로 의결하였다(최저임금위원회, 2016).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8월에 고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7호)²¹⁾. 15세에서 39세 응답결과를 보면, 2017년 적정 최저 임금은 평균 7,585원으로 확정 고시된 금액보다 1,000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등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 등에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000원에서 8,000원에 이르는 생활임금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도는 시청에 근무하거나 민간위탁한 직원에 적용 중이며 시에서 투자 및 출연한 기관에 직접 고용한 인력,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서울특별시, 2016).

21)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시간급은 6,470원이며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휴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1,353,230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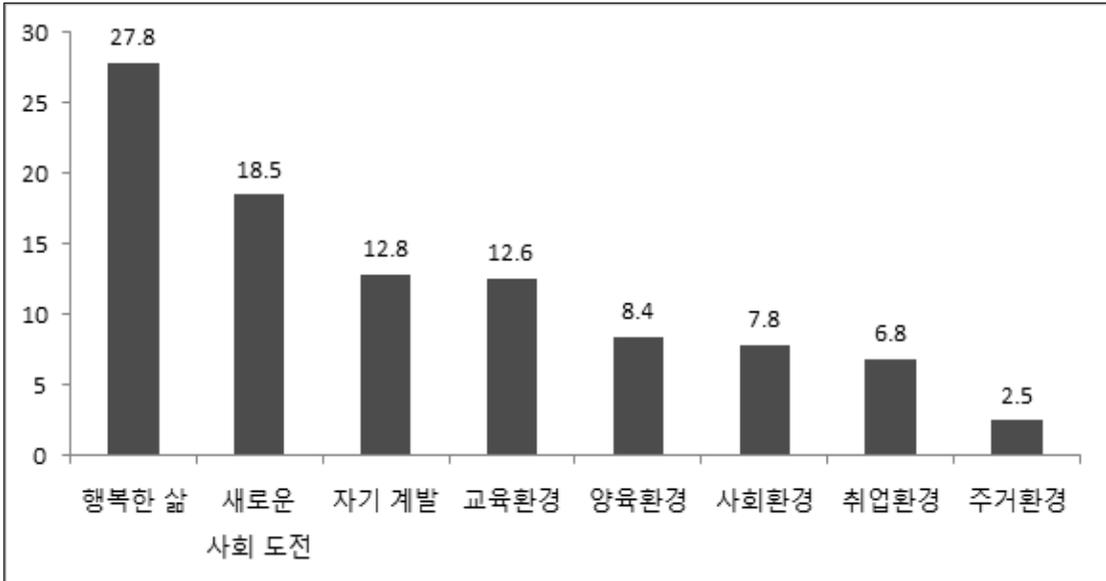
* 자료: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2016a), 서울특별시(2016)

【그림 V-6】 2017년 걱정 최저임금 응답 결과와 고용노동부 고시, 서울시 생활임금 비교(원)

(2) 교육정책

유럽연합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현상(Exodus)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특별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원인을 보면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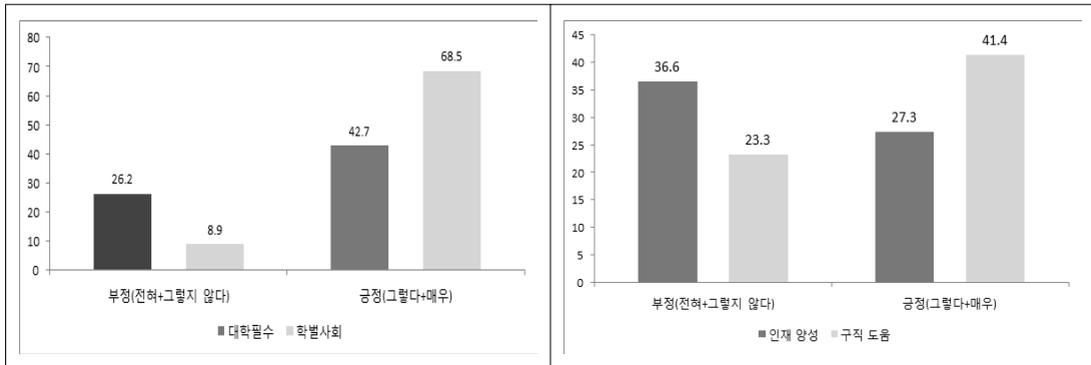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해외이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번 실태조사에서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15-39세 청년들은 10명 중 2명(22.2%)뿐이었다. 이 경우에 왜 해외이주를 고려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를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보면, 행복한 삶(27.8%),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도전(18.5%), 자기에 대한 계발(12.8%) 등 개인적인 이유가 응답비중이 높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중에서 어떤 것이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있다. 교육받기가 힘들어서(교육환경), 양육하기가 힘들어서(양육환경), 빈부 격차가 심해서(사회환경), 취업이 어려워(취업환경), 집값이 너무 비싸서(주거환경) 등 다양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이었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V-7】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응답 결과(%)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한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학을 나오는 것은 필수다”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42.7%)이 부정적인 응답(26.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은 학벌사회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15-39세 응답자들은 68.5%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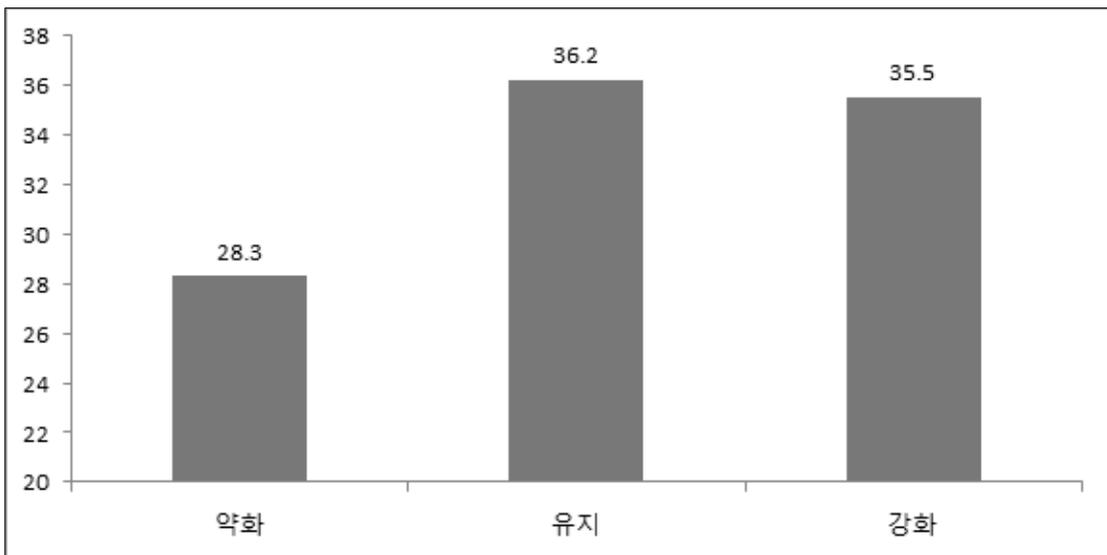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V-8】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

이어서 대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자. 15-39세 청년들 중에서 36.6%는 대학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긍정적인 응답은 27.3%에 그쳐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 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이 4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는 실패했으나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어서 대학의 기능이 인재양성인지, 취업지원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결과이다.

대학 진학 중심의 입시경쟁은 우리 사회 교육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관련 향후 2025년에 입시경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자. 15-39세 청년들은 입시경쟁이 약화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71.7%로 나타났다. 입시경쟁 구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인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대학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초유의 상황이 2018년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입시경쟁이 약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과 배치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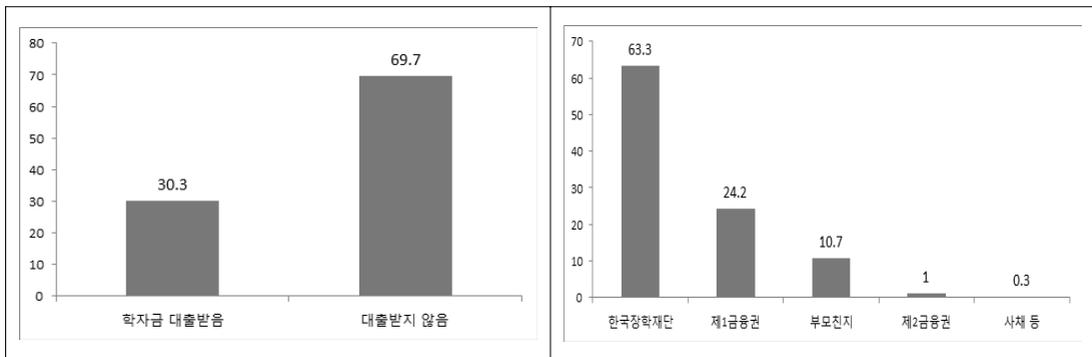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V-9】 우리나라 입시경쟁에 대한 전망(2015년) 응답 결과(%)

이처럼 부정적으로 입시경쟁을 청년들이 전망하는 이유는 현재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기현 외, 2015). 이러한 결과는 대학 진학 중심과 입시 위주의 경쟁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 중 대다수가 대학생이고 대학을 졸업한 현실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이다. 대학 등록금은 2010년 물가를 적용해 보면 1980년 사립대 67만원, 국립대 34만원 수준에서 2011년 각각 753만원, 419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김기현, 2015a). 이에 따라 과도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²²⁾ 중이며 교육부는 2013년과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실제 등록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큰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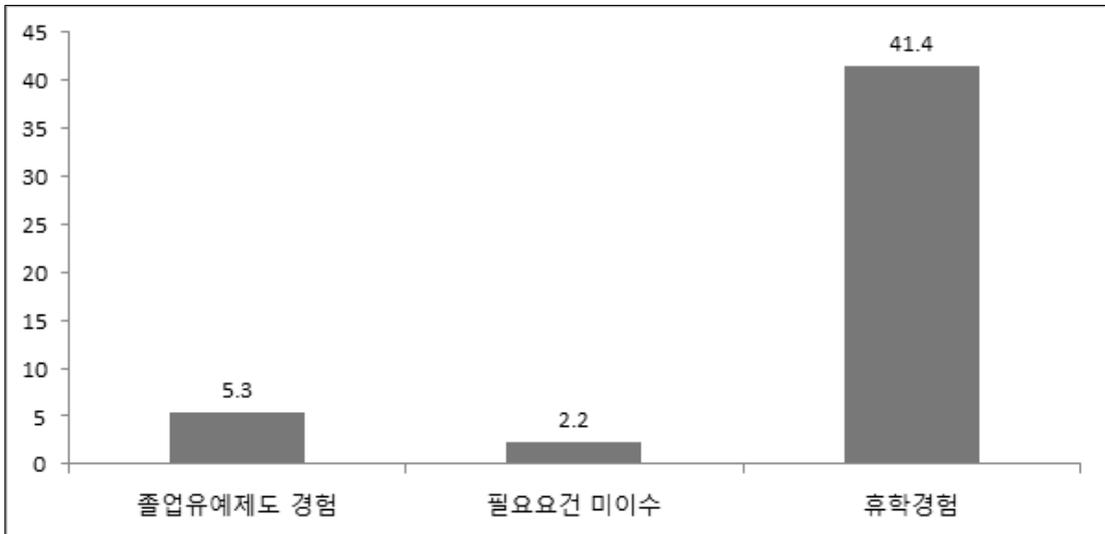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V-10】 학자금 대출 여부 및 대출 출처 응답 결과(%)

22) 신설된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16년 10월 26일)

이와 관련 이번 조사에서 15-39세 청년들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중퇴, 휴학을 한 경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응답자 중 30.3%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1금융권을 비롯하여 소수이기는 하지만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을 통해 학자금을 마련한 사례로 발견되고 있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잔액은 2009년 11,609억 원에서 2014년 40,7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연체인원은 같은 기간 10,770명에서 42,792명으로 대출이 늘어난 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현, 2015c).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제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과는 달리 이자 납부 부담이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V-11】 대학시절 휴학 및 졸업유예 경험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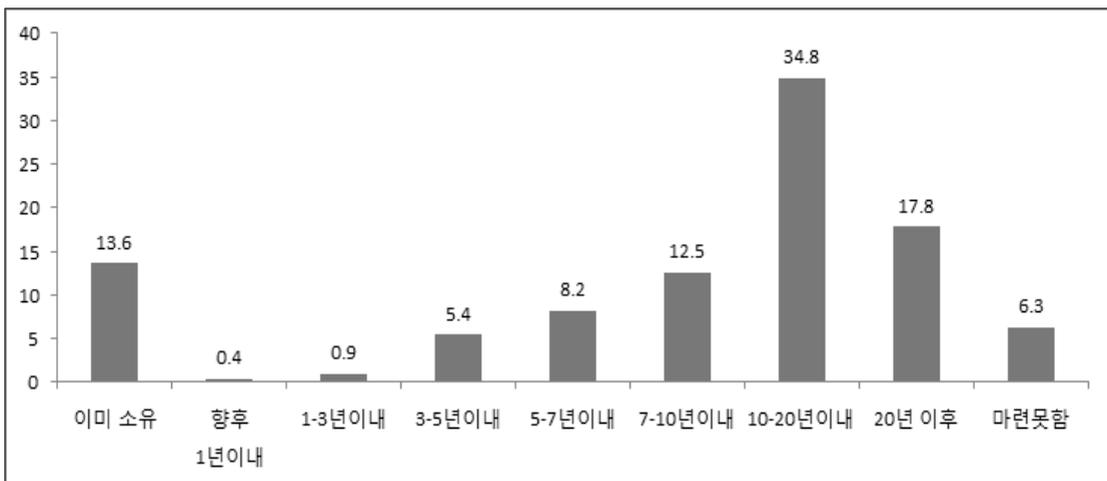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졸업 유예 현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 대학 졸업 유예 학생들은 졸업유예제도가 있는 대학에서 5.3%, 별도의 제도 없이 본인이 대학 졸업을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추지 않아 졸업을 유예한 경우 22%로 총 75%가 졸업유예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졸업유예는 아니지만 휴학을 통해 졸업을 연장하는 사례는 41.4%로 나타나고 있다.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목적으로 휴학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경제인구활동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자 휴학 경험은 2008년 5월 38.2%에서 2016년 5월 44.6%로 늘어 졸업 유예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통계청, 2016).

졸업유예 현상은 대학 진학 시 재수생활을 통한 유예 현상과 졸업 후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취업유예 현상,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과 맞물려 총체적으로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김기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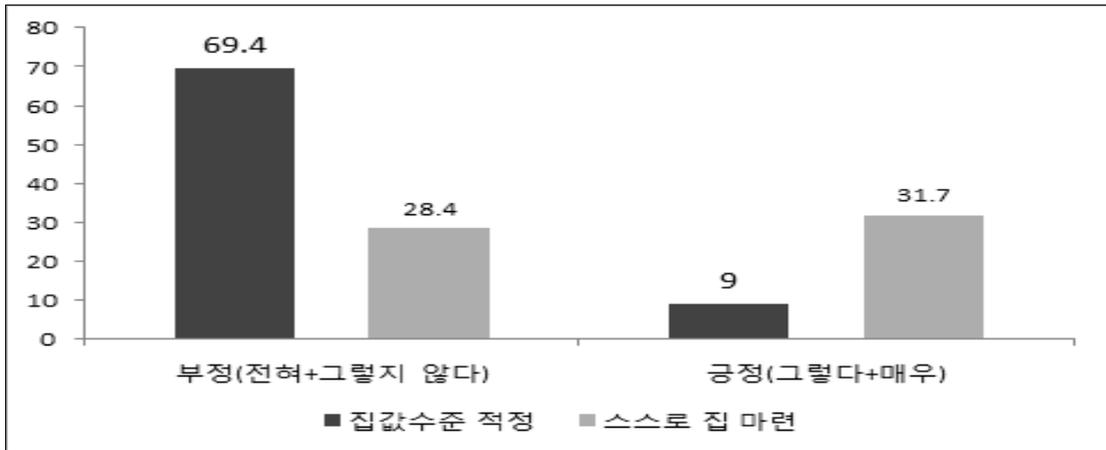
(3) 주거정책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고용문제만큼이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너무나 높은 집값 때문에 자립할 시기에 독립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5-39세 청년들에게 현재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몇 년 안에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장만할 것 같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20년 이후에나 장만할 것 같다는 의견이 17.8%로 뒤를 이었다. 아예 집을 장만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답변도 6.3%였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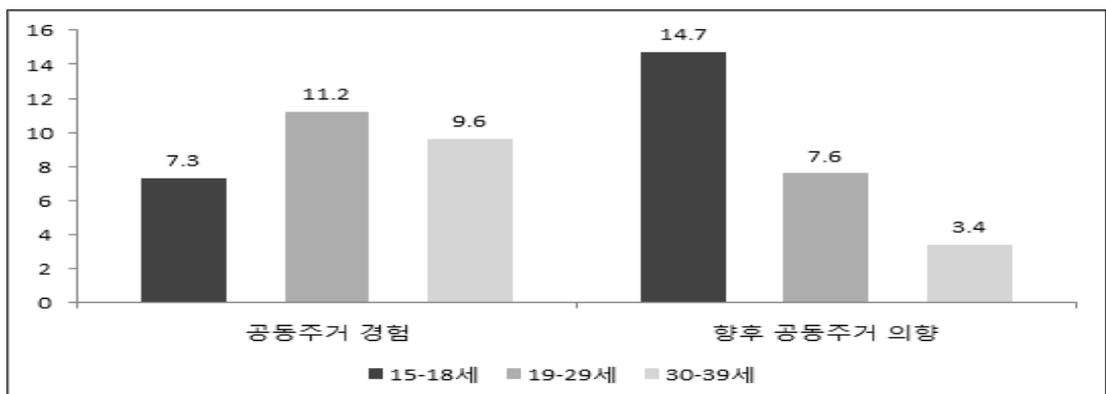
【그림 V-12】 현재 주거 현황 및 주거 소유 전망 응답 결과(%)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V-13] 현재 집값 수준 걱정여부 및 스스로 집 마련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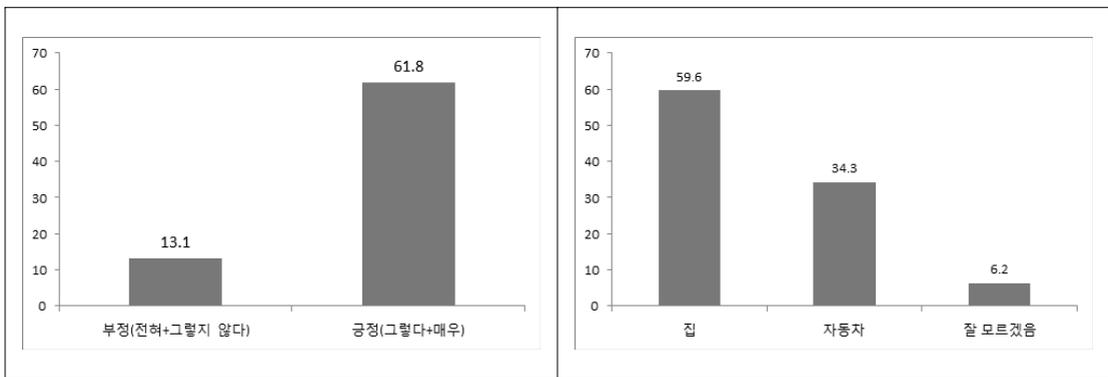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스스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31.7%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비슷한 수준인 28.4%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스스로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집값 수준으로 15-39세 청년들 중 70% 가까이가 현재 집값이 걱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안정과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V-14] 연령별 현재 공동주거 현황 및 향후 의향 응답 결과(%)

현재 청년 주거 정책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공동주거(share house)이다. 특히 세대간 상생과 관련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이번조사에서 현재 공동주거를 경험한 청년들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 공동주거로 생활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공동주거 경험을 보면, 15-39세 응답자 중에서 9.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동주거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공동주거에 대한 의향을 물어본 결과 7.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가 공동주거 경험이 가장 많지만 15-18세가 공동주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향후 공동주거를 통한 주택공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그림 V-15】 자기 명의의 집과 집과 자동차 중 선택 응답 결과(%)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청년들이 과거처럼 자기 집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15-39세 청년들 중에서 자기 명의의 집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였다. 그런데 질문을 달리하여 동일한 자금이 있을 때 등가로 집과 자동차 중 하나를 구매해 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30% 이상이 집 대신 자동차를 선택하고 있어 주거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장기 임대형 주택 등을 보급해 자기 집이나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2.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이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로부터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고 청년들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정부조직이나 전달체계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델파이조사의 전문가 패널은 청소년 및 청년 분야 전문가들로 영역별로 참여 및 활동, 고용, 교육, 생활로 구분하고 총 16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청년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실시할 목적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된 시점인 2016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V-2 청년정책에 대한 델파이 전문가 패널 현황(16명)

구분	소속	직위	
청소년 및 청년 분야	0000대학교	교수	
	00대학교	교수	
	0000000연구원	부연구위원	
	00시청	주무관	
	참여·활동	000000개발원	선임연구위원
		0000정보원	부연구위원
		000000개발원	선임연구위원
		0000000연구원	부연구위원
		0000000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용	00대학교	조교수
		0000000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000000연구원	부연구위원
		0000000연구원	부연구위원
		0000000연구원	부연구위원
	교육	0000000위원회	사무관
		0000000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000000연구원		부연구위원	
0000000연구원		부연구위원	
생활	0000000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000000연구원	부연구위원	

표 V-3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1차 델파이조사		2차 델파이조사	
1. 정책 대상 연령	1-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에 대한 의견	1. 정책 대상 연령	1-1. 아동 연령에 대한 의견
	1-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연령 변경에 대한 의견		1-2-1. 청소년 연령에 대한 의견
	1-3. 청년기본법안 청년연령에 대한 동의 및 의견		1-2-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연령 변경에 대한 의견
2. 정책 담당 부서	2-1. 적절한 청년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2. 정책 담당 부서	1-3-1. 청년 연령에 대한 의견
	2-2. 아동, 청소년, 청년을 통합한 생애주기적 접근과 통합적 관리에 대한 동의 및 의견		1-3-2. 청년기본법안 청년연령에 대한 동의
3.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유		3. 청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영역	2-1. 적절한 청년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2-2. 아동, 청소년, 청년을 통합한 생애주기적 접근과 통합적 관리에 대한 동의
4. 청년 삶에 대한 전망		4. 청년 고용 정책 사업	3-1.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청년 정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3-2. 청년 정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6. 청년 고용정책 사업	6-1. 청년 고용위기 해법		4-1. 청년 고용위기 해법
	6-2.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용위기 해법		4-2.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용위기 해법
	6-3.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위기 해법	4-3.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위기 해법	

1차 델파이조사는 총 6가지 영역에서 질문을 시도하였다. 먼저 정책대상 연령과 관련하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아동과 청소년, 청년 연령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현행 청소년기본법 연령 규정에 대한 변경의견과 신보라의원이 대표로 입법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의 연령 정의(19-39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두 번째로 이 조사에서는 청년정책 담당부서에 대해서 행정부처, 행정위원회 등 가장 적절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의견과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통합하여 생애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세 번째로 이 조사에서는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네 번째로 청년 삶에 대한 전망으로 2025년을 기준으로 혼인율, 출산율, 입시경쟁 및 청년 취업경쟁에 대한 전망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와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이어서 청년 정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와 특별히 청년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위기를 해결한 방법 중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정책을 구분해 질문하였다. 이 역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 포함된 질문 내용이었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응답 결과와 전체 응답 결과를 제시한 후 의견 수정 여부를 질문하였다. 1차 조사 내용에 포함되었던 청년 삶에 대한 전망과 청년 정책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문은 제외하였다.

표 V-4 델파이조사 타당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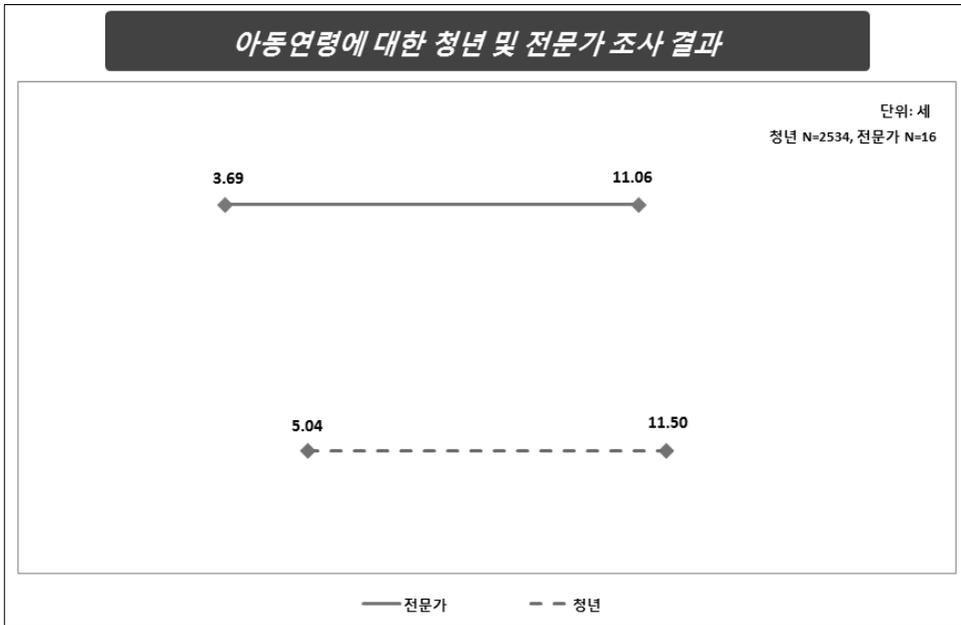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응답수	긍정 응답수	합의도	수렴도	CVR
청년기본법의 청년연령 동의	6.38	2.36	6	16	11	0.50	1.50	0.38
청년정책 전담 중앙부서 동의	8.50	1.27	8	16	16	0.75	1.00	1.00

이번 델파이조사에서 응답 결과가 얼마나 수렴되고 합의 수준이 높은지를 검증한 문항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에 대한 동의 정도와 청년정책 전담 부서에 대한 동의 정도였다. 2차 조사에서 두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합의도, 수렴도, CVR 측면에서 높게 나타나 추가적인 반복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및 시사점

이번 조사에서 실시한 설문 내용 중에서 먼저 정책대상 연령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연령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 연령은 3.69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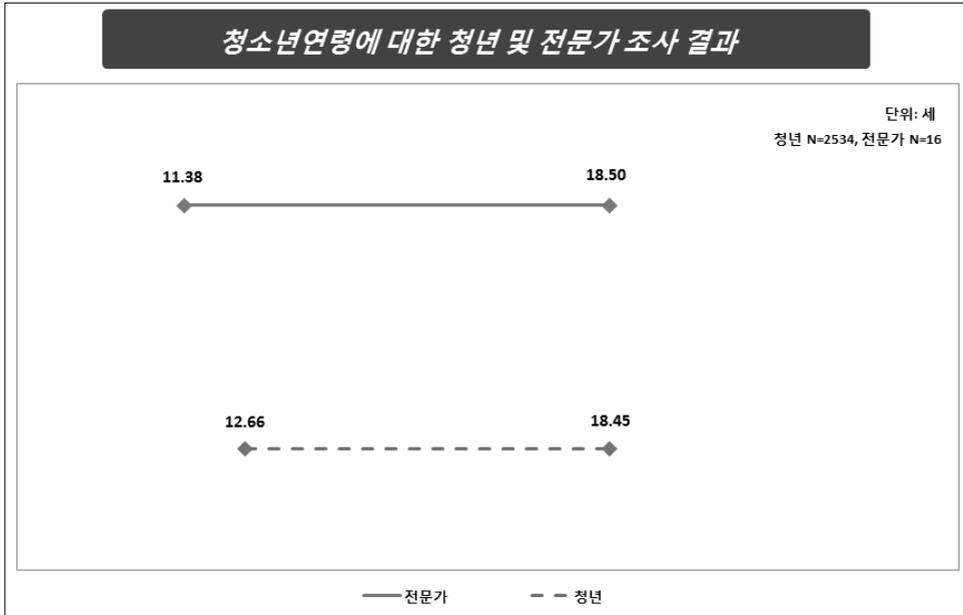
서 11.06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5-39세 2,534명의 응답자들이 답변한 결과는 5.04세에서 11.50세로 하한 연령은 1세가량 전문가 조사 결과가 높았으나 상한 연령은 11세에서 12세로 사이로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6년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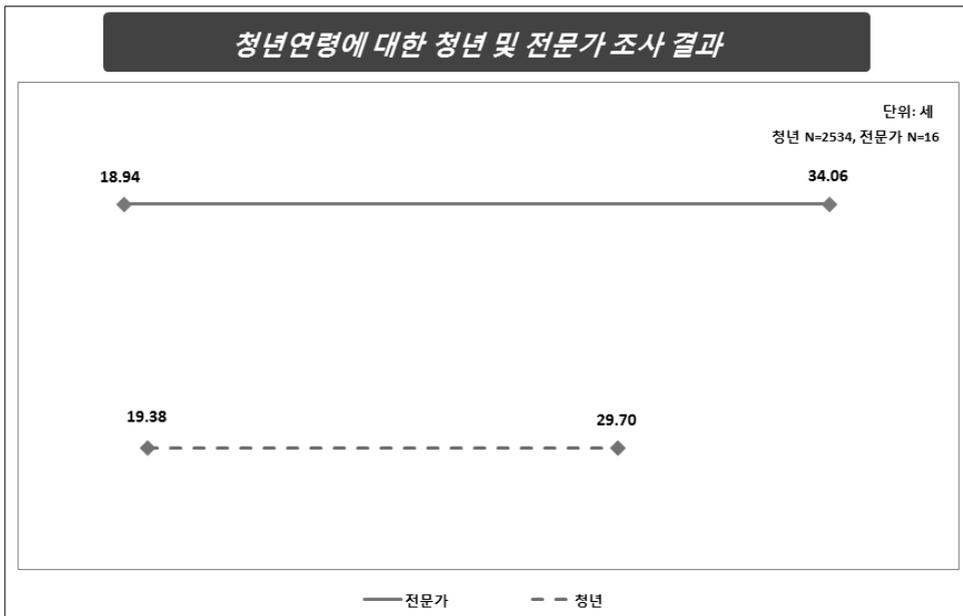
【그림 V-16】 아동연령에 관한 청년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세)

다음으로 청소년 연령 정의를 살펴보자.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청소년 연령은 11.38세에서 18.50세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24세인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청소년 연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15-39세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청소년을 12.66세에서 18.45세로 정의하고 있었다. 법적 정의는 수혜자를 가급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이 10대에서 20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델파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수정하는 작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6년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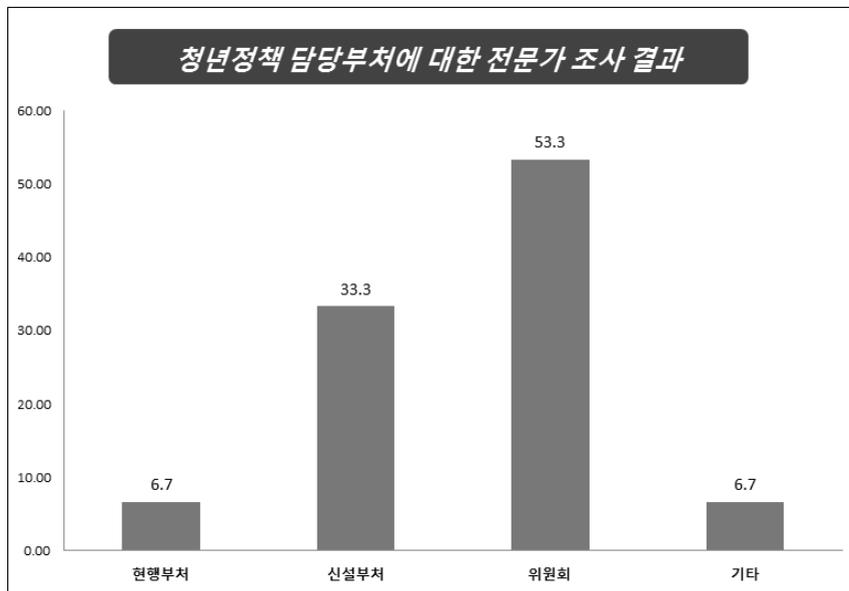
【그림 V-17】 청소년연령에 관한 청년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세)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6년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조사

【그림 V-18】 청년연령에 관한 청년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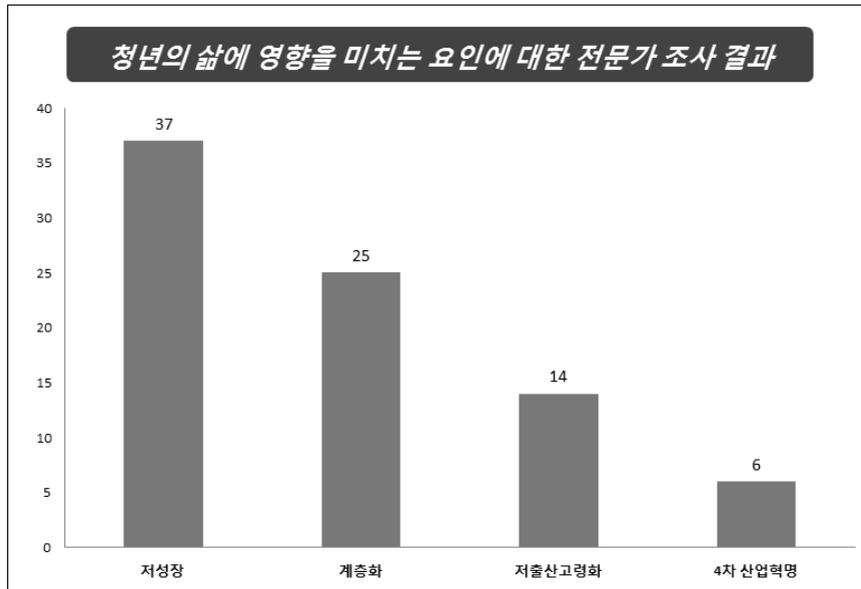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청년 연령 규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청년 연령 규정은 상한연령이 34세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하한연령은 유사하지만 상한 연령은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으나 15-39세 청년들은 20대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앞서 살펴본 국제적인 현황에서 유스(youth)를 정의할 때 30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포괄적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청년들은 연령 규정을 너무 포괄적으로 가져 갈 경우 정책대상 내부의 이질성이 커지므로 30대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조사

【그림 V-19】 청년 정책 담당부처 형태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이어서 청년정책을 담당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행정위원회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33.3%였으며 현행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6.7%로 낮았다. 현재 19대부터 20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은 기획재정부나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방안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위원회로 담당하는 방안이 존재하는데 전문가들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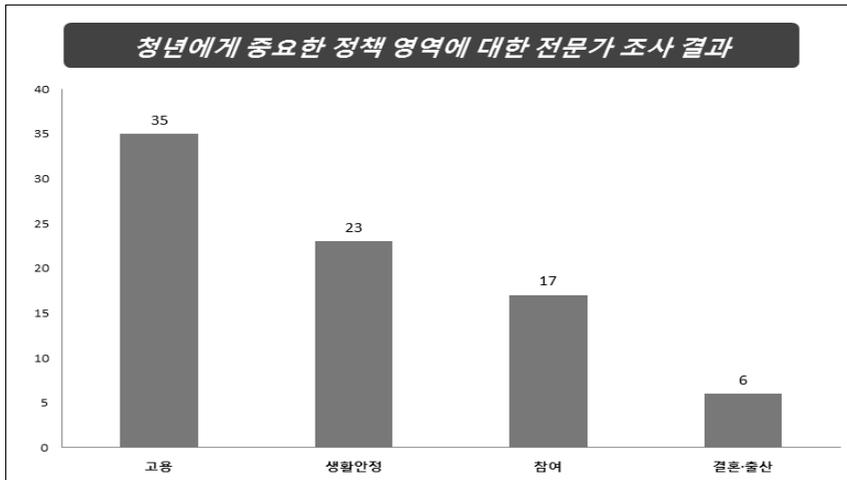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조사

【그림 V-20】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점)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영향 요인에 대해서 답변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향 요인들은 대체로 경제가 저성장이고 사회적으로 계층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4차 산업혁명을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가트렌드로 전문가들은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지목하였다. 2007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비전 2030 중에서 청소년 분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비전 2030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메가트렌드로 제시(김기현 외, 2007)한 바 있는데 이제는 성장 자체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저성장이 핵심트렌드로 부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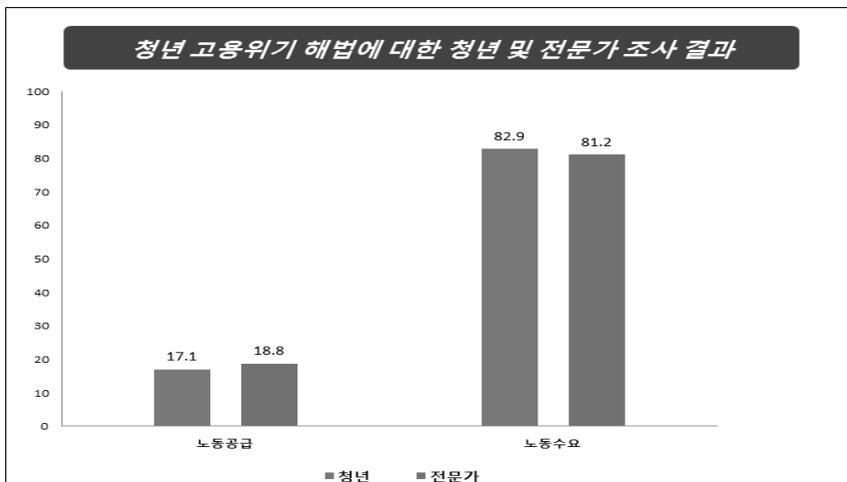
두 번째는 계층화로 지난 10년 간 우리사회가 점차 계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소득불평등이나 교육불평등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이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메가트렌드는 인구 변화에 대한 것으로 아이를 적게 낳고 오래 사는 저출산, 고령화가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과 다보스 경제포럼의 여파로 과학기술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하였다.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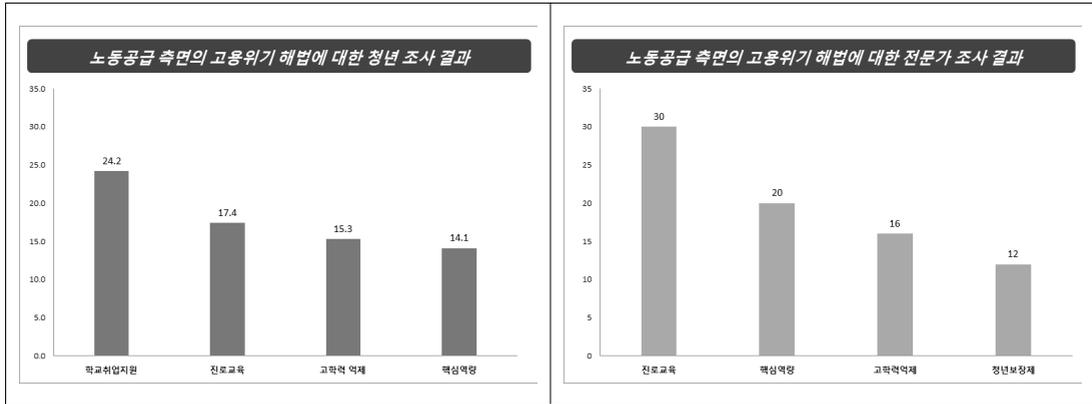
【그림 V-21】 청년 정책 영역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점)

다음으로 청년정책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질문해본 결과,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정책이 가장 중요하며 이어서 생활안정을, 다음으로 참여를,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목하였다.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청년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문제 해결이 다른 부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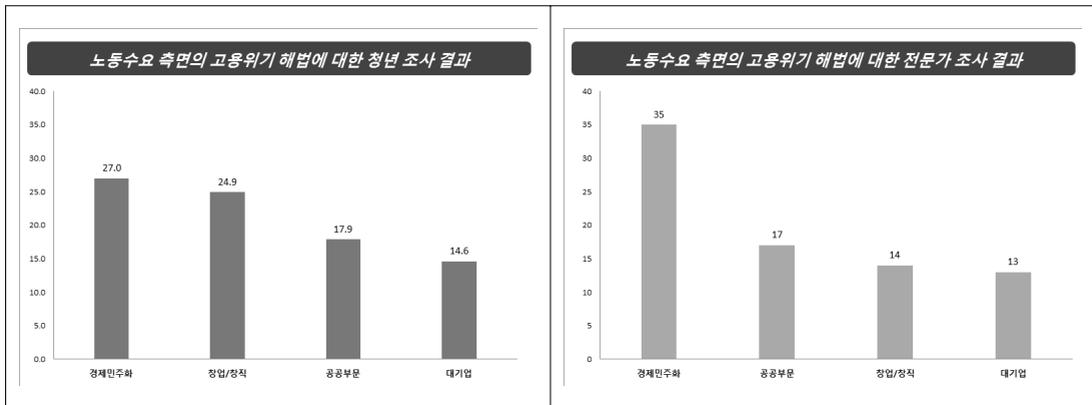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6년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조사

【그림 V-22】 청년고용해법에 대한 청년 실태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6년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조사

【그림 V-23】 청년고용 노공공급 측면 해법에 대한 청년 실태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점)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6년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조사

【그림 V-24】 청년고용 노공수요 측면 해법에 대한 청년 실태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비교(점)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동공급보다는 노동수요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공급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면, 청년들은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를 첫 번째로 꼽았으나 전문가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지목하였다. 노동수요정책과 관련하여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확대를 1순위로 지목하였으나 2순위에 있어서 청년들은 창업이나 장직을,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지목해 차이를 보여주었다.

3.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

1) 청년정책 대상 연령 정의

이 연구에서는 현재 제안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안과 기존 법률, 그리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청년 연령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 대상 연령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과 청년은 사회적 통념상 전자를 10대로, 후자를 20대로 보고 있어 구분이 명확하지만 법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룰 때 현행 제출된 청년기본법안 대로 통과될 경우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V-5 청년정책 대상 연령 비교

법률 및 조사, 해외사례		하한 연령	상한 연령
청년기본법안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청년발전기본법안	19세	40세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청년발전기본법안	19세	39세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청년발전기본법안	19세	34세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19세	39세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청년정책기본법안	19세	34세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19세	39세
기본 법안	아동복지법	0세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9세	24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5세	29세
청년실태조사 (15-39세)	아동 연령 정의	5.04세	11.50세
	청소년 연령 정의	11.38세	18.50세
	청년 연령 정의	19.38세	29.70세
전문가델파이조사	아동 연령 정의	3.69세	11.06세
	청소년 연령 정의	12.66세	18.45세
	청년 연령 정의	18.94세	34.06세
해외 사례	전 세계 청(소)년 연령 정의	15-20세 (61.7%) 10-14세 (26.7%)	25-29세 (34.4%) 30-34세 (26.7%)
	독일 청(소)년 연령 정의	12세	27세
	핀란드 청(소)년 연령 정의	0세	29세
	일본 청(소)년 연령 정의	0세	30세

우선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을 정책 대상에서 분리해 법과 제도를 갖춘 국가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법률과 제도는 분리하지 않고 한 가지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법률 내에 법적인 연령 정의를 다룬다면 좀 더 유연하게 연령을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법률 체계를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청소년과는 별도로 청년 연령을 제안해 본다면 하한연령은 19세부터 상한연령은 29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과 일치한다. 하한연령에 대해서는 제출된 모든 청년기본법안과 전문가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상한연령은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과 일치하지만 30대를 포함하고 있는 전문가 조사나 현재 제안된 청년기본법안보다는 낮게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 법안에 창업과 같이 정책사업에 따라서 30대를 포함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적 인식과는 일치하면서도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시행령에 단서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대상을 34세까지로 정의한 사례가 있다.

19세는 민법 상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향후 개정될 여지가 있으며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연령은 법령에 따라서 성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다는 점에서 외국의 선진국들과 같이 청소년과 청년 연령을 굳이 나누지 않는 방안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정의를 한다면 “청소년·청년은 9세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본처럼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에 세부적인 연령정의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 연령 정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표 V-5>는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과 제도에서 다룰 경우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현행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에서 연령 정의는 현행 9세에서 24세를, 9세에서 29세로 변경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분리해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익을 따져 포함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개정 법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몇 번에 걸쳐서 연장 중이므로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바꾸고 명칭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안에 정책 대상 연령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청소년·청년기본법을 모법으로 정하고 이 연령정의를 따른다고 정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분		기 존 법안	개 정 법안
기본	명칭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청년기본법
	조항 (제3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청년 "이란 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	명칭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소년·청년고용촉진법
	조항 (제2조)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청년 "이란 「 청소년·청년기본법 」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업을 지원하는 대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활동 참여	명칭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청년활동 진흥법
	조항 (제2조)	-	" 청소년·청년 "이란 「 청소년·청년기본법 」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지	명칭	청소년복지 지원법	
	조항 (제2조)	"청소년"이란 「 청소년기본법 」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청년 "이란 「 청소년·청년기본법 」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 밖	명칭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밖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제2조)	"청소년"이란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청소년·청년 "이란 「 청소년·청년기본법 」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안) "학교 밖 청소년·청년 "이란 「 초·중등교육법 」이나 「 고등교육법 」 제2조의 초등학교·고등학교·대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휴학, 중퇴, 졸업한 청소년·청년 을 말한다. (2안) "학교 밖 청소년 (9-18세) "은 상동. "학교 및 직장 밖 청년 (19-29세) "은 학교도,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법률명에 청년을 추가하고 정책대상에 대한 범 조항을 개정된 청소년·청년기본법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조금 복잡한데 현행 정책대상은 초, 중등교육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는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니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후 학교 밖에 있는 9세에서 29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과는 달리 청년들은 학교 밖뿐만 아니라 직장밖에 있는 경우가 정책 대상이 되므로 “학교 및 직장 밖 청년”으로 분리해서 정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청년정책 정부조직

이 절에서는 청년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현재 제안된 청년기본법안에서는 행정부처가 주관부서로 두는 방안과 행정위원회로 별도로 총괄조정부서를 두는 방안으로 나누어진다.

현행 정책대상 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기구인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청년정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 기초해 자문기구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행정기구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안건을 다루고 기획재정부가 청년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는 행정위원회로 가는 방안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정부조직 형태가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과 청년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형태는 행정부처가 78.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가로 검토한 독일, 핀란드, 일본 역시 행정부처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조정기구를 통해 여러 부처의 정책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처가 업무를 주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능중심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독자적인 대상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위원회 형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을 잠시 맡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총괄조정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기능 중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표 V-7 청년정책 대상 정부조직 비교

법률 및 조사, 해외사례		조직형태	주관조직
청년기본법안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청년발전기본법안	행정부처	여성가족부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청년발전기본법안	행정부처	기획재정부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청년발전기본법안	행정위원회	국무총리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행정부처	기획재정부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청년정책기본법안	행정위원회	국무총리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행정위원회	국무총리
대상 정책	아동정책	행정부처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정책	행정부처	여성가족부
	청년고용대책	경제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전문가델파이조사		위원회(53.3%), 부처(40.0%)	
해외 사례	전 세계 청(소)년 정부조직	행정부처(78.8%) 위원회(14.3%)	문화부처(62.4%) 대상부처(22.9%)
	독일 청(소)년 정부조직	행정부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핀란드 청(소)년 정부조직	행정부처	교육문화부
	일본 청(소)년 정부조직	행정부처	내각부

종합적으로 볼 때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행정부처에서 맡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동시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구성된 정책조정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안된 청년기본법안 중에서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별도의 법안 대신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청년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주관조직과 조정기구를 규정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관조직에 대한 규정은 제안된 기획재정부 대신 대상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법률 제13593호)」의 제2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현행 역할과 기능을 놓고 볼 때 기획재정부에서 청년 대상 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청년정책은 경제, 특히 그 중에서 고용만을 정책 사업으로 두기 어려우며 그렇게 제한한다고 해도 청년 고용정책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역할로 보기 힘들다.

이와 함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에서 청년정책을 주관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대상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처나 대상 중심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부처에서 청년 정책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대상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아동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현행 부처 중에서 청년 정책 업무를 맡기기 보다는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 등 대상 중심 부처를 신설하고 이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V-8 **청년 정부조직 개정(안)**

구분	청년기본법안(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청년기본법 개정안
주관조직 (제8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청소년·청년 주관 부처 장관은 청소년·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조정기구 (제12조)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청소년·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소년·청년 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청소년·청년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역청소년·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주관조직과는 별도로 총괄 및 조정기구를 두는 것은 모든 제안 법안과 현행 대상중심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조정기구의 위상을 대통령, 국무총리, 주관 행정부처 장관 중 누가 맡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은 과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던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주관 행정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로 격하되었다. 2015년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해 조정기구 명칭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했으나 국무총리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작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보면 최소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두는 것이 여러 부처에서 수행 중인 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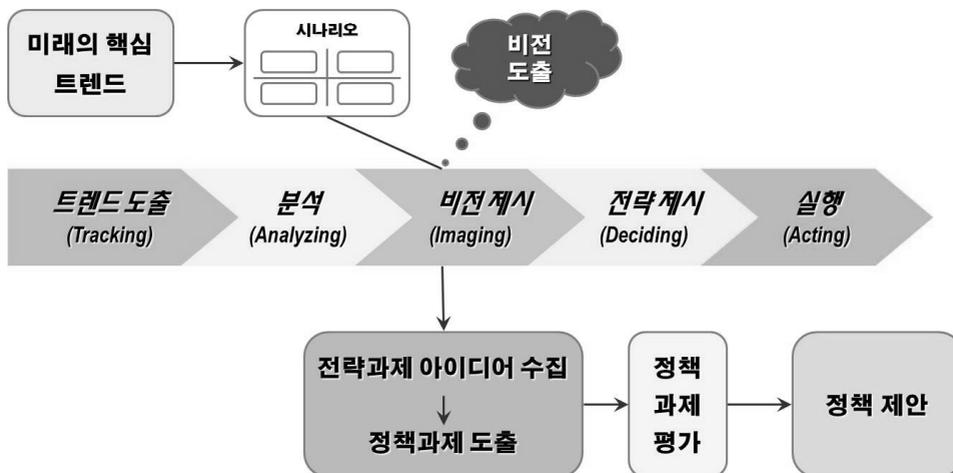
동시에 정책대상 행정부처가 분리되더라도 조정기구는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법령마다 조정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3)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1)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 수립

이 절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청년대책은 중장기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현안으로 부상한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박근혜정부 들어서 7개가 넘는 청년 고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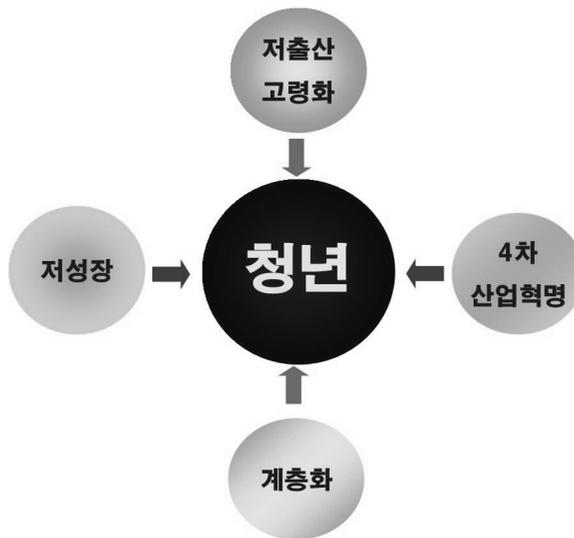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핵심트렌드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청년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해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정책 추진이 이루어진 아동이나 청소년정책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김기현 외(2007)

【그림 V-25】 청년 정책 비전 및 정책과제 도출(안)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국가비전 2030과 관련하여 청소년비전 203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청소년 비전과 전략, 과제 도출을 [그림 V-5]처럼 추진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 비전과 전략,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기본법안에 따른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든,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통합해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새롭게 청소년·청년 기본계획으로 가져가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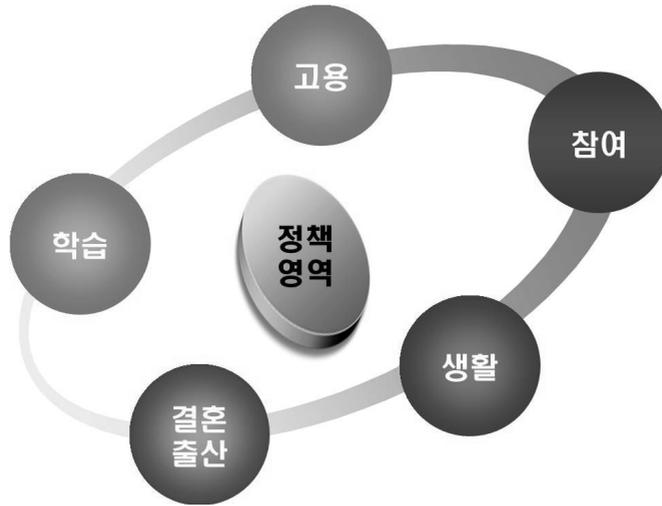
【그림 V-26】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안)

이번 연구에서 추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메가트렌드로 저성장(경제), 저출산·고령화(인구), 계층화(사회), 4차 산업혁명(과학기술)을 지목하였다. 이는 현재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제출된 보고서들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핵심요인들과 일치한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미래준비위원회, 2015).

이러한 메가트렌드가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어떤 정책과제들이 필요한지를 제안한다면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정책 과제

청년정책의 정책 영역을 정하는 것은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 과제는 5가지 영역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다.



【그림 V-27】 청년정책 영역(안)

첫 번째는 고용정책이다. 전문가 조사결과 청년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 청년 정책은 고용정책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노동수요보다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추진 동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경제민주화를 통한 괜찮은 강소기업을 확대해 청년 고용 기회를 넓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청년들은 창업과 창직을 두 번째 중요과제로 제안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감사원(2016)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창업 지원에 있어서 청년할당 비율을 지정해 청년층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창업과 창직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은 기존 기업보다 모든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만 미국이나 중국, 인도, 유럽, 이스라엘, 싱가포르처럼 스타트업(start-up) 기업이 유니콘 기업

(unicorn)²³⁾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보장제를 국내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가(서울시, 성남시 등), 학교나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하는가(고용노동부)에 따라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청년보장제의 모델인 유럽연합에서는 지원방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소속 국가들에서 가장 여건과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학습과 관련된 정책이다. 학습은 형식학습과 비형식, 무형식학습으로 구분되며 형식학습은 공식교육에 의해서 초,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비형식, 무형식학습은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학교 밖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청소년정책이 추진해 온 청소년활동, 청소년교류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분야이다.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 모든 형태의 비형식, 무형식학습을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로 포괄해 정책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형식, 무형식학습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는 참여와 관련된 정책이다. 청년들의 참여는 대상 중심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청년 정책에서 담지 못한다면 대상 중심정책은 그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에서는 구조화된 대화를 통해 매우 광범위한 형태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참여 정책들을 참고해 다수의 청년들이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네 번째는 생활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큰 부분은 주거와 학자금이다. 2015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주거 대책은 1인 가구용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였으며 두 번째 대책은 주택바우처(주거급여) 확대였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정책을 추진 중인데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며 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최소한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 시행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평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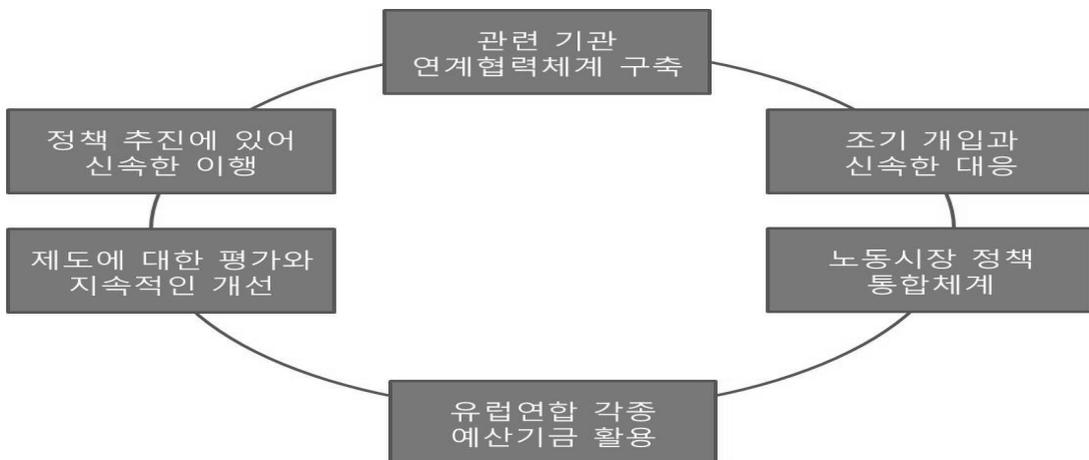
23) 유니콘 기업은 비상장 신생기업인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1개의 유니콘 기업(쿠팡)만 있는 상황이며 5위권을 보면, 1위 우버(Uber, 미국), 2위 샤오미(Xiaomi, 중국), 3위 에어비앤비(Airbnb, 미국), 4위 팔란티어(Palantir, 미국), 5위 디디콰이디(Didi Kuaiya, 중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CBInsight 홈페이지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검색일 2016년 10월 27일)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결혼 및 출산 정책 영역이 있다. 이번에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1.4%에 이르렀다. 미취업이나 직업이 불안정해 연애를 망설인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3.5%에 이르렀다. 청년 고용문제 해결이 청년들의 미혼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필요한 출산대책에 대해서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22.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가구의 소득 증대 등을 꼽았다. 결혼 및 출산 정책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사교육비를 비롯한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가족수당과 같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사업을 취약계층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복지제도로 어린 시절부터 보호자 혹은 부모와 정부, 그리고 민간후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통장에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자립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책과제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현재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정책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된다.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p.11

【그림 V-28】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이행을 위한 6가지 가이드라인

유럽연합은 이를 우산정책(umbrella policy)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사업인 청년보장제 외에 에라스무스+ 사업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은 2014년 현재 70,000개의 조직에서 1,800개의 프로젝트를 650,000만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유럽연합 에라스무스+ 홈페이지, 2016).

두 번째 정책 방향은 부처 간에, 민과 관간에 협력과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우산 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정책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만 성공하기 어려워며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와 정부를 넘어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세 번째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청년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에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며 조기에 정부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 사업이 완벽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인 평가 도구를 토대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책 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감사원(2015). **감사결과보고서-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서울: 감사원.
- 감사원(2016). **청년고용 대책 성과분석**. 서울: 감사원.
- 고용노동부(2015). **201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6a).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7호.
- 고용노동부(2016b).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년도. <http://laborstat.molab.go.kr/>에서 2016년 10월 4일 인출.
- 교육부(2013).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15).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6b). **교육기본통계**. 세종: 교육부.
- 관계부처합동(2012). **제1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3~2017)**.
- 관계부처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관계부처합동(2014).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
- 관계부처합동(2015a). **청년 고용질벽 해소 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2015b).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 관계부처합동(2016a).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 관계부처합동(2016b).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2016c).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7&efYd=2015 0923#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7&efYd=2015%200923#0000)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 기획재정부(2015). **2016년 정부예산안**. 세종: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2016).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 김광진의원 대표발의(2015). **청년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17647.

- 김기현, 조혜영, 장근영, 이창호, 고원, 강홍렬(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2030: 종합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기현(2015a). **2015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김기현(2015b).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 이동성 증진 정책현황 및 과제.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7, 7-56.
- 김기현(2015c). 청년층 고용. **KLI패널 위킹페이퍼**, 2015(3), 1-22.
- 김기현, 김형주, 박성재, 민주홍, 김종성(2015).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김기현(2016). 청년이 자립할 권리. **광주광역시 2016 청년도시 컨퍼런스**, 3, 21-35.
- 김삼화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5.
- 김상민의원 대표발의(2014). **청년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10709.
-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4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웅래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9.
- 대학알리미(2016). **대학알리미DB: 특성화정보**.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16년 10월 6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2013).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5).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기춘의원 대표발의(2015). **청년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9701.
- 박남춘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4.
- 박주선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9.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정책기본법안**. 의안번호: 1620.
- 배상률, 황여정, 김소라(2013).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서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백재현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87.
- 변정현, 전예원(2016). 2016년 정부 청년일자리사업. **고용이슈**, 9(3), 6-32.
- 보건복지부(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울광역시청(2016).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최저임금보다 1,727↑. 2016년 10월 5일 보도자료.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2014).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 신보라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기본법안. 의안번호: 24.
- 여성가족부(2013).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육아정책연구소(2015).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용득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29.
- 이원욱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기본법안. 의안번호: 1778.
- 이정미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224.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22.
- 조원진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62.
- 조혜영(2013). 대학재학 후기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위치 및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15(2), 367-393.
- 중소기업청(2016). 신설법인동향. 대전: 중소기업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6).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채이배의원 대표발의(20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7.
- 통계청(2016a). KOSIS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6년 8월 19일 인출.
- 통계청(2016b). KOSIS 국가통계포털: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6년 8월 19일 인출.
- 통계청(2016c). 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6년 8월 17일 인출.
- 통계청(2016d). KOSIS 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6년 8월 19일 인출.

- 통계청(2016d). **KOSIS 국가통계포털: 사회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6년 8월 17일 인출.
- 통계청(2016e).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6년 8월 17일 인출.
- 통계청(2016f).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6년 8월 17일 인출.
- 통계청(2016g).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6년 8월 17일 인출.
- 통계청(2016h).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생통계**.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6년 8월 17일 인출.
- 통계청(2016i). **KOSIS 국가통계포털: 혼인·이혼통계**. 각 년도. <http://kosis.kr/>에서 2016년 8월 17일 인출.
- 특임장관실(2012). **2030 청년백서**. 서울: 특임장관실.
- 한국경영자총협회(2016).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4). **한국의료패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경영목표(2014~2017년)**.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2015).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Aud, S., KewalRamani, A., & Frohlich, L.(2011). *America's Youth: Transitions to Adulthood. NCES 2012-026*.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Bundesministerium fu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6). *Kinder-und Jugendhilfegesetz*. Retrieved October 13, <https://www.bmfsfj.de/>.
- Bundesministerium fu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6). *Organigramm*. Retrieved October 21, 2016,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
- CBinsight(2016). Retrieved October 27, 2016,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3). *Council Recommendation of 22 April 2013 on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

- European Commission(201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on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
- European Commission(201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EU indicators in the field of youth.*
- Ministre de la vil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15). *Comité interministériel à la jeunesse.*
Retrieved August 3, 2016, <http://www.jeunes.gouv.fr/actualites/priorite-jeunesse/article/comite-interministeriel-de-la-5540>.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11). Retrieved August 4, <http://nces.ed.gov/>.
-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2016). *Tietoa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n toiminnasta.*
Retrieved October 13, 2016, from <http://www.minedu.fi/OPM/Ministerio/?lang=fi>.
-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2016). *Nuorisolaki.* Retrieved October 21, 2016,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2006/20060072>.
- Youth Policy(2016). Retrieved August 29, 2016, <http://youthpolicy.org>.
- 内閣府(2016). *子ども・若者ビジョン.* Retrieved October 21, 2016, 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pdf.



부
부

[부 록]

1. 영역별 문항 비교
2. 전문가 델파이조사 조사표 1차
3. 전문가 델파이조사 조사표 2차

부록표 1 인구와 가족 영역 문항비교

문항	'16년 포함여부		'15년 문항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연령 규정	0(문1)	0(문1)	X	X
적정 독립 시기	0(문2)	0(문2)	X	X
결혼 적령기	0(문3)	0(문3)	0	0
자녀를 가질 계획(시기)	0(문4)	0(문4)	0	0
출산대책 의견	X	0(문5)	0	0
육아대책 의견	X	0(문6)	0	0
2025년 저출산 경향 변화	0(문5)	0(문7)	X	X
적극적 이민정책 동의여부	X	X	X	X
해외이주 의사	0(문6)	0(문8)	X	X
해외이주 고려 이유	0(문6-1)	0(문8-1)	X	X
연애 여부	X	X	0	0
미취업이나 직업 때문에 연애 망설임 경험 여부	X	0(문9)	0	0
결혼 준비 경험	X	0(문10)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 망설임 경험 여부	X	0(문10-1)	0	0
결혼 유무	X	0(문11)	0	0
결혼 의사	X	X	0	0
결혼 연령	X	0(문11-1)	0	0
결혼 비용_총비용	X	X	X	0
결혼 비용_본인 부담 비율	X	X	0	0
결혼 주택마련 비용_총비용	X	X	X	0
결혼 주택마련 비용_본인 부담 비율	X	X	0	0
맞벌이 유무	X	0(문12)	0	0
자녀유무	X	0(문13)	0	0
자녀를 가질 계획	X	0(문14)	X	X
부모한테 경제적인 도움 여부	X	X	X	0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항목 (중복응답)	X	X	X	0
하루평균 가사 소요 시간	X	X	X	0
자녀를 갖는 시기를 늦추는 이유	X	X	X	0
결혼 조건	X	X	0	0
부모 생활비 경제적 지원여부	X	X	0	0
노후 준비	X	X	0	0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1순위)	X	X	X	0
노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X	X	0	0

부록표 2 교육 영역 문항 비교

문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대학교육 사회 인재양성 정도	O(문7)	O(문15)	O	X
대학교육 졸업 후 취업 도움 정도	O(문8)	O(문16)	O	X
대학교육을 통해 기대 또는 기대했던 능력	X	X	O	O
우리나라 입시경쟁 2025년 전망	O(문9)	O(문17)	O	X
우리사회 교육관행_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O(문10)	O(문18)	O	O
우리사회 교육관행_한국사회는 학력이 중요하다	O(문10)	O(문18)	O	O
우리사회 교육관행_한국사회는 학벌이 중요하다	O(문10)	O(문18)	O	O
우리사회 교육관행_대학은 꼭 가야할 필요는 없다	X	X	X	O
우리사회 교육관행_대학은 20살 전후에 진학하는것이 좋다	X	X	X	O
우리사회 교육관행_고등학교 졸업후 먼저 취업을 한 후에 대학 진학하는게 좋다	X	X	X	O
최종학력	O(문11)	O(문19)	O	O
스펙 쌓기1_학교/다닌 대학교 명칭	X	O(문20)	O	X
최종학교 입학과 졸업 시기	X	O(문21)	X	X
취업 유예1_휴학 경험 여부	X	O(문22)	O	X
취업 유예1_휴학 기간	X	O(문22-1)	O	X
취업 유예2_휴학 이유	X	O(문22-2)	O	X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X	O(문23)	X	X
졸업 유예 위해 졸업 요건 이수하지 않은 경험	X	O(문24)	X	X
전공계열	X	O(문25)	O	O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	X	X	O	O
스펙 쌓기2_학점/대학 평균 학점	X	O(문26)	O	X
대학시설 사교육 경험 여부_전공공부	X	O(문27)	O	O
대학시설 사교육 경험 여부_영어	X	O(문27)	O	O
대학시설 사교육 경험 여부_제2외국어	X	O(문27)	O	O
대학시설 사교육 경험 여부_취업관련	X	O(문27)	O	O

문 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대학시설 사교육 경험 여부_기타	X	O(문27)	O	O
대학시설 사교육 월평균 비용_전공공부	X	X	X	O
대학시설 사교육 월평균 비용_영어	X	X	X	O
대학시설 사교육 월평균 비용_제2외국어	X	X	X	O
대학시설 사교육 월평균 비용_취업관련	X	X	X	O
대학시설 사교육 월평균 비용_기타	X	X	X	O
대학시설 사교육 도움정도_전공공부	X	X	X	O
대학시설 사교육 도움정도_영어	X	X	X	O
대학시설 사교육 도움정도_제2외국어	X	X	X	O
대학시설 사교육 도움정도_취업관련	X	X	X	O
대학시설 사교육 도움정도_기타	X	X	X	O
스펙 쌓기4_해외유학 준비경험 여부	X	O(문28)	X	X
스펙 쌓기4_해외유학 경험 여부	X	O(문28-1)	O	X
스펙 쌓기3_영어능력시험 경험 여부(토익, 토플, 텡스)	X	O(문29)	X	X
스펙 쌓기3_영어능력시험 점수(토익, 토플, 텡스)	X	O(문29-1)	O	X
스펙 쌓기5_봉사활동 여부	X	O(문30)	O	X
스펙 쌓기6_인턴십 여부	X	O(문31)	O	X
대학교 등록금 조달 방법	X	X	O	O
대학 학자금 대출 경험	X	O(문32)	X	X
대학 학자금 대출 출처	X	O(문32-1)	X	X
대학 학자금 상환 주체	X	X	O	O
본인 부담여부	X	X	O	O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X	O(문33)	O	O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1순위)	X	O(문33-1)	O	O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1순위)	X	X	X	O
월평균 아르바이트 비용	X	X	X	O
아르바이트 영향 _경제적인 도움	X	X	X	O
아르바이트 영향 _경력 인정	X	X	X	O
아르바이트 영향 _진로선택 도움	X	X	X	O

문 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아르바이트 영향 _ 사회경험	X	X	X	O
아르바이트 영향 _ 학업방해	X	X	X	O
대학원 진학 여부	X	O(문34)	X	X
대학원 진학이유	X	O(문34-1)	O	O
대학원 진학의사	X	O(문34-2)	O	O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X	O(문35)	O	O
추후 대학 진학의사	O(문12)	O(문36)	O	O
진로선택에 미친 영향_고등학교의 진로지도가 내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정도	X	X	X	O
진로선택에 미친 영향_고등학교의 진로지도가 대학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정도	X	X	X	O
진로선택에 미친 영향_대학교의 취업관련 서비스가 진로 및 취업에 도움정도	X	X	X	O
대학교육 만족도	X	X	O	O
대학 생활 중에 중시한 점(1순위)	X	X	X	O
대학 생활 중에 중시한 점(1+2+3순위)	X	X	X	O
대학생활 중에 느낀 스트레스_성적	X	X	X	O
대학생활 중에 느낀 스트레스_스펙준비	X	X	X	O
대학생활 중에 느낀 스트레스_진로결정	X	X	X	O
대학생활 중에 느낀 스트레스_취업부담	X	X	X	O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총 학기 수	X	X	O	O
편입 경험	X	X	O	X
대학원 학자금 대출 경험	X	X	O	O
대출 상환_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험	X	X	X	O
대출 상환_상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본 경험	X	X	X	O
대출 상환_상환을 위해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한 경험	X	X	X	O
대출 상환_상환을 위해 보수를 먼저 고려한 경험	X	X	X	O
대출 상환_상환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경험	X	X	X	O
대학시절 주거	X	X	O	O
자녀 특성화고 보낼 의향 정도	X	X	O	X

부록표 3 경제 영역 문항 비교

문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O(문13)	O(문37)	O	O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O(문14)	O(문38)	O	O
취업경쟁 2025년 전망	O(문15)	O(문39)	O	X
최저임금	O(문16)	O(문40)	X	X
청년 배당에 대한 생각	O(문17)	O(문41)	X	X
부모한테 경제적인 도움 여부	X	X	X	O
소비생활 중 지출이 큰 항목	O(문18)	O(문42)	O	O
재정상태가 좋아진다면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	O(문19)	O(문43)	O	O
집 또는 자동차 구매 의사	O(문20)	O(문44)	X	X
계획적인 소비 여부	O(문21)	O(문45)	O	O
채무여부_금융권별 채무여부	X	O(문46)	O	O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	O(문22)	O(문47)	O	O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O(문22-1)	O(문47-1)	O	O
창업 희망여부	O(문23)	O(문48)	O	O
창업생각 주된 이유	O(문23-1)	O(문48-1)	O	O
현재 창업 여부	O(문23-2)	O(문48-2)	O	O
공시, 고시 준비 여부	O(문24)	O(문49)	O	O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여부	O(문24)	O(문49)	O	X
공시, 고시 주된 시험 종류	O(문24-1)	O(문49-1)	O	X
국가전문자격시험 주된 시험 종류	O(문24-1)	O(문49-1)	O	X
공시, 고시 시험 합격 여부	O(문24-2)	O(문49-2)	O	X
국가전문자격 시험 합격 여부	O(문24-2)	O(문49-2)	O	X
청년 고용위기 해법	X	O(문50)	O	X
청년 고용위기 해법_노동공급	X	O(문50-1)	X	X
청년 고용위기 해법_노동수요	X	O(문50-2)	X	X
수입 목적 1시간 이상 일	X	O(문51)	X	X

문 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가족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일	X	O(문51-1)	X	X
취업 여부(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문항으로 변경)	X	O(문51-2)	O	O
4주 내 직장 구해 본 경험	X	O(문52)	X	X
직장 있다면 일 시작 여부	X	O(문52-1)	X	X
정규교육기관 여부	X	O(문53)	X	X
입시학원, 취업위한 기관 통학 여부	X	O(문54)	X	X
현재 하는 일의 업종	X	X	O	O
현재 하는 일의 직업	X	O(문55)	O	O
현재 하는 일의 월평균 소득	X	O(문56)	O	O
현재 고용형태	X	O(문57)	O	O
임금근로자로 근로형태	X	O(문57-1)	X	X
임금근로자로 전일제 또는 시간제 여부	X	O(문57-2)	X	X
비임금근로자로 해당사항	X	O(문57-3)	X	X
일하는 곳	X	O(문57-4)	X	X
직장의 종사자 수	X	O(문57-5)	X	X
현재 하는 일의 근속년수	X	O(문57-6)	X	X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X	O(문58)	O	O
전공불일치	X	O(문59)	O	X
현재 하는 일의 교육 수준	X	O(문60)	X	X
이직의향	X	O(문61)	O	O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	X	O(문61-1)	O	O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X	O(문62)	O	O
직업훈련을 받은 목적	X	O(문62-1)	O	O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X	O(문62-2)	O	O
직업훈련 받을 계획	X	O(문63)	X	X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던 이유	X	O(문64)	O	O
휴식기간 생활비 조달 방법	X	X	O	O
취업 준비 여부	X	O(문65)	X	X

문 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입사지원서를 낸 경험	X	O(문65-1)	X	X
면접을 본 경험	X	O(문65-2)	X	X
니트1_현재 니트 선별 문항 추가(OECD 기준, 고용노동부 등)	X	X	O	X
현재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린 기간(개월)	X	X	O	O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X	X	O	O
현재 근무환경 만족도	X	X	O	O
만족하지 않는 이유	X	X	O	O
불만족 사항이 발생하는 이유	X	X	X	O
하향취업	X	X	O	X
대학교 등록금 조달 방법	X	X	O	O
대학원 학자금 대출 경험	X	X	O	O
대학 학자금 상환 주체	X	X	O	O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X	X	O	O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1순위)	X	X	O	O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인지여부	X	X	O	X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취업의사여부	X	X	O	X
해외취업 의향	X	X	O	O
희망하는 이유	X	X	O	O
선호하는 국가	X	X	X	O
K-Move 사업 인지여부	X	X	O	X
국비 해외취업 참여의사여부	X	X	O	X
일-학습병행제 인지여부	X	X	O	X
일-학습병행제 취업의향 여부	X	X	O	X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여부	X	X	O	X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성공적 정착 여부	X	X	O	X
인턴 현장학습에 참여한 경험(교육 인턴십 여부로 이동)	X	X	X	O
참여한 이유	X	X	X	O

문 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인턴으로 근무했던 기관에 정규직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의향	X	X	X	O
선호하는 직장 지역	X	X	X	O
창업 분야(대분류)	X	X	O	O
창업 분야(중분류)	X	X	O	O
창업시 애로사항 (중복응답)	X	X	O	O
창업에 실패한 경험	X	X	O	O
실패분야(대분류)	X	X	X	O
실패분야(중분류)	X	X	X	O
창업에 실패한 경우 창업방식	X	X	X	O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창업지원 프로그램 활용여부	X	X	O	O
이용한 기관 (중복응답)	X	X	O	O
참여한 프로그램 (중복응답)	X	X	O	O
창업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X	X	X	O
희망하는 근무형태	X	X	X	O
공시, 고시 준비 주된 동기	X	X	O	O
공시, 고시 시험 응시 여부	X	X	O	X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 여부	X	X	O	X
사법시험 폐지 찬반 의견	X	X	O	X
희망하는 근무형태	X	X	O	O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인지도	X	X	O	O
양질의 시간제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생각	X	X	O	O
임금피크제 필요성	X	X	O	X
임금피크제 청년실업문제 완화 동의정도	X	X	O	X

부록표 4 주거 영역 문항 비교

문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본인 명의 구입 시기	O(문25)	O(문66)	O	O
청년주거대책 의견	X	X	O	X
공동주거 인지여부	X	X	O	X
공동주거 경험여부	O(문26)	O(문67)	O	X
공동주거 거주 의향	O(문27)	O(문68)	O	X
평소주거 생각_자가가 꼭 있어야 한다	O(문28)	O(문69)	O	O
평소주거 생각_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O(문28)	O(문69)	O	O
평소주거 생각_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다	O(문28)	O(문69)	O	O
평소주거 생각_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O(문28)	O(문69)	O	O
평소주거 생각_내 경제 형편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충분히 있다	X	X	O	O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	O(문29)	O(문70)	O	O
부모 동거 여부	O(문30)	O(문71)	O	O
부모 동거 계획	O(문31)	O(문72)	X	X
미혼 혼자 거주 여부	X	O(문73)	O	X
현재 주거 형태	X	O(문73-1)	O	X
현재 거주지 전입신고 여부	X	O(문73-2)	O	X
주거비용에 대한 적절성	X	X	O	O
(자가거주자)현재주거 임대 비용_주택가격	X	X	O	O
(자가거주자)현재주거 임대 비용_구입시점	X	X	O	O
(임차거주자)전세거주자_전세보증금	X	X	O	O

문 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임차거주자)보증금 월세거주자_보증금	X	X	○	○
(임차거주자)보증금 월세거주자_월세	X	X	○	○
(임차거주자)월세거주자_월세	X	X	○	○
주택구입자금 차지하는 비율 해당여부	X	X	○	○
주택구입자금 조달 내역	X	X	○	○
대출받은 금액_자가거주자	X	X	×	○
대출받은 금액_전세거주자	X	X	×	○
대출받은 금액_보증금 월세 거주자	X	X	×	○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액	X	X	×	○
매달 상환하는 대출금	X	X	×	○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	X	X	○	○
주거부담_주거비용 부담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다	X	X	×	○
(학생대상)주거부담_주거비용 부담으로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	X	X	×	○
(학생대상)주거부담_주거비용 부담으로 진로 및 취업준비에 지장을 받는다	X	X	×	○
(미혼대상)주거부담_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 계획 또는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X	X	×	○
(기혼대상)주거부담_주거비용 부담으로 자녀 계획을 늦춘다	X	X	×	○
(기혼대상)주거부담_주거비용 부담으로 자녀 수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X	X	×	○
지난 2년 동안 이사경험	X	X	○	○
지난 2년 동안 이사횟수	X	X	○	○
이사를 하게 된 이유	X	X	○	○

부록표 5 건강 영역 문항 비교

문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신장 / 체중	O(문32)	O(문74)	×	×
주관적 체형	O(문33)	O(문75)	×	×
주관적 건강수준	O(문34)	O(문76)	×	×
일상생활 스트레스	O(문35)	O(문77)	×	×
수면시간	O(문36)	O(문78)	×	×
운동습관	O(문37)	O(문79)	×	×
규칙적 운동 횟수	O(문37-1)	O(문79-1)	×	×
외모 중요도	O(문38)	O(문80)	×	×
성형수술 여부	O(문39)	O(문81)	×	×
성형수술 목적	O(문39-1)	O(문81-1)	×	×
미용 목적의 성형 이유	O(문39-2)	O(문81-2)	×	×

부록표 6 문화와 가치관 영역 문항 비교

문 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문화예술 관심	O(문40)	O(문82)	×	×
독서	O(문41)	O(문83)	×	×
여가활동 대상	O(문42)	O(문84)	×	×
여가활동 동호회 가입 여부	O(문43)	O(문85)	×	×
자주 접한 뉴스매체	O(문44)	O(문86)	×	×
가치 항목별 선호도	O(문45)	O(문87)	×	×
한달 동안 경험한 감정_즐거움	O(문46)	O(문88)	○	○
한달 동안 경험한 감정_행복한	O(문46)	O(문88)	○	○
한달 동안 경험한 감정_짜증나는	O(문46)	O(문88)	○	○
한달 동안 경험한 감정_무기력한	O(문46)	O(문88)	○	○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O(문47)	O(문89)	○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O(문48)	O(문90)	○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	O(문49)	O(문91)	○	○
가장 큰 개인적 고민	X	X	○	○
성공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 기준	O(문50)	O(문92)	○	○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O(문51)	O(문93)	○	○
미래의 성공가능성	O(문52)	O(문94)	○	○
일 년 동안 자살충동 경험	X	X	×	○
자살충동을 느낀 이유	X	X	×	○
사회참여 단체나 활동에 대한 생각_인식_종교단체	X	X	×	○

문 항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사회참여 단체나 활동에 대한 생각_인식_지역사회모임	X	X	X	O
사회참여 단체나 활동에 대한 생각_인식_시민단체	X	X	X	O
사회참여 단체나 활동에 대한 생각_인식_정치단체	X	X	X	O
사회참여 단체나 활동에 대한 생각_인식_사회문제에 대한 온라인상 의견	X	X	X	O
사회참여 단체나 활동에 대한 생각_참여여부_종교단체	X	X	X	O
사회참여 단체나 활동에 대한 생각_참여여부_지역사회모임	X	X	X	O
사회참여 단체나 활동에 대한 생각_참여여부_시민단체	X	X	O	O
사회참여 단체나 활동에 대한 생각_참여여부_정치단체	X	X	X	O
사회참여 단체나 활동에 대한 생각_참여여부_사회문제에 대한 온라인상 의견	O(관계와 참여 영역)	O(관계와 참여 영역)	O	O
한국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X	X	O	O
사회적 불안요인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X	X	X	O
공정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X	X	X	O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	O(관계와 참여 영역)	O(관계와 참여 영역)	O	O
불공정한 상황을 경험 또는 목격할 경우 행동(1순위)	X	X	X	O
정치적 성향	X	O(관계와 참여 영역)	O	O

부록표 7 관계와 참여 영역 문항 비교

문 항	만15-18세용	'16년 포함여부	'15년 포함여부	'13년 문항여부
서로 기댈 수 있는 친구 수	O(문53)	O(문95)	X	X
세대 갈등	O(문54)	O(문96)	X	X
의견 표명 행동	O(문55)	O(문97)	X	X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	O(문56)	O(문98)	O	O
정치적 성향	X	O(문99)	O	O
한국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X	X	O	O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접한 매체	O(문화와 가치관 영역)	O(문화와 가치관 영역)	O	O
접한 시간 (평균)	X	X	X	O
취업정보 획득 경로	X	X	X	O
매체를 사용하게 된 가장 주된 요인	X	X	X	O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야	X	X	X	O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등급	X	X	O	O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X	X	X	O
사용 시간 (평균)	X	X	X	O
최근 한 달 동안 일주일 평균 SNS 포스 팅 횟수	X	X	X	O
SNS 포스팅 주 내용 (중복응답)	X	X	X	O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SNS 활용 만족 도(소통과 정보제공)	X	X	O	O
청년정책 정부부처 홈페이지 SNS 가입 여부	X	X	O	O
청년정책 정부부처 홈페이지 SNS 미가입 이유	X	X	O	O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1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부
록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실태를 분석하고 청년 정책 진단을 통해 청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연구에 관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두 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1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9월 29일(목) 정오(12:00)까지 이메일 (배진우 위촉연구원: jinu2hiru@nyp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연구진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락처 김기현 ☎044-415-2234 / ✉ e-mail: kihuns@nypi.re.kr
하형석 ☎044-415-2252 / ✉ e-mail: hsha@nypi.re.kr

응답자 성명		소속기관		부서(학과)명	
		연락처			
수당 지급 관련	주소: 주민번호: (은행명)계좌번호: * 여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참여 수당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 이번 조사는 총 두 차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조사부터 본인의 응답 결과와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 설문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설문조사 수당(1차 10만원, 2차부터 10만원)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 1. 정책 대상 연령

(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년 : 만 세 ~ 만 세

(2)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9세에서 24세로 정의(제 3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정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바꿀 필요 없다.

② 만 세에서 만 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

(3) 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된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39세로 정의(제3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연령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 청년 연령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5점 이하)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의 견:

문 2. 정책 담당 부서

(1) 현재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은 중앙행정기관 중 어디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부처 중 _____ (부처명)에서 주관해야 한다.
 ② 현행 부처 중에서 맡길 곳이 없어 _____ (신설부처명)를 신설해야 한다.
 ③ 각 부처에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④기타 _____

(2)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을 통합해 생애주기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청년을 한 곳의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고 통합적으로 정책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며 지역 전달체계와 평가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핀란드 : 청소년법, 0-29세로 연령 정의, 교육문화부 주관

독 일 : 아동청소년지원법, 0-27세로 연령 정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주관

일 본 : 아동청년육성지원법, 0-30세로 정의, 내각부 주관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 생애주기접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5점 이하)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의 견:

문 3. 청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귀하는 다음 중 청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저출산과 고령화
- ② 저성장
- ③ 계층화(불평등 심화)
- ④ 글로벌화
- ⑤ 4차 산업혁명(첨단과학기술의 영향)
- ⑥ 고학력화
- ⑦ 가족 기능의 약화
- ⑧ 실버민주주의(노인 정치적 영향력 증대)
- ⑨ 남한과 북한의 관계 변화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각 순위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를 간략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문 4. 청년 삶에 대한 전망

- (1) 귀하는 우리나라 혼인율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혼인율이 올라갈 것이다
 - ② 혼인율이 유지될 것이다
 - ③ 혼인율이 내려갈 것이다
- (2)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 (3)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약화될 것이다
 - ② 유지될 것이다
 - ③ 강화될 것이다
- (4)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약화될 것이다
 - ② 유지될 것이다
 - ③ 강화될 것이다

문 5. 청년 정책 영역

- (1) 귀하는 아래에 제시한 청년 정책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 참여 문제 ② 청년 고용 문제 ③ 청년 주거 문제 ④ 청년 교육 문제 ⑤ 청년 결혼 및 출산 문제 ⑥ 청년 생활 안정 문제 ⑦ 청년 가치관 및 정서 문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2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부
록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실태를 분석하고 청년 정책 방안을 통해 청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연구에 관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두 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2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10월 7일(목) 정오(12:00)까지 이메일(배진우 위촉연구원: jinu2hiru@nyp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연구진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락처 김기현 ☎044-415-2234 / ✉ e-mail: kihuns@nypi.re.kr
하형석 ☎044-415-2252 / ✉ e-mail: hsha@nypi.re.kr

응답자 성명

- 이번 2차 설문지에는 1차 설문지에서 응답해주신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응답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 1차 응답 결과들을 참고하셔서 각 문항에 대한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의견란에 기재해주시고, 자문위원님의 응답 결과가 대다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과 달리할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문 1. 정책 대상 연령

(1) 아동 연령

- 아동 연령 정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차 조사 시 전문가 의견 결과와 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시고 최종적으로 아동 연령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분		하한연령	상한연령
응답 결과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5-39세, 2,534명)	5.04세	11.50세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15명)	3.27세	10.73세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본인 응답	세	세
최종 응답		___세	___세

(2) 청소년 연령과 청소년기본법 연령 정의

(2-1) 청소년 연령

구분		하한연령	상한연령
응답 결과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5-39세, 2,534명)	12.66세	18.45세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15명)	10.73세	18.93세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본인 응답	세	세
최종 응답		___세	___세

(2-2) 청소년기본법 연령 정의

-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에서 청소년기본법 연령 정의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명이었고 14명의 전문가(본인 포함)들이 연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분		하한연령	상한연령
응답 결과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14명), 1명 변경 필요 없음	12.00세	25.07세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본인 응답	세	세
최종 응답		___세	___세

(3) 청년 연령과 청년기본법(안) 연령정의

(3-1) 청년 연령 정의

구분		하한연령	상한연령
응답 결과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5-39세, 2,534명)	19.38세	29.70세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15명)	18.67세	34.13세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본인 응답	세	세
최종 응답		___세	___세

(3-2) 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된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39세로 정의(제3조)에 대해서 전체응답결과(15명, 평균과 표본편차[])와 선생님께서 응답한 결과(√)입니다. 최종적인 의견을 ※ 표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6.2(2.4)]

문 2. 정책 담당 부서

(1) 청년정책은 중앙행정기관 중 어디에서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차 델파이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입니다. 1차 조사 시 전문가 의견 결과를 고려해 최종적인 의견을 ※ 표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현행 부처	②신설 부처	③ 위원회	④ 기타
응답 결과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14명)	3명	2명	8명	2명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본인 응답				
최종 응답(신설 시 명칭: _____)					

주: 현행부처는 여성가족부 2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이고 신설부처는 청년가족부 1명, 청소년·청년청 1명임. 기타는 유아·아동·청소년·청년 등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 또는 여성가족부를 생애가족부 등으로 개편 1명, 아동정책, 청년정책,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를 만든다 1명임

(2) 아동·청소년·청년을 한 곳의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고 통합적으로 정책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며 지역 전달체계와 평가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차 델파이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입니다. 1차 조사 시 전문가 의견 결과를 고려해 최종적인 의견을 ※ 표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2-----3-----4-----5-----6-----7-----8-----9-----10(매우 동의함)

[8.5(1.5)]

문 3. 청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변동요인과 정책 영역

(1) 청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을 부여한 후 합산하여 순위를 산출하였습니다. 1차 조사 시 전문가 의견 결과를 고려해 최종적인 의견을 ※ 표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위	2위	3위	4위
응답 결과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15명)	저성장 (31점)	계층화 (23점)	저출산 고령화 (10점)	4차 산업혁명 (8점)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본인 응답				
최종 응답					

(2) 청년 정책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을 부여한 후 합산하여 순위를 산출하였습니다. 1차 조사 시 전문가 의견 결과를 고려해 최종적인 의견을 ※ 표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위	2위	3위	4위
응답 결과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15명)	고용 (40점)	생활안정 (23점)	참여 (21점)	결혼출산 (7점)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본인 응답				
최종 응답					

문 4 청년 고용정책사업

(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 정책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응답 결과입니다. 1차 조사 시 전문가 의견 결과와 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종적인 의견을 ※ 표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노동공급	② 노동수요
응답 결과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5-39세, 2,534명)	17.1%	82.9%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15명)	20%(3명)	80%(12명)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본인 응답		
최종 응답			

(2)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을 부여한 후 합산하여 순위를 산출하였습니다. 1차 조사 시 전문가 의견 결과와 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종적인 의견을 ※ 표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위	2위	3위	4위
응답 결과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학교취업 지원 (24.2%)	진로 교육 (17.4%)	고학력 억제 (15.3%)	핵심역량 (14.1%)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15명)	진로교육 (26점)	고학력 억제 (13점)	핵심역량 (11점)	청년 보장제 (9점)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본인 응답				X
최종 응답					X

주: 구체적인 문항은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⑧ 기타임.

(3)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을 부여한 후 합산하여 순위를 산출하였습니다. 1차 조사 시 전문가 의견 결과와 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종적인 의견을 ※ 표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위	2위	3위	4위
응답 결과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경제 민주화 (27.0%)	창업/ 창직 (24.9%)	공공부문 (17.9%)	대기업 (14.6%)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15명)	경제 민주화 (28점)	대기업 (16점)	공공부문 (14점)	창업/ 창직 (14점)
	1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본인 응답				X
최종 응답					X

주: 구체적인 문항은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④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관철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⑧ 기타임.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s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have been a serious problem, it has become imperative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e of the youth and form policies. Even though various policies have been suggested to resolve problems with the youth, these have only focused on the specific issue of "youth employment" and short-term performance; which distracted policymakers from viewing poli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issues regarding the youth have become more controversial as problems with youth employment have extended to problems with the whole lives of the young generation. Moreover,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round young people have changed rapidly; in this context, it is critical to devise long-term measures by examining how these changes affect the youth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es. First of all, to resolve growing problems with the youth and establish policy,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what kind of difficulties young people have been suffering from in their liv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generation. Rapidly changing conditions around young people seem very likely to have a huge impact on their lives, yet there does not exist much data for precisely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the youth.

From this study, key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e of the youth. Moreover, a 2016 survey on the actu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yout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overall lives of young people with respect to leisure, childbirth, parenting, upbringing, marriage, hous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values, and education, as well as life satisfaction, happiness,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s well as the problems of the youth policies in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overall lives of young people and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round them, and suggests a basic approach for the youth policy and the youth agenda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youth policies in other countries.

Keywords: youth, youth employment, youth unemployment, actu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youth, the determination of age groups for "the youth," the basic approach of the youth policy, the agenda for the youth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 · 이장주 · 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시과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0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13-4 94330

979-11-5654-097-7 (세트)



연구보고 16-R0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